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1. 붕당정치의 성립
- 2. 붕당정치의 전개
-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1. 붕당정치의 성립

1) 대북정권의 몰락

광해군대(1608~1623)의 정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었다. 사림파들이 이른 시기부터 추진해온 大同法을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와 호적의 조사를 수행하여 산업과 국방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 궁궐의 재건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국왕으로 대표되는 사회체제를 강화하였고, 《東國輿地勝覽》・《經國大典》・《高麗史》・《三綱行實》등 여러 서적을 복간하고 지방의 史庫를 정리하여 문화의 정리와 보급에도 큰 성과를 올렸다. 《東醫寶鑑》등 의서의 편찬과 보급은 전란 이후의 심한 질병으로부터 民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었다.

당시 정치를 주도한 北人은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국가 재정을 늘리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 銀鑛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동전 주조, 시장 개설, 대외무역 등 상업을 진흥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後金의 성장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華夷論의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어력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火器都監을 세워 새로운 火砲를 개발하고, 각국에 대한 정탐 활동을 활발히한 것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북인의 독점적인 정국 주도와 그로 인한 仁祖反正으로 인해 뒷 시기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데 큰 장애를 겪게 되었다.

광해군대는 북인, 그 중에서 大北 정파가 우위를 차지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선조 말년에는 전반적으로 북인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柳永慶 등이 선조의 후원을 받으며 그의 적자인 永昌大君을 지원하고 있었던 데 반

하여 鄭仁弘 중심의 대북이 세자인 광해군을 지원하고 있었다.1) 그런 중에 선조가 갑자기 죽자 유영경 일파의 방해를 뚫고 세자인 광해군이 즉위하였 던 것이다. 하지만 대북 중심의 북인이 단순히 광해군을 지원했다는 것만으 로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상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촌 기반, 임진왜란 중 의병장으로 쌓아 놓은 공로와 主戰論者로서의 명분, 그리고 曺 植의 학문을 이어받은 강한 學緣 등이 그들 세력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

대북세력은 정인홍과 李爾瞻을 주축으로 鄭昌衍‧趙挺‧李慶全 등 선조대 이 래의 중진들과 鄭造‧尹訒‧韓纘男‧朴鼎吉‧李偉卿‧閔夢龍‧朴楗‧李挺元‧尹孝先‧朴梓‧任袞‧白大珩‧孫倜‧李惺‧趙挺立‧許筠‧申景禧‧姜翼文‧吳汝 穩‧柳潚 등 주로 삼사나 이조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소장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광해군 초반의 인사 정책은 대북 일변도만은 아니어서, 국왕과 연결된 柳希奮‧朴彝敍 등을 중심으로 한 小北 세력은 물론 李恒福‧李廷龜‧申欽 등의 서인이나, 李元翼으로 대표되는 남인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북인은 삼사나 銓曹를 중심으로, 이원익ㆍ이항복 등의 대신들을 내세운 남인과 서인의 중진들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광해군대 초기 한때는 소북이 대북보다 우세한 상황에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광해군대의 정국에서 이항복·이정구·黃愼 등의 서인들이 임진왜란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保民策의 차원에서 號牌法이나 宣惠之法 등의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북인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계층이나 정파간의 이해가 엇갈려 서인들의 주도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다. 거기에 비해 대북의 영수인 정인홍은 광해군 3년(1611)에 이른바 '晦退辨斥'을 감행하여 대북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조선 성리학의 道統으로 인정되어 그 전해에 문묘

¹⁾ 이하 광해군대 정국에 대해서는 대개 韓明基,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動向〉(《韓國史論》 20, 서울大, 1988) 참조.

李綺南,〈光海朝 政治勢力의 構造와 變動〉(《北岳史論》2, 1990)은 광해군대 정국의 전개를 위 논문과 대개 동일하게 설명하되 국왕의 왕권 확립 시도를 좀더 강조하였다.

에 종사된 五賢, 즉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 중에서 남인 학통의 기반인 이언적과 이황을 배척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북의 중심 학통인조식을 이단에 가까운 인물로 지적했던 이황의 주장을 반박하여 그를 격하하고 조식을 높이려 하였으며, 그 뒤에도 조식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고 그를 문묘에 종사하려는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남인뿐 아니라 서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정인홍은 유생으로서의 자격을 부정당하는 처벌인 靑衿錄에서의 삭제를 당하고 경상좌도와 우도의 사람이 회복이 불가능함 정도로 분열되는 등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었다.

이후 대북은 더욱 강력하게 인사권을 장악하고 중앙 정국을 주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金直哉가 黃赫 등과 함께 順和君의 양자인 晋陵君 泰景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 것을 다스렸다는 광해군 4년의 金直哉의 獄事를 통해, 외척 유회분을 중심으로 삼사에 진출하여 조정의 논의를 이끌던 소북에 대해서까지 공세를 강화하였다. 또 朴應犀 등 名家의 서얼들이 銀商을 살해한 사건이 심문과정에서 그들이 宣祖妃 仁穆大妃의 아버지인 金悌男을 영입하고 永昌大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으로 비화하였고, 거기에 이정구・金尚容・鄭賜湖・徐渻・韓浚謙・朴東亮 등의 서인 인물들이 연관되었다는 진술이 나오자 討逆의 논리로써 서인들을 공박하였다.

이 사건은 다시 영창대군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정파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특히 이 때는 郭再祐 등 북인 내부에서도 영창대군을 두호하는 주장이 나오고 정인홍도 거기에 찬동하였지만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의 논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한 대북의 주장은 결국 국왕이 인목대비와 같은 궁에 있을 수 없으므로 대비를 폐하여야 한다는 廢母論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영창대군은 庶人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유폐되었다가 살해되고, 인목대비는 광해군 5년 11월경부터 감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대북은 討逆과 忠逆의 논리를 내세워 반대의견을 억누름으로써, 남인과 서인을 중앙 정국에서 거의 축출하였고 지방사류들이 공론을 표방하여 중앙 정국에 간여하는 것도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러나 소북은 朴承宗 등이 유희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세력을 유지하면서비변사를 중심으로 서인들을 옹호하는 등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정인홍의 문인인 북인 鄭蘊이 '廢母殺弟'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지방에서도 경상우도 지역의 정인홍 문인들이 중앙의 대북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中北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이첨은 이른바 掌樂署의 모임을 통해 박승종·유희분과의 마지막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광해군 10년(1618)에는 우의정 韓孝純이백관을 이끌고 공식적으로 대비를 축출할 것을 요청한 이른바 '廢母廷請'이이어졌다. 그러한 폐모론은 결말을 보지 못하였으나, 광해군 말년까지 정화간의 세력관계를 볼 때 정국은 "서인이 이를 갈고 남인이 원망을 품으며 소북이 비웃는 형세"로 지속되어 갔다.

결국 광해군과 대북정권은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인조반정에 의해 축출되었다. 반정은 광해군 12년부터 계획되어 3년 후인 15년 3월 12일을 기한 거사에 성공하여, 선조의 손자인 綾陽君 倧이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李曙・申景禛 등 인조의 인척들이 먼저 계획을 세워 具宏・具仁垕 등을 끌어들이고 다시 金鎏・李貴・崔鳴吉 등의 문신과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여기에 국왕으로 추대된 능양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반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1등에 10명, 2등에 15명, 3등에 28명 등 모두 53명이 靖社功臣으로 책봉되었다.

반정세력은 궁중에서 장악한 玉璽를 西宮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에게 바치고 그 권위를 빌어 광해군과 동궁을 폐출하였으며 능양군이 즉위하였다.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은 광해조에 同氣를 살해하고 母后의 폐출을 시도하여 패륜을 행하였으며, 명에 대한 은혜를 잊고 오랑캐와 통함으로써 예의와 삼 강을 쓸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해군대 대북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 더욱 중요한 요인은 그들의 정책이 지니는 悖倫性보다도,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인·남인 등 다른 붕당의 존재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각 붕당간의 세력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북의 그러한 성격은 그들의 붕당론에도 잘 나타난다. 선조대에 성립한 조선의 각 붕당은 광해군대에는 이미 상당한 정체감과 기반을 갖춘 실체로 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결집되는 이른바 公論은 정치를 움 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다. 그 점은 대북이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하 면서도 공론이나 여론을 민감하게 의식하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점에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대북은 곽재우나 정인홍의 주장에 나타나듯이 다른 붕당의 존재를 매우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특히 정인홍은 국왕에게 君子黨에 대한 변별을 강조하였는데, 거기에는 북인, 그 중에서도 대북만이 수용해야 할 군자당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한 바탕에서 북인 일변도의 인사가 행하여졌고, 정인홍의 제자인 정온마저도 스승에게 편지를 보내어 당색을 떠난 고른 등용을 촉구하고 있었지만 이이첨이 일선에서 지휘하는 대북은 탄력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북정권은 광해군과의 굳은 제휴를 바탕으로 중앙 정계에서의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림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며 당시의 각 붕당과 공존상태를 이루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그런 약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했던 무리한 정책이 다시 정권의 고립과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정의 구실만 주는 셈이 되었다.

인조의 즉위 후에는 반정의 중심 인물들이었던 서인 공신들이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사림의 대표자인 金長生도 국왕인 인조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귀·김류·최명길·장유 등 반정의 주역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어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일으킨 공로를 치하하고 정국을 이끌어갈 방향을 말하는 상황이었으며, 국왕도 공신들에게 공개적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거사할 때 동원한 강력한 군사력을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치권의 재편에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을 銓曹의 장관을 제치고 행사하였다.

정치질서의 재편은 광해군대 정치인의 숙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廢母廷請을 앞장서 추진하는 등 앞 시기 정치를 전횡한 대북의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처벌에 이론이 있을 수 없어서 책임이 확실하고 원성을 높이 샀던 인물들은 거사 당일부터 처형하였다. 이이철 부자, 정인홍 등 수십 명의 관

²⁾ 韓明基, 앞의 글, 288~300쪽.

禹賢玖、〈來庵 鄭仁弘斗 光海朝 政局主導勢力〉(《嶠南史學》4, 嶺南大, 1989), 29~34等.

인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유희분·박승종 등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소북의 영수로 이이첨 등과 대립했던 인물들은 인목대비와 土類를 보호했다는 김류·이귀 등의 두둔이 있었지만 인조의 뜻에 따라 역시 처형되었다. 그밖에 원래대북에 속하였지만 이이첨 일파의 정책에 가담하지 않아 당시 처벌을 면한전영의정 奇自獻이나, 반정 당시 좌의정으로 삭직에 그쳤던 朴弘耉도 그 후역모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요컨대 북인으로서 광해조 말기까지정권에 깊이 참여한 인물들은 대북 소북을 막론하고 대개 처형당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해군 재위 16년간 삼사와 이조의 종6품 이상의 관직(監察 제외)에 오른 인물은 《光海君日記》의 인사 기록에 따라 정리하면 모두 321명이 되는데, 이 중 40%에 달하는 수가 처벌받았으며, 그것을 피한 인물들도 대개 정계에서 축출되거나 주변 관서로 밀려났다. 특히 다른 붕당의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던 대북의 전횡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던 광해군 5년(1613)부터 10년까지의 기간에 삼사와 이조에 있음으로써 폐모론 등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거의 완전히 도태되었다.

2) 인조반정 이후의 공존체제

반정 후에는 숙청 작업과 더불어 공신 중심 인물들에 의해 새로운 정권에 참여시킬 인물들의 선별 작업이 행하여졌다.3) 거사 직후에 尹昉・李元翼・李廷龜・申欽・鄭曄・吳允謙・鄭經世・李睟光・徐濱・朴東善 등 대북의 전횡에 반대하다 축출당했거나 자진해 퇴거하였던 인사들이 대거 불려들어와 당상 관직을 제수받았다. 이러한 기준은 하위 관직에도 적용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60여 명에 대하여 6품직 서용이 이루어졌다. 최명길은 이들을 '직언하는 선비'와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민간에서 독서하는 자'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당시 사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 정책이 추진되어, 반정 후에 김장생・張顯光・朴知誠 등을 바로 조정에 불러들였으며 인조 원년(1623) 5월에는 그들을 위하여 성균관에 정원 3인인 종4품의 司業

³⁾ 이하 인조대 정국의 전체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吳洙彰,〈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韓國史論》13, 서울大, 1985) 참조.

을 새로 설치하였다.4)

그러나 당색에 대해 아무런 논란없이 등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주류를 이룬 논의는 정엽이 경연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광해조의 폐모론에 불참했다는 점을 들어 서인의 우선권을 내세운 후, 남인이나 소북이라도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수용하되 대북만은 조정에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신 이귀와 같은 경우 골자는 정엽의 입장과 같으나, 폐모정청에 참여한 것과 같은 하자도 본심에서가 아니었다면 용서하여야 하며 나아가 폐모론에 대한 자취를 없애 인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한층 관대한 주장을 폈다. 거기에 비해 김장생과 김상헌 등은 폐모정청 참여 등 잘못이 있는 자들에 대한 배격을 좀더 강조하면서, 은혜만을 베풀어 폐단에 흐른다고 당시 인사정책을 비판하였다.

이들에 비해 이원익으로 대표되는 남인은 인물 등용을 당색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반정 직후 한창 숙청과 등용이 행하여질 때 의 이 주장은 우세한 입장의 서인을 의식하고 군주의 권위를 빌어 남인의 정치적 입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국왕 인조는 인물을 광범위하게 등용 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어서 누구도 주장하지 못한 대북계열의 등용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정으로 인한 인물의 선별과 등용 작업은 반정 후 2년 반이 지난 인조 3년 가을까지는 일단락되었다. 반정 직후부터 인조 3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인사기록을 《仁祖實錄》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의 6품 이상관직과, 부윤 및 관찰사로 등용된 인물들은 모두 164명에 이른다. 가장 큰권한을 행사한 이들은 물론 반정공신들이었지만, 형식상으로 당시의 인사 관행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은 아니었다. 큰 공헌을 하여 1등공신이 된 최명길을 예로 들더라도 반정 후 처음 임명된 관직은 종6품 吏曹佐郎이었다.

164명 중 129명에 대해 당색을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서인은 82명으로 64%의 비율을 보였다. 남인은 35명, 북인은 12명으로서 각각 27%와 9%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남인 35명의 숫자는 서인에 대해서 43%에 이른

⁴⁾ 禹仁秀,《17世紀 山林의 勢力 基盤과 政治的 機能》(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2), 57~67等.

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서인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남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물 등용 논의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서인이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그들의 정국주도에 파탄이오지 않을 정도의 남인이 등용되었고 북인은 그 세력이 도태된 상황에서 소수의 인물들만이 붕당이라는 테두리를 떠나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선조 연간에 성립되어 다양한 분기와 대립을 보이던 붕당간의 정치질서는 이와 같이 인조대에 들어와 일단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체제로 안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질서는 어느 정도 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복수 붕당의 존재는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게 마련이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당시인들의 견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조 15년(1637)에 사간원에서 올린 啓에서는 '是非之心'은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의견이 다른 것을 억지로 같게할 수는 없다고 하고, 논의할 때 크게 다른 점이 있으면 극언으로 힘껏 싸워자기의 의견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신하들 사이의 대립을 합리화하는 논리였다. 鄭經世와 李廷龜는 국왕 앞에서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그들은 신하들간의 대립을 추궁하는 인조에게, "시비를가리는 것은 君子의 일이며 각자 소견을 가지고 싸운다면 비록 不協함이 있더라도 무슨 害가 되겠느냐"고 하여 조정에서의 건전한 대립을 옹호하였다.

歐陽修나 朱熹의 주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新儒學의 붕당론은, "君子는 같은 道로써 眞朋을 이루고 소인은 같은 利로써 僞朋을 이루므로 君主가 군자의 진붕을 등용할 때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이었다. 또 "賢忠한 자들이라면 그 당이 작음을 걱정하되 奸邪한 자들이라면 철저히 몰아내고 국왕을 군자의 당에 끌어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붕당관은 조선 건국 당시에 그 이념적 기반을 마련한 鄭道傳이 이미 개진한 바 있거나와,5) 사림파의 정계 장악에 따라 16세기에 이미 일반화되었고 특히 "朋黨을 미워하여 없애려하면 중중 나라가 망하는 데에 이른다"는 귀절은 계속 되풀이되었다.6)

⁵⁾ 韓永愚,《鄭道傳思想의 硏究》改正版 (서울大 출판부, 1983), 142~143쪽.

⁶⁾ 사림파의 신유학적 붕당론 도입에 대해서는 李泰鎭,《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韓國研究院, 1985), 39~45쪽 참조.

그러나 17세기의 붕당 인식이 위와 같은 내용에 그칠 수는 없었다. 실제 정치에서 군자당과 소인당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붕당은 학통과 가문에 따라 전승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구양수나 주희의 붕당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신의 당이 君子黨임을 주장하는 한 그것과 대립되는 黨은 소인당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방의 당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희의 말대로 "소인들의 무리를 모조리몰아내어 자기들이 人才를 쓰는 데 해가 없도록 하려 한다"면 상대당에 대한심한 탄압이 가해져 복수 붕당에 의한 정치는 파탄에 달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정치인들은 조선 붕당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정치를 운영하려 하였다. 趙翼과 같은 경우 "지금의 黨이란 한쪽이 모두 군자이고 다른 한쪽이 모두 소인인 것이 아니며 각각에 善人과 不善人이 있습니다. 만일 한쪽만을 쓰고 다른 한쪽을 모두 버린다면 크게 옳지 않습니다"가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두루 나타난다. 兪伯曾은 당시 붕당에 대해 조익과 같은 인식 위에서 붕당들 사이의 調和와 保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是非의 분별과 公論을 강조하고 당론을 배격하는 인조에게 공론에 입각한 반대당 공격을 공공연하게 합리화하였다.

殿下께서는 (臣下들의) 자기와 다른 자에 대한 배격을 미워할 줄만 아시고 나라를 위하여 원망을 사는 것이 가상한 것임을 모르십니다. 오늘날 조정에서 자기와 다른 자를 끝내 배격하지 못하게 한다면, 꼭 서인이 서인을 탄핵하고 남인이 남인을 탄핵하며 소북이 소북을 탄핵한 다음에야 公論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仁祖實錄》권 53, 인조 8년 3월 병오).

이와 같은 붕당간의 상호 비판에 대한 합의는 많은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왕 인조는 붕당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서인의 정국 주도를 견제하였고,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김류·최명길 등 일부 반정공신들이 그러한 입장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7) 《}仁祖實錄》 권 20, 인조 7년 윤4월 갑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큰 권한에도 불구하고 일반 土類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짐과 함께 영향력을 잃었다.

한편 붕당 혹은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치인들 역시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광범위한 동의를 이루고 있었지만, 붕당을 타파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기존 붕당의 존재를 정치운영의 한 실체로서 확실히 인정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정치 권력을 서인이 장악하였으나 남인도 함께 공존하는 체제와 짝을 이루고 있었다.8) 그들은 서로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빚었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1623년에서 1649년까지의 인조대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치적 쟁점은 元宗을 追崇하는 문제와 후금·청에 대한 외교 관계였다. 원종 추숭이란 인조의 아버지이자 선조의 五男으로 인조 즉위 전에 죽은 定遠君을 왕으로 追奪한 일로서, 인조가 즉위한 후 정원대원군에게 올려야 할 親屬의 칭호와인조 4년(1626) 인조의 어머니인 啓運宮의 喪에 인조가 입어야 할 服의 문제,인조 10년에 정원대원군을 원종으로 추숭하고 3년 후에 宗廟에 들이는 문제들은 모두 13년에 걸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조의 기본적인 의도는 아버지인 정원대원군을 왕으로 높임으로써 선조로부터 원종을 거쳐 자신에게 이어지는 왕통을 확립하여 정통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학자가 朴知誠였고 이귀·최명길·許滿 등이 추숭에 찬성하였다. 반면에 서인 산림 김장생과 남인 산림 張顯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官人과 학자들이 정원군을 종통으로부터 배제하려 하였다. 서인과 남인은 그들 사이의 정치적대립에 앞서 禮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인조의 왕통 강화에 함께반대하였다.9)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의 척화론 및 그 이후의 反淸論도 같은 의미를

⁸⁾ 이 시기를 포함하는 조선시대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그것을 調停論, 君子小人·是非明辨論, 調劑論으로 나누어 정밀하게 설명한 연구가 있다(鄭萬祚,〈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⁹⁾ 元宗 追崇의 과정과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李迎春,《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124~153쪽 참조.

지닌다. 척화론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서, 정치적 성격은 공신세력의 국정 주도에 대한 非功臣土類의 반발이라는 것이었을 뿐 척화라는 大義名分 앞에 당색에 따른 입장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 당시의 척화론은 북인출신이며 이 시기에 남인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한 鄭蘊이 서인 金尙憲과 더불어 중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당시 관인들 대부분이 당색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만큼 봉당간의 대립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자기 당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정책은 같은 당색의 인물을 등용하는 것으로서, 인조 연간에도 그러한 노력은 서인·남인간에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것은 대립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뚜렷이 드러난 붕당간의 첫번째 쟁점은 선조의 아들로서 평소 신망이 있어 인조의 정통성에 위협이 되고 있었으며 인조 즉위후의 여러 역모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仁城君 珙에 대한 처우문제였다. 그가 폐모정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귀가 인조 초년에 처벌을 주장한 이후 서인들의 공격이 점점 심해져 인성군은 몇 차례의 유배를 거쳐 인조 5년에 사사되었다.

그러나 남인들은 정경세·李埈과 북인출신의 정온을 중심으로, 숙부를 비호할 수밖에 없던 인조와 함께 처음부터 인성군 처벌에 반대하여 서인들과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반대의 논리는 왕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문제를 확대하여 인성군 처벌을 광해조의 사건들에 비유하거나광해군대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인조반정의 명분을 뿌리째 흔드는 등 서인정권의 명분에 대한 도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한 대립에서반대당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조 4년 서인으로 구성된 사간원에서는 인성군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 남인 睦性善을 인조가 諫官으로 등용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도, 목성선이 名士여서 당시 淸顯의 인물들보다 처지지 않으며 그의 주장도 임금의 求言에 따른 것이므로 영영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었다.10)

서인과 남인은 붕당의 기반이 되고 있던 학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쟁

^{10) 《}仁祖實錄》 권 14, 인조 4년 8월 을축.

적으로 기울였다. 먼저 서인들은 집권하자마자 선조대에 죄를 입은 자기 당인사들에 대한 伸寃運動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成渾을 복관시키고 李海壽・鄭澈 등의 관작을 환수받았다. 여기에 대해 인조는 시간을 끌거나 동인쪽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것은 鄭汝立의 옥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재연과 서인의 세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였을 것이다. 남인들도 鄭述의 시호와 추증을 요청하고, 柳成龍의 시호를 내려 받았다. 그러나 서인들이 이이와 성혼의 文廟 從祀를 요청하여, 그들 학통의 권위를 이황을 먼저 문묘에 들인 남인들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자 적지않은 감동이 야기되었다.

그 주장은 인조 초년에도 제기되었으나 국왕의 반대로 가라앉았다가, 인조 13년(1635)에 본격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5월에 성균관 유생 270여 명에 의한 종사 요구의 상소와 57명에 의한 반대 상소가 같은 날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상소가 계속됨에 따라 분란이 확대되어 갔다. 남인들은 주로 이이가 佛門에 들어갔었다는 것과 성혼이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종사에 반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영의정 尹昉, 좌의정 金尚容등 몇몇 서인 관인들이 종사를 주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영남을 제외한 전국 각처에서도 이이와 성혼을 종사하자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중앙 관인들 사이에서는 큰 논쟁이 없었고 종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을지언정 문묘 종사와 같이 막중한 일을 남인들의 반대에 맞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학문적 기반이 강화되지는 못하였으며, 서인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인조 또한 이이·성혼의 도덕이 높지 못하고 비방이 있었다는 과격한 답을 내리는 등 서인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인조 연간의 서인과 남인은 그들의 공통 기반에 충실하였으며 대립은 그러한 동의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조대 서인과 남인의 공 존관계는 병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3) 공신계와 비공신계의 갈등

인조대는 반정공신들이 지대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같은 공신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을 모두 함께 할 수는 없었다. 특히 김류와 이귀는 반정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곧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들은 본디 서로 인맥을 달리하여 따로 반정을 계획하였으며, 관직이나 연령 등 개인적인 조건도 쉽게 상하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최명길·장유·신경진·이서 등도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모두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공신들은 반정에서의 공적을 구실로 권력을 잡았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土類들과 정치 권력을 둘러싼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공신과 일반 사류들 사이의 대립은 재위중의 군주를 폐출하고 새 임금을 세운 反正 자체에 단서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거사한 것을 장유가 스스로 부끄러워했다던가 趙涑이 반정에 참여하고도 끝내 공신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나타나듯이 반정의 당사자들도 약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사류들이 공신을 보는 비판적 입장은 "金元亮은 유생으로서 靖祉功臣에 녹훈되었으니 어찌된 것인가"라는 金時讓의 말과, 정경세가 김원량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그가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데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인조 2년 차弘靑의 옥사 후에는 새삼스레 국왕의 曉諭文을 내려 광해군의 죄악을 열거하고 반정과 인조의 정통성을 누누이 강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공신들과 일반 사류 사이의 대립은 반정 직후 공신의 관직 획득과 인물 등용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일반 사류들은 공신들에게는 상을 주면 될 뿐 관작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과거를 시행하려는 계획도 그들에게 특권을 줄 수 없다는 반대에 밀려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귀 등은 강력하게 공신 우대를 주장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알력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조는 붕당을 강력히 배격하면서 남인은 물론 문제가 있는 북인까지 등

용하여 서인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대해 공신 제일의 권력가 김류가 인물 등용을 당색에 따라 안배함으로써 특정 붕당의 독주를 막는다 는 논리로, 일반 서인들과 남인들의 심각한 반대 속에서도 인조의 정책을 적 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반정의 원훈으로서 확보한 기반 위에서 북인까지 포 섭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은 다시 인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공신 사류의 도전에 대하여 자기 세력을 증식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김상헌의 주장으로 대표되는 인조 초년의 淸論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 다. 김류가 주도하는 대로 북인과 일부 庭請者들까지 등용하다면 그들 비공 신사류들에게 실질적 타격이 올 뿐 아니라. 대북정권에 대항했다는 명분 기 반마저도 퇴색하고 말 형편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공신인 이귀와 兪伯曾・朴 炡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귀는 처음에 정청참여자까지 수용하자는 주장을 폈었지만 인사권을 김류에게 제압당하고 그와의 불화가 깊어짐에 따 라 인사문제에 관한 공신의 포용적인 입장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유백증ㆍ박 정은 공신이면서도 3등에 불과하여 그 특권을 크게 누리지 못하였으며 공신 중에 몇 안되는 문과출신의 小壯官人으로서 김류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을 여지가 많아, 앞장서서 그것을 비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류가 인사를 주도하는 중에 인조 3년(1625)에는 소북의 지도자였던 金蓋國·南以恭, 인조 7년에는 유희분의 조카사위인 金世濂과 李景稷·남이공의 등용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귀·김상헌은 물론 박정·유백증·羅萬甲·金堉을 필두로 한 관인들 대부분이 인조와 김상헌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발하였던 것이다. 서인과 남인의 관인들 사이에도 입장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한 대립은 표면상으로는 세력의 안배를 내세워 붕당의 해를 없애겠다는 입장과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의 충돌이었으며, 대립 당사자들이 공신과 일반 사류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당시 공신세력과 비공신사류의 세력 다툼의 일면이었다.11)

¹¹⁾ 이러한 대립은 그 성격에 커다란 오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인조는 붕당을 없애겠다는 점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와 김류가 추진하는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또 하나의 붕당으로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 맞서는 자들은 주희의 붕당론 등을 원용하여 자신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당시 서인·남인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의

공신세력의 私的 군사력에도 비공신사류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주요 공신들은 반정이 성공한 후로도 각자의 軍官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인조 2년 정경세가 공신 및 유력자의 군관을 없애자고 주장하면서부터 勳臣軍官에 대한 비난이 커졌다. 무사들을 통한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의 도모도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더 나아가 공신 군사력을 정묘호란의 패전에 대한 책임과 연결시켜 "임금의 명령을 범하고 위엄을 빼앗았다"고 극렬하게 공신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립은 공신들이 장악한 군사력이 공식적인 체계내로 정리되면서 인조 5년 이후에는 해소되어 갔다.12)

공신들은 그 세력을 이용하여 많은 경제적 이권을 장악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한 비판이 宮家의 특권에 대한 것과 더불어 빈번히 행하여졌다. 인조 2년 李潤雨가 공신들이 田土와 백성을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있음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 이래 같은 내용의 비판이 계속되었으며, 인조 7년에는 공신들이 籍沒을 빙자하여 남의 전택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자고 최명길이 앞서 주장할 정도였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공신들의 반대로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인조 14년에 대사간 尹煌을 중심으로 사간원에서올린 계에서는 궁가와 훈신들이 賜牌・免稅・折受・立案의 방법으로 민전과 백성을 침탈하여 蘆田・漁箭・鹽盆・海澤의 이익을 독점한다고 공격하였다.

공신세력과 비공신사류의 알력과 대립은 인조대 主和論과 斥和論의 대립으로 연결되었다. 그 뒤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선의 정치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척화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온 것이었지만, 정묘호란에서 병자호란까지의 주화론·척화론이나 그 이후의 반청론이 당시

붕당은 서인이나 남인과 같은 범주로 오해하기 쉬우며 실제로도 인조 초년의 대립에 淸西 대 義西(功西), 인조 7년의 대립에 老西 대 少西라는 이름을 붙인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대립을 서인·남인의 대립과 같은 범주에 놓고 단지 그 대립이 심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단서를 붙여 '黨爭'의 전개 과정을 계보화하는 데 포함시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대립은 서인만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던 동시에 서인 전체가 갈라졌던 것도 아니다. 또한 붕당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매우 일시적이었으며 지목받은 인물이 대단히 적었다는 점에서, 정권이 재편되는 과정에 정치 참여자들이 서로 자기 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벌였던 평범한 대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¹²⁾ 李泰鎭, 앞의 책, 85~90쪽.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그 정치적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인조 5년(1627)의 정묘호란에서는 이귀의 가장 적극적인 和議論과 거기에 동조하는 최명길·장유에 대항하여 윤황·李楘·유백증 등이 척화론을 내세움으로써 마찰을 빚었다. 이 때 윤황은 후금의 사신을 들이지 말자는 주장을 하면서 이귀·최명길의 화의론을 공격하여 나라를 그르친 것이 훈신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귀도 당시 자신의 주화적 입장에 대한 비난을 비공신사류들이 공신세력에 가한 일련의 비난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묘호란 당시의 논란은 후금과의 강화가 형제관계를 맺는 데 그쳤고 明과의 기존 관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라앉았다.

그 뒤 조정의 분위기는 명분상으로 당당한 絶和論者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인조 14년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화론과 척화론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국정은 김류가 영의정, 좌의정이 빈 상태에서 홍서봉이 원임 좌의정, 최명길이 이조판서로서 공신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밖에 호조판서 김신국은 김류에 의해서 등용된 인물이었고, 우의정 李弘胄, 원임 대신 尹昉, 병조판서 李聖求 등이 모두 김류와 무리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한결 심하여 김류 부자, 金自點・金時讓 등 김류 일파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상헌과 함께 가장 격렬한 척화론자인 鄭蘊은 청의 침략 직전에 올린 상소에서 絶和를 주장하면서 공신들을 싸잡아 그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극언하였다.

이에 대해 개전 전에는 최명길을 제외하고는 절화론에 적극적인 반대자가 없었으나 적병 침입 8일 만에 김류·홍서봉·장유 등이 主和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당시의 척화란, "논의가 당당하기는 추상과 같지만 국세를 헤아리지 않은 것이어서 處士의 한번 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이 말해주듯 현실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은 반정 후 계속되던 공신세력과 비공신사류의 대립이라는 성격이 분명해졌고, 이념이나 정책만으로 인한 대립 이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병자호란에서는 결국 김류·홍서봉·최명길·장유·김신국·이성구 등의 화의론이인조의 동의를 얻어 김상헌·정온·윤황 부자·趙絅 및 다수 소장 관인들의반대를 누르고 청과 군신관계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약을 맺고 말

았지만, 그 대립은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청군이 물러간 후 김류 등은 척화론자들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윤황 등 7인을 처벌하였다. 유백증은 전쟁 중에 파직되었고 김상헌·정온은 지방에 물러가 있었으므로 여기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방어에 실패한 군사책임자들도, 김류의 아들인 金慶徵과 장유의 동생인 張縛이 죽임을 당했고 김류와 김자점을 비롯하여 沈器遠, 신경진의 동생인 申景暖・李敏求・李聖求 등이 처벌받았다. 한편 남한산성에서 나와 바로 지방으로 내려간 김상헌도 임금을 저버리고 나라를 등졌다는 이유로 인조 16년말에는 파직을 거쳐 삭탈관작되었다.

이렇게 공방전이 계속되었던 것은 나라의 체모와 명분이 송두리째 뒤집혔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공신세력 대 비공신사류의 대립이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명길이 가장 격렬한 주화론자이면서도 난이 끝난 후 적어도 얼마 동안은 척화론자들의 공격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대립이 단순한 명분론을 넘어 정치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그 정치적 요소란 공신으로서의 기반을 크게 향유하던 김류계열에 대한 비공신사류의 도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신세력과 비공신사류의 대립은 전란 후 공신 중에서 최고 권력자가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인조대 후반에도 계속되었다. 병자호란 후 5~6년간의 국정은 최명길이 주도하였다. 김류 중심의 정치세력과 김상헌 등을 대표로 하는 반청론자들은 계속되는 공방전으로 그 중심 인물들이 모두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특히 척화론자들의 주장을 따라 반청정책을 폈다가 속수무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인조는 전쟁 후 철저히 그들을 배제하였다. 그것에 비해 최명길은 척화론자들처럼 난을 불러들였다는 비난을 들을 이유가 없었고 兵權과 무관하였기 때문에 패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

최명길은 종전 후 약 2개월만에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을 거쳐 다음해 9월에는 영의정으로 승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행사하였다. 인조 초년부터 김류와 대립한 그는, 정승에 張維와 申景禛·沈器遠을 추천하고 이귀의아들인 李時白과 굳은 연계를 맺고 있었다. 최명길은 공신들 중에서 입장이통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려 한 것이다. 일단의 공신들과 힘

을 모은 최명길은 金蓋國·金時讓·沈悅·南以恭 등 才局이라는 점에서 정평을 얻고 있던 인물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김류에 의해서도 등용되었던 인물들로서, 최명길은 개인적으로 김류와 대립하고 있었으나 공신으로서의 정책은 김류와 상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남이공은 인조 16년(1638) 3월에 이조판서가 되어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인사 정책을 펴 나갔다.13)

이리하여 자기 세력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된 최명길은 연소 척화신들에 대한 용서를 주장하고 김상헌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대청관계를 무난하게 이끌어가면서도 병력을 동원하여 명을 치라는 요구만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인조 16년 이후로는 僧獨步를 통하여 명과의 비밀 외교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이시백이 담당하고 있었던 남한산성 재건작업과 더불어 최명길 등이 反淸 사류들과 제휴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게했을 것이다. 李明漢・姜碩期와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최명길 지휘의 대명관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대에 작성된《仁祖實錄》의 사평들이 최명길의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신최명길과 일반 사류들 사이의 전반적인 대립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명길은 정치 안정과 민심 수습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다.14) 그 중 정치 운영에 대한 개혁 방침으로는 東曹郎官의 특권을 박탈하고 삼사의 논의 방식을 변경하려 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다. 당시 이조의 낭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품계에도 불구하고 弘文館을 비롯한 三司의 당하관에 대한 인사권의 상당한 부분과 후임자에 대한 自薦權을 행사하고 있었다.15) 그것은 소수 권세가의 전횡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훈척들과의 대항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사림정치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조 낭관은 각 정치세력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일체의 붕당적 정치 질서를 배격하는 인조와 정치의 능률을 높이

¹³⁾ 이 시기 정치인들의 입장과 사상에 대해서는 고영진 외, 〈17세기 전반 조선사 상계의 동향과 그 성격〉(《역사와현실》 8, 한국역사연구회, 1992) 참조.

¹⁴⁾ 개혁을 추진한 최명길의 입장에 대해서는 李在喆,〈遲川 崔鳴吉의 經世觀과 官制變通論〉(《朝鮮史硏究》 1, 伏賢朝鮮史硏究會, 1992) 참조.

¹⁵⁾ 吏曹와 三司의 운영구조와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宋贊植,〈朝鮮朝 士林 政治의 權力構造〉(《經濟史學》 2, 經濟史學會, 1978) 참조.

려는 최명길에 의해 지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이미 그 전에도 이조낭관 권의 폐지가 시도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인조 15년에 최명길은 연소 관인 들 사이의 분란과 당론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조낭관의 堂下薦望權 및 자천 권을 혁파할 것을 비변사를 통하여 다시 요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남이공·남이웅으로 이어지는 이조판서들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던 상황을 보면 이조낭관의 권한은 혁파 후 적어도 1년 내에 다시 복구되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조낭관의 권한에 대해 개혁을 주장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김류·최명길·남이공·남이웅 등은 공신이라는 기반 위에서 자기 세력을 증식하려 했거나 그 공신을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던 인물들이었다. 반면에 그들을 제외한 많은 인물들이 이조낭관권의 합리성을 내세우거나 대신들도 그 혁파를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지적을 볼 때, 이조낭관의 자천권과 당하천망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김류·최명길 등의 혁파 노력은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명길은 정치적 논의의 최일선에 있던 삼사의 避嫌制에 대해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시 삼사, 그 중에서도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어떤 일을 논할때 모두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논의에 찬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혐이라 하여 사직소의 형태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그러면 處置라 하여 삼사의 제삼자들이 그 인물이 논의에 계속 참여할 정당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임금이 出任 혹은 遞職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것은 논의가 번다하고 분란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수 의견을 보장함으로써 특정한 정치 집단의 독주를 막는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최명길은 의견을 억지로 일치시키려하고 피혐이 어지러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로 여겨, 다수 의견에 따라 관서의 입장을 정할 것이며 출사의 처치를 받은 후에 거듭 피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국왕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할 말을 다하여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반대론 속에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아, 피혐과 처치가 전과 같은 양상으로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최명길의 개혁 노력이 실패했던 것은 이조낭관권과 피혐제가 당시 붕당이 정치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장치로서 일반 관인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조낭관권은 公論·黨論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장관인으로 하여금 삼사 관원에 대한 인사권의 많은 부분을 행사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혐제는 우세한 다수 관인에 대해 소수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릴 수 있고 그것이 수반하는 처치제에 의해 삼사 소장 관인들의 의견이 큰 힘을 지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큰 흐름으로볼 때 최명길의 시도는 공신중심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세력 유지에 알맞는 방향으로 정치 질서를 개편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 개혁의 방향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던 다수 일반 관인들의 성향과 공론을 반영하는 정치 질서에 대한 굳은 동의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국을 주도하던 최명길 등은 인조 18년(1640)초에 최명길·신경진·심열이 전후하여 대신직에서 물러나고 3월에는 부원군으로 남아 있던 최명길이 파직 당하고 이시백·남이공 등이 유배당함으로써 권력을 잃었다. 이 처벌의 이유 는 대신으로서 청에 보내는 質子를 가짜로 하였기 때문이었으나, 더 복잡한 세력관계의 변동이 있었다. 당시 인조는 淸論을 내세우는 일반 사류들을 신임 하지 않고 소장층의 등용도 마다하였으므로 자연 김류·김자점 등의 정계복 귀가 쉽게 이루어져 각기 扈衛大將과 判尹·御營大將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 었던 것이다. 최명길의 후임 영의정에도 김류계열인 洪瑞鳳이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대신직에 오르는 인물들을 볼 때 대체로 최명길·신경진·심기원·심열에서 강석기로 이어지는 계열과, 홍서봉·이성구·김자점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영의정에 다시올랐던 최명길이 명과의 밀통문제로 청으로 끌려가고 신경진·강석기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심기원이 역모 혐의로 죽음으로써 권력은 다시 김류계열의 김자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는 심기원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확고한 권력을 장악하고 인조 24년 3월 이후 영의정으로서 3년후 인조가 사망할 때까지 관인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김자점의 세력 기반은 매우 허약하였다. 반정으로 1등공신에 녹훈 되었지만 文科출신이 못되었기 때문인지 정치의 일선에 나서지 못하고 김류 의 세력권 밑에서 주변 관서를 전전한 끝에 군사 지휘관으로서 세력을 키웠지만 그나마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취한 정책은 궁중에 유착하여 왕의 개인적인 총애를 받고 親淸政策을 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김자점의 파행적인 정치 운영은 인조 23년 昭顯世子의 죽음과 이듬해 소현세자빈 姜嬪의 옥사에서 잘 드러난다.

두 사건은 세자에 대한 인조의 의구심에 後宮 趙氏의 참언이 크게 작용하여 빚어진 것으로써, 김자점이 元孫을 폐하는 데 적극 찬성하였고 일반 사림은 물론 김류·최명길까지 반대하는 데 맞서 홀로 강빈을 공격하고 그 사사에 찬성한 것 등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그가 淑媛 조씨와 결탁하여 세자를 해치는 데 모의했음에 틀림이 없을 듯하다.16 김자점은 또 소현세자의 아들들과 강빈의 형제들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강빈의 父이며 원손의 外祖인 姜碩期가 일반 사류들 사이에 명망이 높았으며 최명길·심기원과도 연계를 맺었던 만큼 그의 인척은 어느모로 보나 김자점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시 김자점이 처한 상황은, 사람들의 강력한 강빈 보호를 인조가 서인의 당론이라고 비판하자 김자점이 소북·남인도 많이 가담했다고 말하는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강빈을 두호하는 것은 당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김자점 세력의 완전한 고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김자점은 손자 世龍을 후궁 조씨 소생인 孝明翁主와 결혼시킴으로써 궁중과의 유착관계를 더욱 깊이 하였다.

본래 병자호란 이후 김류 등은 그 친청적 태도로 인해 줄곧 공격을 받았던 만큼 김류와 부침을 함께 한 김자점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차피 反淸 土類들 사이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청의 지지마저 잃는다면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으므로, 김자점은 조선출신의 청 통역으로서 조선과 청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鄭命壽와 유착하는 방식 등으로 친청 정책을 확고히 하였다. 그것이 다시 비공신사류들과의 대립관계를 격화시켰음은 물론이다.

인조의 서거는 김자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뒤를 이은 효종은

¹⁶⁾ 소현세자의 죽음과 강빈 옥사의 과정에 대해서는 金龍德, 〈昭顯世子研究〉(《朝 鮮後期思想史研究》, 乙酉文化社, 1964) 참조.

즉위 후 朝野의 분위기에 따라 즉시로 金集·宋時烈·權諰·李惟泰 등의 산 림과 김상헌 등을 조정에 불러들였고 이들은 힘을 모아 김자점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효종 원년(1650) 봄 洪川에 유배당한 김자점은 청과 적극 밀통하여 세력 만회를 꾀하였으나 李景奭·李時白·元斗杓의 활약으로 그의 기도는 실패하고 다시 光陽으로 遠竄되었으며, 효종 2년말에 孝明翁主의 저주사건이 문제되고 아들 釴의 역모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의 세력은 완전히제거되고 말았다.

김자점의 몰락은 반정공신 정치세력의 종언을 뜻한다. 김자점과 맞서온 또 다른 공신 원두표는 김자점 등을 공격하여 세력 유지를 꾀하였음에도 당시 반청 사류들의 공격을 받아 일단 처벌받았으며 이후 복귀했지만 공신으로서의 위세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였다. 그 밖의 공신세력으로 이시백 형제와 李厚源·具仁垕 등이 있었으나 그들은 더 이른 시기부터 자기 중심의 세력 규합을 마다하고 일반 사류들과 무리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4) 붕당정치의 의의

권력을 독점하던 대북과 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축출된 이후의 정치는, 서인과 남인이 사림으로서의 공통의 기반을 바탕으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합의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붕당정치의 질서를 실제 정치에서 구현하였다.17)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신세력과 비공신사류

¹⁷⁾ 붕당정치의 용어에 대해, 조선 후기의 붕당간의 다툼을 정치형태·정치체제에 중점을 두고 볼 때는 붕당정치라는 개념을, 과정·결과를 통칭할 때는 당쟁이란 개념을 쓸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당쟁'을 더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한 주장이 있다(李成茂,〈朝鮮後期 黨爭研究의 方向〉,《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305쪽).

또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말까지의 정치에는 '사림정치'라는 용어가 알맞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그 시기 정치의 주도세력은 사림이라 불리는 집단이었고, 정치목표를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구현에 두면서 이를 위하여 公論을 앞세운 言官權의 宰相權 비판과 견제, 그리고 붕당 상호간의 義理·名分 논쟁을 통한 상호비판과 견제를 정치운영 방식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붕당정치'는 그중 정치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하였다(鄭萬祚,〈朝鮮時代의 士林政治〉,《韓國史上의 政治形態》,一潮閣, 1993, 224쪽).

의 대립이 정치의 큰 축을 형성하여,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양상이 붕당정치의 면모를 능가할 정도였다. 18) 하지만 한 시기 정치의 모든 면모를 설명할수 있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점은 붕당정치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붕당이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계속되는 중에도 상황에 따라그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정치세력이 나누어지게 마련이며 때로는 그것에 의한 대립이 당색 이상으로 정국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19)

공신 대 비공신사류의 대립이 인조대 정치 권력을 둘러싼 중앙 정계에서의 대립을 미시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비해 붕당이 정치세력의 기본적인 범주가 되고 정치 운영의 가장 지속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그리고 거기에 밀접히 연결된 19세기 철종대에 이르기까지 앞뒤 시기와의 연결 속에서 17세기 전반 인조대의 정치를 설명한다면, 서인과 남인간의 붕당정치가 좀더 원숙한 모습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둘수 있을 것이다.200

¹⁸⁾ 인조대의 정국이 공신과 비공신사류의 상호비판과 견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붕당정치론의 논리적 근거를 위태롭게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당시 정치가서인 내에서 공신 대 사류의 비판·대립 구도 속에 진행되었으므로 서인·남인간의 붕당체제와는 다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인조대는 '사림정치'의 운용이 시도되던 단계인 적용기로 설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鄭萬祚, 위의 글, 231쪽). 또 인조대 초년에 남인계 인사들이 상당수 등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공존의 원리에 입각한 등용이라기보다는 취약한 기반의 확보를 위한수단의 하나로 취해진 것이었다"고 하여 붕당정치의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평가도 있다(禹仁秀, 앞의 책, 65쪽). 그러나 인성군 처벌을 둘러싼 대립이나 병자호란 시기 趙綱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남인은 인조 초년 뿐 아니라그 뒤로도 중앙정치에 참여하여 서인 일반과 함께 공신들과 대립하였으므로, 인조대 남인의 정치참여를 무시하거나 인조 초년의 것으로 한정시켜 서인 내부에서 정치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반대당을 등용하여야만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붕당 사이에 공존의 원리가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¹⁹⁾ 吳洙彰, 앞의 글, 50~51쪽.

²⁰⁾ 다만 그러한 질서가 당시 정치운영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요소와 병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시기 붕당정치의 의미에 제한을 가한다. 또한 '붕당정치'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정치를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못되고, 조선시기 내에서도 '군주체제'와 같은 큰 틀의 하위에서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임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시대구분과 같은 거시적인 조망을

봉당정치는 멀리는 고려말·조선초의 사회변화, 가까이는 사림파의 성장이이루어낸 정치참여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과거제의 운영에서 나타난다. 李瀷이 붕당의 분기와 대립에 대한 원인으로선조대 이후로 과거 합격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설명은 현상적으로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1) 그러나 과거합격자의 증가는 그로 인한 부분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치참여자들 사이의 관직을 향한 경쟁이 심화됨에따라 집단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삼사를 비롯한 정치적 관서에서 관원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 점을 나타낸다. 22) 붕당적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인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17세기 전반에는 "붕당이 생긴 이후 사대부로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가 없다"는 지적이 속출할 정도로 士族들은대가 어느 한 붕당 안에 속하게 되었다.

붕당의 활동은 정치 권력의 장악을 기도한다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것은 당시대인들에 의해 명확히 지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인조반정 직후 鄭昌衎은 동인이 남인・북인, 그리고 소북・중북・대북으로 나누어진 것을 집권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며 서인은 집권기간이 짧아서 분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서인이 국정을 담당하니 앞날이 집작된다고 하였다. 붕당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人事를 통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끌어주고 탄핵을 통해 반대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공론'이 강조되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의 정치 질서에 따라 경

하기 위해서는 붕당정치의 구체적인 면모보다는 군주체제와 같은 더 근본적이고 큰 틀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당정치가 16세기 이후로 사림과가 수립해 낸 정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며, 그 후 탕평정치, 세도정치와 연결시켜 조선 후기 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임은 틀림이 없을 듯하다.

²¹⁾ 韓沽劤、〈星湖 李瀷 研究-ユ의 史論과 朋黨論-〉(《社會科學》1, 韓國社會科學 研究會, 1957;《星湖李瀷研究》,서울大 出版部, 1980, 103~113쪽).

쟁과 대립이 조절되었다.²³⁾ 인조대의 서인과 남인이 元宗 추숭이나 주화론· 척화론 등 당시 정치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서 입장을 함께 하고, 강력한 권 세가들인 집권공신들의 힘과 논리에 무릎꿇거나 포섭당하지 않았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²⁴⁾

넓은 시각에서 볼 때 붕당간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신하들 사이의 문제였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의 전체적인 정치체제와 별다른 모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원래 동인·서인의 분기, 그 뒤의 남인·북인의 분기는 일차적으로 사림·관인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 그들 상호간에 이루어졌으며 국왕이 개입할 소지가 크지 않았다. 서로 국왕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기울여졌음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국왕의 위치나 그것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정치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붕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붕당들 사이의핵심적인 문제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 시비는 무엇보다도신하들 사이의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가려져야 하는 것이었다. 25) 이 시기에일반적으로 붕당에 대한 국왕의 개입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붕당 타파 정책을 맹렬히 반대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붕당은 간접적으로 국왕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인조 초년과 같이 정치세력의 대대적인 재편

^{23) &#}x27;朋黨政治' 또는 '黨爭'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여러 입장은 李成茂·鄭萬祚 外,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의〈綜合討論〉참조. 단 이것은 토론 속기록이므로 논리적인 기반을 갖추지 않고 입장만 개진한 경우 도 있다.

²⁴⁾ 당시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붕당론이 위와 같이 설명한 정치질서와 그대로 맞아들어가지 않았음을 들어 붕당정치론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鄭萬祚, 앞의 글(1992), 149쪽. 그러나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실제 정치상황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²⁵⁾ 더 나아가, 붕당정치란 與·野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호비판과 견제, 갈등과 타협을 조화시켜 현대의 양당정치체제와 유사한 이상적 정치형태를 추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의 이상과 정치이념을 실현하려 한 禮訟과 세 번의 換局의 시기를 붕당정치의 전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鄭玉子,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한국문화》10,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89, 233~236쪽; 池斗煥, 〈朝鮮後期 禮訟研究〉, 《釜大史學》11, 釜山大, 1987; 吳恒寧,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性格〉, 《泰東古典研究》9, 泰東古典研究所, 1993)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정치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붕당정치를 설명하는 견해이다.

기에는 최고 집권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였지만, 그것들은 부 차적인 측면일 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붕당정치가 그 자체의 논리와 질서를 갖춘 정치운영 형태인 동시에 '조선시기 군주체제'와 같은 더 큰 개 념의 내부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을 뜻한다.

〈吳洙彰〉

2. 붕당정치의 전개

1) 효종~현종대의 정치상황

효종대(1649~1659)는 병자호란으로 야기되었던 대내외적 위기와 혼란이 점차 수습되어 가고 새로운 활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안정 기조는 중국 대륙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효종 원년 (1650) 12월에 청에서는 고압적인 攝政王(九王, Dargon)이 죽고 順治帝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청의 중국 지배가 그 기반을 굳혀 가고 있었다. 즉 남부지방의 復明 운동이 1655년에 거의 진압되고 명 최후의 황족이었던 桂王(연호 永曆)은 1662년 버마로 쫓겨나 죽었다. 순치제는 一條便法(1653)・編審戶口法(1654) 등을 시행함으로써 중국의 향촌사회 저변까지 통제력을 확대시킬 수있었다. 이러한 청의 국내 사정은 조선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歲幣의 감면을 가능케 하였다.

효종은 즉위와 함께 山林學者들을 등용하여 의욕적인 정치를 시행하고자하였으나 金自點 등 일부 훈척 세력의 반발로 한때 대청관계에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 섭정왕의 사망과 김자점 일파의 숙청이 단행된 효종 2 년부터는 비교적 청의 간섭없이 내정에 충실할 수 있었다. 효종대의 대동법확대 실시와 군비 증강은 이 시기의 자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丁丑盟約 (1637)에서 금지되었던 군비확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것이었으나, 효종 3년부터는 꾸준한 군액 증가, 성곽 보수, 무기 정비, 훈련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이것은 당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벅찬 일이었으나 효종의 집념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1) 이러한 군비증강은 이른바 북벌을 감행하기에는 태부족한 것이었으나 효종 5년과 9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羅禪征伐에서 실력을 과시하는 계기도 되었고 왕권의 강화에도 유효한 것이었다.2) 따라서 효종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의 내부적 안정에 편승하여 국력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효종대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집권 서인 내부의 작은 분열 과 일부 남인 세력의 등장이었다. 서인은 인조대부터 공신계열과 비공신사림 계열 사이에 여러 가지로 알력이 있었다. 인조 말년에는 또 元斗杓(原平府院 君)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原黨과 金自點(上洛府院君)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洛黨의 대립이 있기도 하였고, 尹昉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尹西와 申欽 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한 申西 사이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심각했던 것은 金集을 중심으로 했던 山黨과 金堉 등을 중심으로 한 漢黨의 대립이었다. 김육은 효종 즉위년 우의정에 올라 인척이었던 申冕 등과 함께 한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때 김집・宋時烈・宋浚吉・李惟泰 등의 湖西 산 림세력은 효종의 예우를 받으며 조정에 들어와 산당이라는 일군의 세력을 형성하여 한당과 대립하게 되었다.3) 효종 원년 김육은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대 시행코자 하였으나 김집 등이 반대하여 실패하고, 서로 사직하는 등의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김자점의 옥사가 일어나자 그 전부터 산당의 탄핵을 받던 신면이 여기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했다.4) 효종 9년 김육이 죽자 그의 아들인 金佐明·金佑明 형제가 묘에 隧道를 써서 장례를 치렀는데, 송시열 일파에서는 이를 僭禮라고 탄핵하여 이장을 요구하였다.5) 이 사건은 효종의 만류로 중지되었으나, 이 때부터 산당에 대한 청풍 김씨 외척의 원한이 깊어 지게 되었다.

김우명은 현종의 國舅였고, 김좌명은 뛰어난 자질로 촉망을 받아 정승에

¹⁾ 車文燮, 〈朝鮮朝 孝宗의 軍備 擴充(下)〉(《檀國大論文集》2, 1968).

²⁾ 李迎春,〈尤菴 宋時烈의 尊周思想〉(《清溪史學》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³⁾ 李建昌,《黨議通略》仁祖朝, 18~19쪽.

^{4) 《}孝宗實錄》 권 7, 효종 2년 12월 신유.

^{5) 《}孝宗實錄》권 21, 효종 10년 4월 무술.

오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송시열 일파의 외척 배제 방침에 의해 좌절되었고, 그의 아들 金錫胄는 대·소과에 모두 장원급제하고 문명을 날렸으나 역시 산당의 견제로 10여 년간 청요직에 등용되지 못하였다. 현종 원년(1660)의 제1차 예송에서 김좌명·김우명 형제는 許穩의 설에 동조하여 삼년설을 주장함으로써 송시열 일파를 자극하였다.6) 이렇게 청풍 김씨 일가는 화려한 가문과 왕실의 배경 및 자신들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줄곧 송시열 일파에게 눌려 좌절을 겪었다.

현종 14년 9월 효종의 寧陵에 表石을 세우는 일과 閔愼의 代服事件으로 김우명이 송시열를 심하게 배척하였다.7) 이에 송시열은 국구가 정사에 간여한다고 비판 공격함으로써 조정이 매우 시끄러워지게 되었다.8) 민신의 대복은 송시열 등이 교시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공격은 그의 학문적 권위에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하여 양측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갔다. 같은 서인이면서도 외척이라 하여 송시열 일파의 사림세력으로부터 소외되고 견제되어 온 청풍 김씨 일가는 역시 서인으로부터 억압받아 온 남인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훗날 제2차 예송을 좌우하는 계기가 되기도하였다.

남인들은 인조반정 이후 소수파로 정권에 참여하였지만 항상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고, 서인정권이 강화되어 가면서 점차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인조 후반 이조판서로 있던 趙絅이 한때 남인의 세력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효종대에 들어오면서 소수의 남인들이 요직에 등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許積은 송시열과 함께 효종의 특별한 예우와 신임을 받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서인들과 비교적 잘 지냈기 때문에, 현종 5년에 우의정, 현종 9년에 좌의정, 현종 12년에 영의정이 되어 남인중에서는 유일하게 재상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현종 12년부터 우의정에임명된 송시열과 한때 동료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나, 김우명·김석주 등 청풍 김씨 일가와도 친하게 지냈다.

^{6) 《}顯宗實錄》 권 4, 현종 2년 5월 기사.

^{7) 《}顯宗實錄》 권 21, 현종 14년 9월 을해.

^{8) 《}顯宗實錄》 권 21, 현종 14년 9월 계미.

또 麟平大君의 처족이었던 同福 吳氏 一門도 효종대에 중용되었다. 吳挺一・吳挺垣・吳挺緯・吳挺昌 등의 형제는 인평대군의 장인이었던 吳端의 아들로서 왕실의 인척이었던 까닭에 남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청요직에참여할 수 있었다. 오정일은 효종 10년(1659) 경기관찰사, 현종 원년 도승지,현종 4년 형조판서・한성판윤・호조판서 등을 지냈고, 오정원도 호조판서를역임하였다. 오정위는 현종 5년 예조참의에 오르고 충청・경기관찰사 등을거쳐 현종 13년 호조・형조판서 등에 임용되었다. 오정창은 현종 13년부터사헌부 지평 등에 임명되어 언로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형제들은 인평대군의 아들로서 당시 현종의 총애를 받으며 세력을 떨치던 三福(福昌君 楨,福善君 柟,福平君 權)의 외숙으로서 남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력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오정원의 長子인 吳始壽는 현종 7년 문과 중시에 장원, 문명을 떨치고 현종 13년부터 이조참의・평안도 관찰사・강화유수를 거쳐, 현종 15년 도승지를 지내고 후에 우의정에 올랐다.

이 밖에 효종·현종대에 벼슬을 유지하고 있던 남인으로는 판서 權恊의 손자들이었던 權大運·權大載 종형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선조의 부마였던 吉城尉 權大任의 종형제들이며, 역시 선조의 부마였던 東昌尉 權大恒의 재종 형제들로서 역시 왕실의 먼 인척이라고 할 수 있다. 권대운은 여러 청요직을 거쳐 현종 11년 호조판서에 이어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있었고, 권대재는 효종 9년 문과 중시를 거쳐, 병조좌랑·전라도사·동래부사·대구판관 등을 지내고 있었다.

또 明宦家 출신이었던 睦來善은 허목의 문인으로서, 효종 원년 문과 급제후 삼사의 요직을 거쳐 현종 13년 공조참의, 현종 15년 3월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 또 그의 조카 睦昌明은 현종 11년 문과에 급제하여 현종 13년부터 사관 및 언관으로 요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남인 명문출신이었던 閔熙‧閔點‧閔黯 3형제의 등용도 역시 주목된다. 이들은 이조참판을 역임했던 閔應恊의 아들로서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현종대에는 청요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민희는 현종 2년 경상도관찰사, 현종 13년 승지, 현종 8년 형조참판, 현종 9년 한성판윤을 거쳐 현종 12년 강화유수로 나갔고, 민점은 현종 7년 경상도관찰사, 현종 8년부터 현종 11년까지 여러 차례 승지를 역임하였고, 현종 13

년에는 평안병사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민암은 현종 9년(1668) 문과 급제 후 사관과 언관을 역임하고 현종 15년 2월에는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그는 숙종대 기사환국 이후 우의정에 올랐다.

이 밖에 현종대에 요직에 등용되었던 남인들로는 李元禎·李夏鎭·南天漢 등 몇 사람을 들 수 있다. 이원정은 현종 7년 충청감사, 현종 8년 광주유수, 현종 14년 한성부윤·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현종 15년 3월에는 예조참판에 임명되어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현달해 있었다. 이하진은 현종 13년 弘文錄에 뽑힌 후 사헌부 장령·시강원 필선·홍문관 수찬·사간원 헌납 등의 청요직을 전전하고 있었다.

남인으로서 한때 병권을 잡았던 柳赫然도 효종이 북벌계획 중 李浣과 함께 발탁한 인물로서 효종 4년(1653) 이후 황해병사·수군통제사·포도대장·훈련대장 등의 군사령관을 역임하였고, 현종 3년 병조참판, 현종 5년 한성판윤, 효종 6년 다시 병조참판·어영대장을 거쳐 현종 10년 훈련대장에 재임용되어 허적과 함께 訓鍊別隊(禁衛營의 전신)를 창설하는 등 현종대 내내 이완과 함께 병권을 분장하고 있었다. 그는 또 인평대군의 아들이었던 三福 형제와 인척관계를 맺어 왕실과도 통하고 있었다.9)

이와 같이 남인들은 효종대부터 정권의 핵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효종 10년~현종 원년 제1차 예송에서 패한 후 크게 실세하였다. 남인의 중추였던 조경·허목·윤선도·권시 등의 명사가 축출되었고, 신인들의 진출도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예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의 남인들은 그런대로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서인들이 전권을 행사하던 현종대에도 허적·유혁연 및 오정일·오정위·오정원 등 동복 오씨와 인평대군 일가를 축으로 하여 남인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通淸과仕宦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현종 10년 이후부터는 남인의 진출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현종 말기에는 왕이 송시열 일파의 서인 주류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의 당세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인출신들을 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9) 《}肅宗實錄》 권 3, 숙종 5년 정월 기미.

그러나 현종 15년 당시에도 역시 중앙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직의 임용에는 아직도 서인들이 절대적 우세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한번도 人事薦望權을 놓친 적이 없기도 한 때문이었지만, 약 반세기에 걸친 장기집 권으로 그들의 문벌 기반이 워낙 강하게 다져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인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그들 내부의 알력과 반목으로 여러 형태의 분화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산당과 한당의 대립에서 기원한 청풍 김씨 외척과 송시열 일파 사람간의 알력이었다. 현종 14년 김우명과 송시열의 분쟁을 계기로 김석주 등 청풍 김씨 일가는 허적・삼복 및 동복 오씨 일가의 남인들과 밀착하여 송시열 일파의 거세를 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무렵에 일어난 제2차 예송은 남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인 자신들의 당착으로 패배를 자초함으로써 인조반정 이후 초유의 정권교체를 가져오게 되었다.10)

2) 제1차 예송

현종대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치열한 예송은 慈懿大妃가 효종과 효종비의 상에 입을 복제를 두고 일어났던 분쟁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의 특수한 종법적 위상에 있었다. 남인의 삼년설과서인의 기년설은 종통론적으로 효종을 인조의 장자와 차자로 각기 다르게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당시에 발달했던 조선 예학의 두경향으로 말미암은 학문적 시각 차이가 작용하고 있었다. 효종을 장자로 보는 쪽은 帝王家禮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왕실에서는 형제의 차서보다 왕위의 계승자에게 적통을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반면 효종을 차자로 보는쪽은 예의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여 왕실과 사서인의 예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효종은 왕위의 계승에도 불구하고 차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에는 《의례》의 복잡한 주소들이 전거로 제시되었으나, 그 전거들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¹⁰⁾ 李迎春,〈服制禮訟과 政局變動 -第二次 禮訟을 中心으로ー〉(《國史館論叢》22, 國史編纂委員會, 1991), 229~236\.

분명한 단안이 나올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논쟁은 끝없이 지속되었다.11)

예송은 처음 학문적 논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기에 내포된 하나의 금기사항 곧 효종의 정통성 시비가 촉발되면서 위험한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하게되었다. 윤선도에 의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격을 받은 서인들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을 비롯하여남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조정은 각기군자—소인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각박한 흑백논리가 팽배하게 되어 서로 견제 비판하며 공존을 인정하던 풍토는 사라지고, 결국 제2차 예송 이후 수차례의 환국을 거쳐 일당전제의 추세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예송은 조선후기의 정치 환경을 변화시킨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예송을 두고 전개된 이러한 정치의 형태는 문치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했던 조선시대 사대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12)

(1) 제1차 예송의 배경

삼년설과 기년설로 대립하였던 己亥禮訟은 그 직접적 계기가 국왕의 大喪에 母后의 服을 규정치 않은 《國朝五禮儀》의 미비점 때문이었다. 논쟁은 주로《의례》喪服篇 斬衰章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자구 해석 이상의 근원적인 인식 차이가 내재해 있었다. 그것은 禮의 적용에 있어서 제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집약되는 것인데, 이는 신분문제에 대해 禮制가 가진 양면성, 즉 그 분별성과 보편성에 대한이해 태도에 관련된 것이었다. 예의 분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왕가는 사서인과 달라 왕위 계승자에게 종통을 주게 되므로 효종이 장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대한 모후의 복을 재최 삼년으로 단정하게 된다. 그러나 예

¹¹⁾ 禮訟 관계의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黃元九,〈己亥服制論案始末〉(《延世論叢》, 社會科學篇 2, 1963).

池斗煥,〈朝鮮後期 禮訟研究〉(《釜大史學》11, 1987).

李迎春,〈第一次禮訟과 尹善道의 禮論〉(《淸溪史學》6, 1989).

^{——,} 위의 글(1991).

李成茂,《17世紀의 禮論과 黨爭》(《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¹²⁾ 李成茂, 위의 글, 11쪽.

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효종이 왕위에 올랐더라도 천생의 차례인 차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상복도 朞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다분히 고전적·보수적 성향의 예학 전통을 반영한 것이며, 후자는 《가례》의 보편화에 따른 새로운 예학 경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예송에 참여한 학자들의 개별적 동향을 대략 분류한 것이며, 이들이 확고한 전통을 가진 학파를 형성했거나 일관성 있는 이념으로 결집된 집합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허목·尹鑴 등의 남인학자들이 분별주의적 경향을, 송시열·송준길 등의 서인학자들이 보편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13)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송이 일어나기 전인 효종 10년(1659) 이전에 남인과 서인간에 특별한 갈등이나 분쟁은 보이지 않는다. 효종대에는 오히려서인 내부의 갈등이 정치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효종의 산림우대 정책으로 정계에 진출한 김집 등의 산당은 김육을 중심으로 한 한당과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또 효종 2년에는 미묘한 대청관계 속에서 반정공신 김자점 일과가 산당의 공격을 받고 숙청되기도 하였다. 반면 남인들의 정계 진출은 미미하였다. 당시 남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었던 趙綱은 효종 초기부터 淸의 기피 인물로 지목되어 정계에서 은퇴하여 향리에 있었다. 효종대에 북벌 준비와 관련하여 허적・柳赫然 등의 극소수 남인들이 중용되고 동복 오씨 일가 등 몇몇 仕宦家 출신의 인사들이 조정에 있었으나 그 세력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후일 남인에 합류한 尹鑴와 權諰 등은 이 때까지는 송시열 등의 서인들과 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으로 분류되지도 않았고14) 조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허목은 오랫동안 재야에 있다가 효종 10년에 65세의 나이로 겨우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어 입조해 있었다. 따라서 이

¹³⁾ 이러한 예학의 두 경향을 王者禮不同土庶派와 天下同禮派로 지칭하기도 한다 (池斗煥, 앞의 글).

¹⁴⁾ 尹鑴의 아버지 尹孝全은 광해군 초기에는 小北의 柳希奮과 친하였고 후에는 大 北의 李爾瞻과 친하였으므로 윤휴는 보통 북인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윤휴 자신은 경기도에서 생장하여 청년시절에는 주로 기호지방의 西人들과 교 유하였다. 權課는 李珥와 成渾을 사숙하였던 朴知誠의 제자였고, 송시열과 친구 이며 사돈간이었으므로 서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송 이후 남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다.

무렵 남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서인들과 정쟁을 벌일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제1차 예송은 정쟁적 차원에서 발단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예송의 발단

효종 10년(1659) 5월 효종의 初喪에 계모후였던 자의대비가 입을 복제논 쟁은 성복일 직전에 송시열과 윤휴 사이에 시작되었다. 국상의 복제는 《국조 오례의》 흉례편 복제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모후가 사 왕을 위해 입는 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관들 사이에 논 의가 일어나자 당시 궁중에서 喪事를 지휘하고 있던 송시열은 궐 밖에서 대기 하고 있던 李欄・張善沖・尹鑴・朴世采 등에게 사람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휴가 장자를 위해서는 상ㆍ하 구분없이 삼년복을 입으며, 임금을 위해 서는 內·外宗(동성·이성의 여자 친척)이 다 斬衰를 입는다는15) 설을 제시하였 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송시열은 《의례》 疏說에 承重했으나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예외규정(四種說)16)을 들어 기년을 주장하였다. 이에 윤휴는 다시 제왕가에서는 종통을 중시하는 까닭으로 사종설의 채택이 불가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논변은 시한이 촉박하여 중지되었다.17) 한편 李時白을 통해 윤휴의 삼년설을 들은 영의정 鄭太和는 이 문제를 송시열과 의논했으나 사종설에 결부된 종통문제의 심각성을 예감하고 《의례》에 근거한 삼년·기년설을 다 버리고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장자·중자 구분없이 모 두 기년을 입게 한 규정, 이른바 국제기년복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18)

조대비의 복제가 내포한 종통문제란 바로 적손을 제쳐두고 차자로서 왕위

^{15)《}禮記》 권21,雜記下,"外宗爲君夫人猶內宗也(註)內宗五屬之女也".

¹⁶⁾ 비록 承重했더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4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正體不得 傳重으로 嫡子가 廢疾로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傳重非正體 로서 庶孫이 後嗣가 되었을 때이며, 셋째는 體而不正으로서 庶子를 후사로 세 웠을 경우이며, 넷째는 正而不體로서 嫡孫을 후사로 세웠을 경우이다(《儀禮注 疏》권 11, 喪服 斬衰).

¹⁷⁾ 尹 鑴,《白湖全書》 · · 26, 雜著 書宋貳相小說後(慶北大本 中卷, 1974, 1,051~1,057零).

^{18) 《}顯宗實錄》 권 1, 현종 즉위년 5월 을축.

를 계승한 효종의 종법상 위상의 해석문제였다. 윤휴의 삼년설은 제왕 종통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장유의 차서보다 계서 승통이 중시되어 즉위 군립한 효종에게 宗統과 嫡統이 돌아갔으므로 그를 장자로 간주하여 삼년복을입어야 할 뿐 아니라 《周禮》의 '爲天王斬說'에 의거 참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9) 이에 대해 송시열은 장유의 차례는 변동시킬 수 없으며, 또《의례주소》 사종설의 하나인 "아들이기는 하지만 正이 아닌 경우, 즉 庶子를 後嗣로 정했을 때이다(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200라는 전거를 들어 삼년복이불가함을 말하였다.21) '體而不正'에 해당하는 서자를 衆子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윤휴는《의례》의 이 규정이 사대부나 왕실의 지파들을 위한 규정으로제왕가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22) 송시열과 송준길은 이것을 상하통용의 일반 원칙으로 보았다.23) 이러한 주장들은 각기 그들의 예학에서 신분차별주의적 경향과 보편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기년복을 확정하자 윤휴는 더 이상 논란하지 않아 일반의 관심에서 덜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복제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학문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송시열과 윤휴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이었고 서인과 남인의 정쟁 차원에서 시작된 분쟁은 아니었다. 따라서 복제 예송의 근본 원인은 이 시대 예학의 상이한 입장 차이에 있었고, 붕당의 정치적 대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겠다.²⁴⁾

(3) 예송의 전개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본격적인 예송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이듬 해인 현종 원년(1660) 3월 효종의 練祭(小祥)를 두달 앞두고 허목이 복제의 개정을

¹⁹⁾ 尹 鑴,《白湖全書》 권 26, 書宋貳相小說後(慶北大本 中卷, 1974, 1,051쪽).

^{20)《}儀禮注疏》 권 11, 17쪽(《文淵閣四庫全書》, 102~366쪽).

^{21) 《}顯宗改修實錄》 권 1, 현종 즉위년 5월 을축.

²²⁾ 尹 鐫,《白湖全書》 권 26, 答許正論服制疏書 別紙(慶北大本 中卷, 1974, 1,057零).

^{23) 《}宋子大全》권 26, 7~8쪽, 練服變改及許穆圖說辨破議. 《顯宗實錄》권 2, 현종 원년 4월 병술.

²⁴⁾ 李迎春, 앞의 글(1989), 155쪽.

상소하면서부터 였다. 여기서 그는《의례》斬衰章 '父爲長子' 조항의 賈公彦 疏說인 "第一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第二長子를 후사로 세우고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25)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효종을 인조의 장자로 단정하고, 재최 삼년장의 '母爲長子'條에 의해 대비의 복을 재최 삼년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四種說 중 '體而不正'의 庶子를 妾子로 간주하여 효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6) 여기서 허목이 강조한 것은 효종이 宗廟를 주제한 正體였다는 것이다. 효종은 적처 소생의 제2장자였지만 제1자가 죽은 후에 정식 후사로 세워져 장자로 부르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후사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아버지가 참최를 입지 않는《의례》疏說의 네 가지 예외규정의 하나인 체이부정 즉 서자가 承重한 경우에 대하여 송시열 등은 이 때의 서자를 적장자 이외의 여러 아들 곧 衆子로 해석하였으나 허목은 이를 글자 그대로 첩자로 해석하였다.

사실 예송 논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서자의 해석문제였다. 서자란 용어는 원래 중자와 첩자 두 가지의 개념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바로 예송의 전거가 되었던《儀禮注疏》상복편 안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중자로 또 어느 경우에는 첩자로 정의되어 있다.27) 허목은 體而不正條의 서자를 첩자로 단정하였으나 그에 따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 그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효종은 인조가참최를 입을 관계에 있었으며 따라서 조대비는 齋衰 삼년복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28) 천자나 제후는 기년 이하의 복을 입을 관계에 있는 방친의 상에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고 실제로 복을 입지 않지만 정통의 친속(직계 존비속)이나 그 부인들에 대해서는 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삼년복을 기년으로 강복할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허목의 논리에서 본다면 효종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통의 장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조대비의 복을 기년으로

²⁶⁾ 許 穆、《眉叟記言》 권 64, 追正喪服失禮疏.

^{28)《}儀禮注疏》권 11, 喪服篇, 齊衰三年章.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허목의 예론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후에 이익이나 丁若鏞 같은 일부 남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²⁹⁾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의 논지가 효종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허목의 예설은 윤휴의 참최설에 비해서는 다소 온건한 측면이 있었지만, 효종의 종통을 명백히 하고 그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입장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허목은 사실 이 복제소를 올리기 전에 윤휴를 찾아가 의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⁰⁾

허목의 疏가 제기되자 조정은 크게 동요하였다. 예조에서는 이 문제를 대신과 儒臣들에게 收議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에 기년설 주창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 준길이 먼저 상소하여 변명하였다. 송준길은 서자를 적장자 이외의 여러 아들 곧 중자로 파악하였는데, 서자를 중자로 볼 경우 앞의 "제2장자도 또한 장자 라고 부른다(第二長子 亦名長子)"와 모순이 되므로, 그는 前說의 '第一子死'를 미성년에 죽은 아들로 보았다. 이 경우에는 제이장자를 후사로 세우고 장자라 고 부를 수 있으나, 제일자가 성년이 된 후에 죽어 부모가 그를 위해 삼년복 을 입었으면, 그 후에 제이장자를 후사로 세워도 장자로 부를 수 없고 삼년복 을 입을 수도 없다는 것인데, 이는 참최를 두 번 입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었다. 이것은 비단 송준길 뿐만 아니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예론의 일반적인 견해였다.31) 송준길은 또 왕에게 면담을 청하여 직접 기년설의 타당 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32)

송준길의 반론을 본 허목은 다시 상소하여 기년설을 비판하고 복제에 관계된《儀禮》·《禮記》등의 경전적 전거를 정리하여 〈喪服圖〉라는 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이 두번째의 상소에서 허목은 이른바 서자의 개념에 대

²⁹⁾ 李 瀷、《星湖僿說》 권 11, 人事門 己亥禮訟.

^{----, 《}星湖全書》 권 46, 眉叟禮論.

丁若鏞,《與猶堂全書》제 3집(권 19), 正體傳重辨.

李迎春,〈實學者들의 禮學思想 - 星湖와 茶山을 중심으로-〉(《白山 朴成壽敎授 華甲紀念論叢》, 1991).

³⁰⁾ 尹 鑴,《白湖全書》附錄 권 5, 年譜(慶北大本 下卷, 1974, 2,139쪽).

^{31)《}宋子大全》 권 26, 大王大妃服制議.

^{32) 《}顯宗實錄》 권 2, 현종 원년 4월 병술.

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첩자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것이 중자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히 적장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극히 제한적인 경우일 뿐이며 보통의 경우는 첩자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또 적서의 구별은 엄격한 것인데 적자를 함부로 서자라고 병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제일자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조부의 대통을 있는 정체인가 아닌가 하는 점인데, 효종은 인조의 적자(정체)로서 종묘를 받들어 계승하여 일국의 임금이 되었으므로 장자의 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허목은 첨부한 〈상복도〉에서 복제에 관한 모든 경전 근거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보충 설명을 붙였다.33)

이 논쟁 도중에 예조에서 대신들의 헌의를 수합하여 보고하였는데, 그것에 의하면 영돈녕부사 李景奭, 영의정 鄭太和, 영중추부사 沈之源 등은 이전의 國制에 의한 기년설을 고수하였으나, 판중추부사 元斗杓만이 당초 그 자신도 찬동했던 국제기년설의 잘못을 인정하고 허목의 설에 찬성하여 삼년복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 낙향해 있던 송시열도 함께 헌의하였는데, 그 요점을 정리해 보면, 자신들의 기년설이 현행법인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복제규정을 따랐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古禮(《의례》)의 복제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하기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년복이 《대명률》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고례에 의하더라도 타당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그도 송준길과 마찬가지로 제일자가 성년에 죽어 아버지가 한 번 참최를 입은 경우에는 차장자를 후사로 세웠더라도 또 다시 참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최는 두번 입지 않는다(不二斬)"는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하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차장자를 위해 참최를 입는 경우는 제일자가 미성년에 죽어 아버지가 복을 입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四種說의 체이부정 즉 서자 승중의 규정과 모순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는 이 경우의 서자를 중자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시열은 참최를 거듭 입지 않는 것이《의례》의 합리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인정으로 보

³³⁾ 李成茂, 앞의 글, 41~43쪽 참조.

아도 아버지가 자식의 상에 매번 참최를 입을 수는 없다고 보았고 그 예로 세종의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송시열의 예설은 허목의 예설에 비해 치밀하고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비교적 고례의 원의에 가까왔던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제왕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34》《의례》의 이 조목은 원래 대부들을 위해 규정된 예이며 왕실의 예가 아니었으므로, 이것으로써 조대비의 복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대체로 종통과 복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왕가에서는 장자를 버리고 서자(중자)로서 대통을 계승시키더라도 형제의 서열은 신중히 한다던 가, 또 즉위한 이를 정통으로 삼더라도 모두 삼년복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제왕례의 특수성에 대한 주의 소홀이나 복제와 종통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인식이 바로 남인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구실이 되었다. 송시열·송준길 등의 예설은 논리적이고 치밀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왕실의 종통문제에 약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같은 서인 내부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었고, 남인들로부터는 격심한 비판을 받아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다.35)

이밖에도 송시열은 윤휴의 지론이었던 '天王皆斬說'을 비판하여 대비가 효종에 대해 내·외종의 친척들이 신하의 처지에서 입는 참최를 입을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고례에는 명백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현행의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기년제를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기년설은 고례인 《의례》에 의하더라도 틀리지 않지만 현행 법전에 의하면 더욱 명백하다는 것이었다.36)

이 때 영의정 정태화가 德宗의 상과 順懷世子의 상에서 행한 전례를 실록에서 찾아 참고할 것을 청하자, 왕은 실록을 考出한 후에 다시 수의토록 명하였다. 왕은 또 허목이 올린〈상복도〉를 베껴 여러 대신들과 송시열에게 보

³⁴⁾ 丁若鏞,《與猶堂全書》제 1집(권 12), 己亥邦禮辨 및《與猶堂全書》제 3집(권 19), 正體傳重辨.

³⁵⁾ 李成茂, 앞의 글.

^{36)《}宋子大全》 권26, 大王大妃服制議.

내어 옳고 그름을 구하였다. 대신들의 의견은 전과 다름이 없었고, 송시열은특히 왕실의 예와 사가의 예가 근본 정신에 있어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례》의 '通上下'라는 표현은 장자의 칭호를 천자국의 太子, 제후국의 世子 및 대부가의 嫡子에 통용해 쓰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으나, 송시열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천자·제후가 대통을 계승하여 군림하는 것이나 사대부가 가계를 계승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 것이다. 이는 바로 성리학적인 보편주의의 발상이며 신분 초월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시열은 《의례》 疏說의 第一子와 庶子의 개념 정의 및 해설에 주력하여 허목의 妾子說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서자는 중자를 뜻하는 것으로 결코 천한 칭호가 아니며, 효종을 서자라고 하여 해로울 것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경전 근거야 어떻든 효종을 체이부정의 서자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지칭하였다는 것은 후일 그의 죄목이 되었다.

허목의 복제 예론은 이후 모든 남인 예설의 기초가 된 것으로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그의 예론은 제1차 예송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지만, 그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제2차 예송에서 왕실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그의학문적 권위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 국가의 원로로 존중을 받았다. 이는 그의예설 자체가 가진 학문적 논리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장점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논리가 효종의 종통을 수호하고 왕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왕실의 예를 사대부가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비록 복제와 종통을 연계시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효종에 대해 중자 혹은 서자의 복을 주장함으로써 그 정통성에 의혹의 여지를 남긴 송시열의 예설은 왕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송시열도 물론 효종의 정통성에 이의를 가진 것은아니었지만, 왕실 전례가 가진 정치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혐의를 쓰고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4) 예론의 정치분쟁화

허목의 상소로 야기된 예송은 송시열·송준길의 반박으로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조정에서는 대신들의 의견를 받는 한편 사관을 赤裳山 史庫에 보내 실

록에서 전례를 찾아오게 하였다. 정태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신들은 국제를 근거로 기년을 고집했으나, 우의정 원두표는 당초의 견해를 바꾸어 허목의 삼년설을 지지하였다.37) 이 무렵 조야의 분위기는 상당히 삼년설에 기울어진 것같았고38) 현종도 내심 기년설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39)

그런데 이 때 윤선도의 상소가 들어감으로써 예송의 진행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윤선도의 복제소는 허목의 두번째 상소와 실록 고출로 제2차 수의가 진행중이던 현종 원년(1660) 4월 18일 승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미리 검토한 도승지 金壽恒 등은 그것을 곧바로 왕에게 올리지않고 요지를 보고한 후 그것이 예론을 가탁한 음흉한 중상모략이라고 아뢰어 왕이 친람하지 않고 반려케 하였다.40) 다음날부터 윤선도에 대한 삼사의탄핵이 시작되어, 24일 權認의 구원 상소에도 불구하고 25일 疏章을 불태우고 30일 삼수로 정배하게 되었다. 서인들은 이 때 그를 극형에 처하기 위해논박을 계속했으나, 그가 오랫동안 효종의 師傅를 지냈던 인연때문에 겨우극변유배에 그치게 된 것이다.

그의 상소는 대체로 허목의 재최 삼년설을 지지한 것으로서 그 근거와 논리를 보충하기 위해 五服制의 정치적 의의를 강조하고, 새로이 효종 적장자설을 내세웠다. 또 그는 이른바 嫡統宗統說을 제기하여 송시열·송준길의 기년설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즉 그는 송시열 등의 중자설이 효종의 적장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고 종통과 적통을 분리시키려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또 여기에 덧붙여 송시열의 정치적 실책과 개인적 과오에 대한 심한 인신공격을 가하였다.41)

윤선도의 〈服制疏〉는 제1차 예송의 전개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그가 제 기했던 종통·적통설은 왕실 전례 논쟁을 정치문제화하여 정국을 변동시키 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의 전형적인 정쟁의 한 양상

^{37) 《}顯宗實錄》 권 2, 현종 원년 4월 정유.

³⁸⁾ 尹 鑴,《白湖全書》 권 26, 書宋貳相小說後(慶北大本 中卷, 1,053쪽).

³⁹⁾ 현종은 같은 복제 개정 문제로 3차례나 대신·유신들에게 수의케 하였는데, 이 는 삼년설에 상당히 동요된 증거라 하겠다.

^{40) 《}顯宗實錄》 권 2, 현종 원년 4월 임인.

⁴¹⁾ 尹善道,《孤山遺稿》 권3, 論禮疏.

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인조반정 이후 당시까지 견제와 비판의 원리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서인 주도와 남인 참여의 정치틀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윤선도의 상소로 조정은 충격과 공포에 쌓이게 되었고, 결국 그가 서인들의 공격을 받아 삼수에 유배되고 난 직후에 우의정원두표의 헌의가 뒤늦게 들어왔다.

원두표는 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목의 삼년설을 변호하였다. 그의 논리는 대부분 허목의 것을 답습한 것이었지만, 윤휴와 윤선도 등의 예설에도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장자를 위한 삼년복은 繼體와 承重을 위한 것으로 장차 계승할 자에게도 삼년복을 입으니 하물며 이미 계승한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으며, 둘째 제왕가에서는 실제로 대를 이은 계통만을 중히 여기며, 셋째 종통과 적통은 나눌 수 없으며종통이 있는 곳에 적통이 있다는 논리였다. 이와 같이 대신들 중에서 중대한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왕은 또 다시 수의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원두표의건의에 따라 李惟泰・尹鑴・沈光洙・許厚・尹宣擧 등 유현으로 알려진 재야학자들도 헌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에 이유대는 기년설을, 심광수는 삼년설을 간단하게 진술하였고, 허후와 윤휴는 명백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윤선거는 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휴・심광수・허후 등은 모두 삼년설을 주장하던 인물들이었으나 그들은 당시의 흉흉한 분위기에 위압되어 제대로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였다. 생각

원두표의 건의로 이루어졌던 유신들의 헌의가 미진하였으므로, 예조의 건의에 따라 왕은 최종적으로 대신들의 수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들이모두 고례는 불문하고 당초 헌의한 국제에 따라 기년복으로 확정할 것을 청하였고, 실록을 상고한 결과도 일찍이 삼년복을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은다수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을 명하여 마침내 기년제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하여 현종 원년(1660) 3월 허목이 제기하여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삼년설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송시열 등이 주장했던 고례에 의한 기 년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조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정태화 등

^{42) 《}顯宗實錄》 권 2, 현종 원년 5월 정미.

이 고수한 國制(《經國大典》)에 의한 기년설이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효종의 장자·차자 지위를 구별하지 않아도 좋은 일종의 편이주의적이며 절충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것은 목전의 문제를 무마하기에는 적당한 처사였으나 문제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더구나 서인들은 국제이든 무엇이든 기년설이 채택됨으로써 그들의 예론이 승리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송시열 일파의 기년설은 고례에 근거한 것으로서효종을 중자로 간주하는 것이었으므로,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기년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서인들의 승리에 대한 이러한 착각 때문에그들은 제2차 예송에서 패배를 자초하게 되었다.

제1차 예송에서 최대의 파란을 일으킨 윤선도의 〈복제소〉는 남인들의 집 단적 의사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상소가 일으킨 물의는 곧 당론이라는 집단적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소로 인해 미증유의 정치적 위협을 느낀 서인들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윤선도를 중형에 처하고자 하였다. 이 처사를 부당하게 생각한 남인들. 즉 권시·조경·趙壽 益·洪字遠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를 변호·구원하고 기년설의 오 류를 논변하다가 처벌되었다. 이 문제는 또한 조관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성균관 및 지방 유생들에게까지 격론을 유발시켜 전국적인 소동을 일으키기 도 하였다. 즉 현종 2년 성균관 학생들의 집단상소,43) 현종 7년의 영남 유생 柳 世哲 등 1,400여 명의 연명 상소44) 및 이에 대한 관학 유생과 호서ㆍ호남 유 생들의 반박 상소 등이 그것이었다.45) 이들에 대한 서인정권의 처분은 단호 하여, 삼년설을 옹호하거나 윤선도·조경 등을 두둔하는 관원들과 유생들은 가차없이 조정에서 추방하여 폐고시키거나 정거 처분하여 출사의 기회를 박 탈하였다. 이 때문에 허목ㆍ윤휴ㆍ윤선도ㆍ조경ㆍ홍우원ㆍ조수익ㆍ趙壽基ㆍ洪汝 河・吳挺昌 등의 명망있는 남인들과 권시・金壽弘 등 삼년설에 동조한 서인 일부가 현종대 15년간 폐고되어 벼슬에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 인들의 타격은 컸으나 그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

^{43) 《}顯宗實錄》 권 4, 현종 2년 5월 병진.

^{44) 《}顯宗實錄》 권 12, 현종 7년 3월 계묘.

^{45) 《}顯宗實錄》 권 12, 현종 7년 3월 을사·4월 기사 및 5월 병신.

다. 許積과 柳赫然 등 예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남인 일파는 여전히 요직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들은 미미한 세력에 지나지 않았고 人事薦望權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력은 서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상의 전개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제1차 예송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이 예송은 당초 남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발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효종의 비정상적 왕위계승이 안고 있었던 종통문제의 필연적인 발로였다고 할 수 있 다. 예송은 북인출신으로서 남인보다 서인과 친했던 윤휴에 의해 문제화되었 지만, 실상 인조와 효종간의 종통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도 하였다. 또 이 복제예송은 17세기에 이르러 급속하게 발달한 조선 예학 의 서로 다른 두 경향의 학문적 견해 차이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까지 강하게 남아 있었던 王朝禮 중심의 분별주의적 예학과, 16세기 이 후 크게 유행하게 된 《가례》 중심의 보편주의적 예학의 왕실종통에 대한 인 식차이가 문제를 일으킨 주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송은 당초 경전 해석 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논쟁으로 전개되었으나, 윤선도의 상소에 의해 종통 문제를 건드리게 됨으로써 미묘한 정치적 금기를 촉발하여 극단적인 당파대 결로 치닫게 되었다. 특히 그의 송시열·송준길에 대한 인신공격도 양파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당파간의 불신이 깊어지게 되었고 일부 남인들에 대한 폐고 조치는 그들의 원한을 증대시키고 붕당적 결속을 가져오게 하였다. 정태화가 주도했던 당시의 조정은 양측의 장자・중 자설을 모두 버리고 《經國大典》과 《大明律》을 근거로 한 이른바 국제기년복 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효종의 장자·중자 지위를 구분하지 않은 점에서 편 리하고도 절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 때 장자・중자의 위상을 명백히 밝 혀 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2차 예송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또 한 조정에서 채택한 국제기년복은 송시열 등이 주장한 고례기년복과 같은 기 년복이었으므로 제1차 예송은 서인측의 승리로 간주되었는데, 이것이 제2차 예 송에서 서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패배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1차 예송은 문제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또 한 차례의 예송을 예비하고 있었다 하겠다.

3) 제2차 예송과 남인정권의 등장

제2차 예송은 효종비 仁宣王后의 상에 조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논쟁의 구조나 원리는 제1차 예송과 같은 것이었으나, 그것은 전자에서와 같이 본격적인 서인 대 남인의 쟁송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예송은 영남 유생 都愼徵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지만, 제1차 예송의 주역들인 남인들(허목ㆍ윤휴ㆍ윤선도ㆍ권시 등)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2차 예송은 현종 15년(1674) 2월 喪服을 처음 정할 때 같은 서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으나,46) 주된 논쟁은 그 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왕과 賓廳의 신하들(서인) 사이에서 있었고,47) 3일 만에 왕은 독단으로 복제를 개정하고 빈청의 대표였던 영의정 金壽興과 禮官들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지었다.48) 이 복제논쟁은 결국 현종과 서인 조신들간의 논쟁이었다. 이 때 왕의 측근에서 복제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왕비의 종형제였던 金錫胄였다. 김석주는 외척 청풍 김씨 일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현종말~숙종초의 정국 운영을 좌우하고 있었는데, 제2차 예송은 당시에 이미 김석주의 송시열 일과 제거 공작으로 이해되고 있었다.49) 이를 위해 그는 허적·오정위·오정창 등의 남인들과 손을 잡았다.50) 이리하여 국제 기년복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던 송시열 일파의 서인 주류가 몰락하고, 청풍 김씨와 남인의 연립정권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50여 년에 걸쳐 다져졌던 서인정권의 지각을 붕괴시키고 정국의 구도를 재편한 초유의 정변이었다.

⁴⁶⁾ 당초 서인이었던 예조판서 趙珩, 참판 金益炅, 참의 洪柱國 등은 喪服節目에 대비의 복을 齋衰朞年으로 정하여 왕의 재가를 받았으나, 서인 朴世堂이 문제를 제기하여 朞年을 大功으로 고쳐 付標하였다(《顯宗改修實錄》권 27, 현종 15년 2월 임술).

^{47) 《}顯宗實錄》 권 22, 현종 15년 7월 을해~정축.

^{48) 《}顯宗實錄》 권 22, 현종 15년 7월 무인.

^{49) 《}肅宗實錄》권 15, 숙종 10년 9월 계미.

⁵⁰⁾ 위와 같음.

(1) 제2차 예송의 배경

제2차 예송은 예학적 논쟁으로서의 의의보다 그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 제2차 예송의 배경에는 왕과 서인세력, 청풍 김씨 일족과 송시열 일파의 갈등, 허적과 송시열의 대립, 남인과 청풍 김씨 외척의 밀착 등여러 정치집단 사이의 갈등과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의이해는 甲寅禮訟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제 2차 예송은 외형상 현종과 實廳의 儀禮諸臣들 사이의 논쟁으로 진행되었고,왕의 독단에 의해 기년복으로 확정되었다. 왕의 뒤에는 김우명・김석주 등의청풍 김씨 외척과 福昌君 楨 등의 종실 측근들이 지원하고 있었고, 빈청의제신들은 대부분 송시열의 문인이었거나 그 추종자들이었다. 청풍 김씨 일가는 기해예송 때부터 허목・윤휴 등의 설을 좇아 '효종적장자설'을 고수하고있었고 의례에 참여한 신하들은 송시열・송준길의 중자설을 지지하고 있었다. 宮中세력과 府中세력으로 대별할 수 있는 이들 두 집단의 논쟁은 예학적견해의 대립이었다기보다,오래 전부터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무렵에 표면화된 정치투쟁의 일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종은 만년에 이르러 송시열 일파의 집권 서인들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왕은 이 무렵 건강이 악화되어 정사에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그들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왕도정치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 조정의 공론을 쥐고 왕권을 견제함으로써, 이른바 '主弱臣强說'이 중국에까지 유포되고 있었다.51) 차츰 현종의 송시열·송준길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시들하게 되었다. 송시열은 현종 10년(1669) 3월 대신 李景奭을 비방하는 상소를 올려 조야의 신망을 잃었고,52) 현종 14년에는 寧陵表石件과 閔愼代服件으로 국구 김우명과 심하게 싸워 물의를 일으켰다.53) 특히 그 해 10월 寧陵 遷葬後 그가 올린 상소에는 왕이 심한 말로 힐책하기도 하였다.54)

^{51)《}顯宗實錄》권 21, 현종 14년 10월 임진. 李肯翊、《燃藜室記述》권 34、肅宗朝故事本末 吳始壽賜死.

⁵²⁾ 李肯翊,《燃藜室記述》 권 31, 顯宗朝故事本末 溫行時李景奭箚忤宋時烈.

^{53) 《}顯宗實錄》 권 21, 현종 14년 9월 을해.

^{54) 《}顯宗實錄》 권 21, 현종 14년 9월 무신.

왕과 송시열 사이의 이러한 상호불신은 점차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 현종은 말년에 이르러 서인들의 전횡을 혐오하게 되었고, 특히 당파적의논을 심하게 배척하였다. 대체로 1672년 이후부터 서인정권에 대한 현종의불신과 불만은 표면화되었고, 이에 따라 남인의 등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있었다. 여기에 현종 14년 영릉의 遷葬과 表石 논쟁 및 민신의 대복사건으로송시열과 국구 김우명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국변화의 조짐들이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무렵에 일어난 제2차 예송은 남인들이 별로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인 자신들의 당착으로 패배를 자초함으로써 인조반정 이후 초유의 정권교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2) 제2차 예송의 발단과 전개

현종 15년의 제2차 예송에서 논의의 핵심은 仁宣王后가 조대비의 장자부에 해당하는가, 중자부에 해당하는가를 판가름하는 문제였다. 제1차 예송에서는 《경국대전》에 장자와 중자에 대한 복이 구별없이 기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효종의 지위를 판별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자부복에 대해서는 고례인 《儀禮》에는 長子婦 大功, 衆子婦 小功으로 분별되어 있었고,55) 《경국대전》에는 각기 기년과 대공으로 나뉘어 있었다.56) 고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장자부와 중자부의 복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기때문에 이제 효종의 장자・중자 지위를 판별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 문제에 대해 송시열계가 중심이 된 조신들은 효종을 중자의 지위로 볼수밖에 없었고, 현종이나 청풍 김씨 등 왕실측에서는 장자의 지위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논쟁에는 남인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허목・윤휴・홍우원・오정창 등은 폐고되어 있었고, 윤선도・권시・조경 등은 이미작고한 뒤였다. 또 영의정 허적은 서인의 탄핵을 받아 가족을 데리고 충주에 낙향해 있었다.

현종 15년 2월 24일 인선왕후가 홍서하자 예조에서 성복절목을 마련하면 서 조대비의 복제를 재최 기년으로 정하여 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 때 예조

^{55)《}儀禮注疏》 권 11, 喪服篇 大功・小功.

^{56) 《}經國大典》 권 3, 禮典 五服.

판서는 趙珩, 참판은 金益炅, 참의는 洪柱國으로 모두 서인이었고, 특히 김익경은 金萬基의 숙부이며 송시열의 제자였는데도 그들은 당초에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곧 같은 서인이었던 朴世堂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의 주장은 효종의 상에 조대비가 이미 중자를 위한 기년복을 입었으므로, 효종비에 대해서는 중자부복에 해당하는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7) 물의가 일어나자 예조에서는 사유를 왕에게 아뢰거나 대신들에게 품의하지 않고 곧장 절목 중의 기년을 대공으로 고쳐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것은 사소한실수로 인정되어 예관들은 잠시 법사에 넘겨졌다가 직위해제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풀려났다. 그후 조정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곧 잊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7월 6일에 이르러 비로소 대구 유생 도신징이 상소하여 대왕대비 복제의 과오를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효종상의 복제에서는 대비가 《경국대전》에 의해 장자를 위한 기년복을 입었는데, 지금의 대공복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점, 둘째 《의례》의 장자부 대공복은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이미 唐 太宗 때 魏徵의 건의에 따라 기년으로고쳤고, 이것은 이미 만세의 정론이 되었는데 구태여 三代의 고례를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 셋째 만약 국제의 대공복을 써서 인선왕후를 중자부로 대우한다면 왕은 대왕대비의 衆庶孫이 될 것이니 뒷날 대왕대비가 죽었을때 왕은 嫡長孫의 承重者로 자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대통을이어 종사의 주인이 되고서도 적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하는 논리였다. 요컨대 그는 기해년의 기년복이 국제의 장자를 위한 복이라고 우겼다. 따라서 지금의 대공복은 중자부복이므로 전후의 복제가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인선왕후가 중자부에 해당할 경우 현종이 인조의 중서손에 해당할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예리한 것이었다.

현종은 이 疏를 본 후 승정원에 내리지 않고 몇 일간 수중에 쥐고 있었다. 이 기간에 왕은 여러 번 이 소를 읽어보고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래서 7월 13일 경연석상에서 영의정 김수홍과 예조판서 조형

^{57) 《}顯宗改修實錄》 권 27, 현종 15년 2월 임술.

에게 이 문제를 하문했을 때 왕은 이미 심중에 그 개정을 작정하고 있었다. 왕은 먼저 당초에 기년으로 정한 복제를 대공으로 고친 이유, 기해년에는 국 제에 의해 기년으로 정하였는데 지금의 대공 역시 국제에 의한 것인지를 물 었다. 이에 김수홍 등은 기해년의 효종상에 기년복을 입었으므로 이제 대공 으로 고쳤으며, 기해년에는 국제와 고례를 참작하여 겸용하였다고 변명하였 다. 왕은 또 장자부에 대한 복이 고례와 국제에 각기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지금의 대공이 어떻게 국제와 다르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김수흥과 호조판서 閔維重은 고례(《의례》)의 장자부복은 대공이며 국제의 장자부복은 기년으로 써, 기해년에 고례와 국제를 병용하였기 때문에 지금 대공으로 고쳤다고 설 명하였다. 즉 그때 고례의 중자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강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례에 의하면 중자부복은 소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왕은 신하들에게 기해년에 과연 차장자에 대한 복을 쓴 것인지 물었다. 이 때 승지 김석주가 "그것은 송시열이 수의에서 효종이 인조의 서자가 되어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여 허목이 상소를 하게 된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58) 이에 자극된 왕은 그날 중으로 六卿・三司・大臣・原任 大臣・參贊・判尹・禮曹堂上 등을 소집하여 복제를 재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빈청에 모인 의례제신들은 서인 일색이었고, 특히 김수홍·김수항·김만기·민유중 등 송시열의 직계제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들의 지론인 중서자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3일간에 걸쳐 네 번씩 啓聞과下敎를 반복하며 왕과 제신들은 격렬한 논쟁을 계속하였다.59) 왕은 김수홍등을 불러 타이르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면서 복제를 번복시키도록 종용하였으나,60) 그들은 듣지 않고 대공설을 고수하였고, 마침내는 송시열의 '體而不正'설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격분한 왕은 회의를 중지시키고 독단으로 복제를 개정하였다. 당일로 예관들을 하옥시키고 영의정 김수홍을 '남의 의논에 빌붙은' 죄로 춘천에 정배하였다.61) 이렇게 되자 온 조정의 서인

⁵⁸⁾ 위와 같음.

^{59) 《}顯宗實錄》 권 22, 현종 15년 7월 을해~정축.

^{60) 《}顯宗實錄》 권 22, 현종 15년 7월 병자.

^{61) 《}顯宗實錄》권 22, 현종 15년 7월 무인.

들이 일어나 변명하고 신구하였으나 왕은 그들마저 차례차례 처벌함으로써 일대 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서인의 축출이나 급격한 정국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이 지나 사태가 안정되면 그는 김수흥 등을 다시 서용하여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⁶²⁾ 그러 나 현종은 복제개정 후 한달이 지난 8월 18일 갑자기 훙서하였다.

(3) 제2차 예송 후의 정국 변동

일반적으로 1674년의 제2차 예송 귀결은 곧 서인정권의 몰락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남·서인 정권교체는 바로 남인들의 예송 승리 결과라고 인식되고 있다. 당시의 정권교체는 물론 예송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지만, 이것만이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갓 즉위한 숙종은 일찍부터 송시열 일파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청풍 김씨 외척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그는 정치경륜이 전무한 외에도 독선적인 성품 때문에 정국을 좌우하는 주요 고위적의 인사를 즉흥적이고 과감하게 처리하였다.

숙종이 즉위한 후에도 서인·남인의 정권교체는 매우 완만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7월의 복제 개정 후 12월까지 약 반년간은 여전히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수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서인들이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의정부·6조·삼사 등의 요직에 절대 다수를 점령하고 있었고, 특히 동서반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만 승정원과 양사에 남인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어 그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여지를 안고 있었다. 남인들은 현종의 인산을 마친 1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송시열 탄핵에 나서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곧 12월 인사 때부터 압도적인 남인 우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숙종 원년(1675) 정월 2일 허목이 이조참판이 되어 인사권을 쥐게 되면서63) 대대적인 정권 교체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다. 허목은 예송의 귀결 이후 일약 국가의 원로로 받들어져 권위를 누리고 있었고, 그 역시

^{62) 《}顯宗改修實錄》 권 28, 숙종 15년 8월 계사.

⁶³⁾ 이 때 판서 洪處亮과 참의 李翊相은 西人이었지만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정무를 회피하고 있었다(《肅宗實錄》권 2, 숙종 원년 정월 신유).

숙종과 마찬가지로 관례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남인들과 청풍 김씨 일가는 그해 3월까지 이조·병조·삼사·승정원 등 대부분의 주요 관직을 장악하여 문무관의 인사권은 물론 통청권·언론권·병권 등의 주요 권한들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국의 변동에는 김우명·김석주 등 외척을 중심으로한 서인 비주류의 송시열 일과축출공작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이들은 남인들과 일종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시열 일파의 서인 주류가 축출되자 외척세력과 남인들은 곧 경쟁상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4) 제2차 예송의 성격

제2차 예송의 대부분은 왕과 빈청의 의례제신들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지난날 남인·서인의 예송의 대가들은 전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례제신들은 모두가 서인으로서 대체로 송시열·송준길의 추종자들이었지만, 대부분의 남인들은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했던 도신징은 남인과가까운 대구의 유생이었고 그의 논리도 종래 남인들의 지론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가 남인세력을 대표하거나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제2차예송을 순전히 서인과 남인간의 당쟁적 전례논쟁으로 보았던 종래의 인식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2차 예송 이후 남인들의 득세는 서인들이 몰락한 데 따른 반사이득이었을 뿐, 그들 자신이 쟁취하여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제2차 예송의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석주로 보이는데, 그는 실상 당시 왕의 측근에서 경전적 전거를 해석해 올리는 등 현종에게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왕비와 환관, 종실 왕족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현종말~숙종초의 정치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현종과 청풍 김씨 외척으로 대표되는 궁중(왕실)세력과 송시열 일파가 중심이 되었던 府中(신료)세력 사이에 있었던 오랜 갈등의 결과로 생각된다. 송시열 일파는 그동안 왕권을 극도로 위축시켰고, 그들의 이상정치론과 현실적인 견제 때문에 외척은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통에 흠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서인들의 '孝宗衆庶子說'은 왕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이나 실제의 논쟁 전개 양상에서 제2차 예송은 전통적인 궁중과 부중의 갈등 양상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예송의 판결은 곧바로 서인의 정치적 패배와 남인의 득세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서인 남인간의 정권교체는 숙종 즉위년(1674) 7월 서인들이 예송에서 패퇴한 직후가 아니라 6개월 후인 숙종 원년 정월부터로 보아야할 것이다. 현종은 김수흥 등을 처벌하기는 하였지만 기타 의례제신들은 크게 나무라지 않았고 이후 한달간 대폭적인 정국변환의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서인들은 숙종 즉위초의 5개월간에도 역시 조정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문무관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권한들을 양보하지 않고 있었다. 남인들이 인사권을 차지한 것은 바로 숙종 원년 정월부터였다. 이 때의 대대적인 정국변동에는 숙종의 즉위와 그의 개성이 큰 작용을 한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李迎春〉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1)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붕당은 중국 고전에서부터 쓰이던 용어로서, 同門・同師의 벗을 칭하는 '朋'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모인 집단을 의미하는 '黨'의 합성어이다. 초기에는 벗들의 모임 또는 조직이란 일반적인 개념이었으나, 후에는 당의 개념이 강화되어 동지가 결합하여 당외의 사람을 배척하는 단체로 개념화되면서 배타적이고 투쟁적인 의미가 널리 관용화되었다.1)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 范仲淹・歐陽修・朱熹 등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었다.2)

崔完基, 〈18세기 붕당의 정치적 역학관계〉(《정신문화연구》1986 여름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83쪽.

²⁾ 송대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및 李泰鎮, 〈中央五軍營制의 成立過程〉(《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編》, 陸軍本部, 1977) 참조.

범중엄은 "군자·소인이 일찍이 당을 이루지 않은 적이 없다"고 붕당 존재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였고, 구양수는 이것을 발전시켜 朋黨論을 제시했다. 구양수는 소인의 당인 '僞朋'과 군자의 당인 '眞朋'을 구분하고, 진붕을 써야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붕당론을 주장했다. 주희는 "붕당의 해는 縉紳에 그칠 뿐이지만 전에 붕당을 미워하여 그것을 없애려 했던 사람들은 종종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고 하여 붕당망국론을 부정하였다. 이어서 붕당 내에 군자와 소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이를 보다 철저히 변별하여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군자가 스스로 붕당을 이루고 임금을 끌어들여 그 당에 속하게 해야 한다는 引君爲黨說을 주장하였다.

붕당정치의 개념은 "복수 붕당의 공존(朋黨共存)을 특색으로 하며, 학파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각 붕당 사이의 公論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정치운영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선조 8년 (1575)경 붕당이 성립된 이후부터 일당전제화가 시작되는 숙종 6년의 庚申換局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년간이 될 것이다.

조선에서의 붕당론은 정치운영의 변화나 권력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시기별로는 16세기 사림의 정계 진출 이전과 그 이후, 붕당의 성립기, 붕당정치의 전개기, 환국정치기, 탕평정치기의 붕당론이 달랐다. 또한 왕의 입장과 신료들의 입장, 각 붕당의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붕당론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붕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그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과 붕당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폐단의 시정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1) 붕당 성립기의 붕당론

조선 초기에는 붕당을 私黨으로 간주하여, 조정 문란의 요인이며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죄악시하였다. 그러나 중종대 趙光祖를 비롯한 사림세력이 중앙 정계에 적극 진출하면서 붕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나타나기시작했고, 선조의 즉위와 함께 사림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구양수와주희의 붕당론을 수용하면서 붕당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선조 5년 영의

정 李浚慶의 遺疏에서 붕당의 조짐이 지적되면서, 붕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李珥의 붕당론이 제기되었으며, 선조 8년(1575) 붕당 형성 이후에는 정치집단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붕당론이 제기되었다.3)

선조 8년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자, 현실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동인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동인이 옳고 서인이 그르다"고 인식하여, 소인당인 서인을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하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의 붕당론은 자신을 군자당으로, 상대 세력을 소인당으로 규정하는 주희의 붕당론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반해 분쟁 해소를 위한 새로운 붕당론도 제시되었다.

이이는 동인과 서인이 기본적으로 같은 사류에서 갈라진 정치집단이라는 인식에서 調劑保合論을 주장하였다.4) 즉 동인·서인의 명목을 없애고 사류를 보합하기 위해, 양쪽에 다 是와 非가 있으므로(兩是兩非論) 당색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궁극적으로 '一朋'의 상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인인 金字顯은 기본적으로 이이의 조제론을 인정하면서도, 군자와 소인의 조제는 불가능하며 公私와 是非를 분명히 밝힌 후에야 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5)

선조 16년 이이가 서인을 지지하면서 서인이 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동인·서인이 공존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각자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붕당론이 제기되었다.6)

서인은 鄭汝立 옥사에 따른 명분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전쟁 이후 재지적 기반도 약화되어 있었으므로, 엄정한 是非·正邪의 분별보다는 異論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다른 붕당과의 공존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³⁾ 붕당 성립 이전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鄭萬祚, 위의 글 참조.

⁴⁾ 李 珥,《栗谷全書》 권 7, 疏箚 5,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宣祖修正實錄》 권 13, 선조 12년 4월.

^{5) 《}宣祖修正實錄》 권 13, 선조 12년 6월.金字顒,《東岡集》 권 7, 玉堂論朋黨箚 기묘 6월.

⁶⁾ 선조대 후반의 정국과 붕당론에 대해서는 具德會, 〈宣祖代 후반(1594~1608) 政 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20, 서울大, 1988)에 주로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서인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했던 남인의 경우에도 金誠一‧柳成龍‧李德馨 등에서 보여지듯이, 기본적으로 다른 붕당의 존재에 긍정적이었고, 붕당간의 시비‧정사의 분별을 엄히 하기보다는 朝廷의 진정을 위한 '同寅協恭'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북인은 전쟁 기간의 의병 활동과 주전론의 견지를 통해 확보한 명분상의 우월성과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인과 남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미봉적인 조정의 진정보다는 엄정한 시비·정사의 분별을 강조하여,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광해군대에 나타난 大北 일당전제화의 추구는 이들의 붕당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7)

(2)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인조반정 이후 정치세력은 왕을 비롯한 특정 개인이나 정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어 정국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상대 세력과의 공존을 토대로하면서 공론정치를 추구하였다. 숙종초까지의 정국은 반정을 주도한 서인과 남인·소북계의 일부가 공존하는 형세였다. 서인이 다수 세력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인과 소북 일부가 이에 포섭된 형국으로 붕당적 입장이중심이 되어 정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조대 공신세력의 존재, 산림의 정계 진출, 왕실 외척의 존재, 남인의 성장 등에 따른 정치집단의변화도 정치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붕당적 입장이 일차적이기는 했지만 비붕당적 요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8)

이 시기의 붕당론은 각 붕당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⁹⁾ 기본적으로 정치적 입장과 붕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붕당의

⁷⁾ 광해군대의 정치 운영과 붕당론에 대해서는 韓明基,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동향〉(《韓國史論》 20, 서울大, 1988) 참조.

⁸⁾ 이 시기의 정국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음 논문들이 참고된다. 吳洙彰,〈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吳恒寧,〈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泰東古典研究》9, 1993). 禹仁秀,〈朝鮮 顯宗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朝鮮史研究》1, 1992).

⁹⁾ 鄭萬祚는 이 시기의 붕당론을 調停論·君子小人論·調劑論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앞의 글, 1992).

존재를 부정하거나 인정하기도 하고, 또 이에 따른 정치운영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인조를 비롯한 국왕들은 신하들의 붕당 결성 자체를 부정하고 그 타파를 주장했다. 인조는 정인군자는 반드시 당을 짓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주자의 引君爲黨說을 비판하고,10) "붕당의 폐해가 홍수나 가뭄보다 심하다"11)고 하였으며, 삼사의 언론 활동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몰아 비판하는 일이 많았다.12) 효종은 대간이 대신을 논핵하지 않는 것이 黨論 때문이라 하거나,13) 대간이 色目의 분별에 따라 제수된다고 비판하여 붕당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14) 현종도 언로가 붕당의 언로가 되었다고 붕당의 폐해를 지적하였다.15) 군주들이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정권이 신하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왕 중심으로 정국을 주도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서인계 반정공신이나 척신세력들도 국왕의 입장에 동조하여 기본적으로 붕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국왕이나 일부 공신세력과는 달리, 산림이나 일반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폐단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宋時烈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 산림계 인물들은 자신을 군자당으로, 상대집단을 소인당으로 규정하고, 주자의 군자소인론을 토대로 시비의 분별과 '進君子 退小人'을 강조하여 자파 중심의 정국 운영을 꾀하였다. 반면에 일반 관료들이나 남인은 한 붕당 안에 군자도 있고 소인도 있다고 보고, 당색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의 등용을 주장하여 상대 세력과의 공존을 통한 정국운영을 주장하였다.

송시열은 효종초 金自點 일파를 배척하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을 보이는 두 정치집단간의 공존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이이와 成渾의

^{10) 《}仁祖實錄》 권 20, 인조 7년 5월 경인.

^{11)《}仁祖實錄》권 37, 인조 16년 11월 기사.

^{12) 《}仁祖實錄》권 9, 인조 3년 5월 갑인; 권 14, 인조 4년 8월 계해·갑자;권 37, 인조 16년 7월 계해.

^{13) 《}孝宗實錄》 권 5, 효종 원년 윤11월 무자.

^{14) 《}孝宗實錄》 권 18, 효종 8년 8월 계미.

^{15) 《}顯宗實錄》 권 9, 현종 6년 정월 갑인.

문묘종사를 반대하던 남인을 소인당으로 규정하여 시비를 엄정히 밝힐 것과 군자·소인의 변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공신계에 대한 산림세력의 비판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남인을 소인으로 단정하여 배척하는 서인 산림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론으로서 뒷날 노론세력의 정치 활동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16)

인조초 서인에 눌려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남인은 "用人에 彼此를 묻지 말고 능력에 따라 賢才를 등용하면 붕당의 폐단이 수습될 것"이라고 하였다.17) 이것은 기본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당색에 구애되지 않는 인재의 등용을 통한 조정의 진정을 꾀한 것으로서, 이후 남인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붕당론이었다.

일반 관료들은 복수의 붕당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붕당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구양수와 주자의 붕당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붕당에는 각 붕당마다 淸獨・優劣이 섞여 있으므로 군자소인론의 일률적인 적용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붕당 단위의 용인을 반대하여, 당색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재능있는 사람을 등용하면(惟才是用) 점진적으로 붕당의 폐단이 시정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붕당이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조 3년(1625) 이조참의 李明漢은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不肖한 사람을 물리치면 붕당은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 하였고,18) 인조 7년 대사간 趙翼도 "지금의 당이란 한쪽이 모두 군자이고 다른 한쪽이 모두 소인인 것은 아니며 각각 善人도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을 쓰고 한쪽을 모두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19) 효종 4년(1653) 李敬與도 "만약 임금이 賢邪를 가려 수용한다면 청탁이 스스로 나누어질 것"이라 하였다.20)

¹⁶⁾ 송시열의 붕당론에 대해서는 鄭萬祚, 앞의 글, 132~137쪽 참조.

^{17)《}仁祖實錄》 권 9, 인조 3년 5월 갑자, 執義李埈・掌令姜大進・金榮祖等啓.

^{18) 《}仁祖實錄》 권 10, 인조 3년 10월 을사.

¹⁹⁾ 趙 翼、《浦渚集》 권 9、 論兵曹判書李貴箚批未安箚、 인조 7년、 기사(《韓國文集 叢刊》853、165~166等).

^{20)《}孝宗實錄》권 11, 효종 4년 7월 을축, 領中樞府使李敬輿上箚.

이들의 주장은 인조~현종대 대다수 관료의 지지를 받아 당시 조정의 붕당론을 대표하였으며, 따라서 이 기간에 서인 정권이 남인 및 일부 소북계인물까지 조정에 등용하여 완전하지는 않으나마 붕당간의 공존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논리였다.²¹⁾ 아울러 이러한 붕당론에 입각하여 17세기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면서 붕당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에 소수 붕당의 존재도 허용되고 그들에 의한 공개적인 비판과견제가 가능하여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조화가 보여지는 정치운영도가능하게 되었다.²²⁾

요컨대 17세기 인조~현종 연간의 정치집단은 서인·남인의 붕당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강화하기 위해, 구양수·주자의 붕당론이나 이이의 붕당론을 수용하고 이를 당시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상대 세력과의 공존 위에서 정국의 안정을 이루려는 논리적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숙종 이후의 잦은 換局과 노론·소론간의 대립 과정에서는 일당 전제적인 경향을 뒷받침하는 붕당론이 성행하였고, 근본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皇極蕩平說이 제기되어 영·정조대 탕평책의 실시로 이어졌다.²³⁾

2) 비변사 중심의 공존체제

왕정체제에서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인사권은 형식상 왕이 행사하였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백관을 대표하는 대신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래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은 전문 관료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소수의 대신에 의한 국정 주도마저 어렵게 하였다. 특히일본·청과의 전쟁과 그 후의 복잡한 대외관계 속에서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정치적 성격이 다른 복수의 붕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국 주도 집단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²¹⁾ 鄭萬祚, 앞의 글, 141쪽.

²²⁾ 崔完基, 앞의 글, 86쪽.

²³⁾ 숙종 이후의 붕당론과 탕평론에 대해서는 鄭萬祚, 앞의 글, 141~146쪽 참조.

상대세력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공론정치를 표방하게 되고, 이를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일본과의 전쟁 기간에 기구의 확대와 기능의 강화를 가져온 備邊司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했다.

비변사는 대신을 비롯한 문무 고위 관료들이 합좌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하였는데, 대신 중의 선임자가 회의를 주도하였고 유사당상이 실무를 맡았다. 비변사에서 심의된 사항은「備邊司啓」나 차대 자리에서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의 재가를 받으면 이것은 곧 명령으로 인식되었다.²⁴⁾ 따라서 17세기이후 비변사는 최고 정무기구로 인식되었고, 붕당정치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비변사 구성원의 붕당별 구성은 붕당정치기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을 보여준다. 인조 이후 숙종 5년(1679)까지《備邊司謄錄》의 매월초 座目에 나와 있는 비변사 都提調와 당상 역임자는 176명이다. 이들의 붕당별 구성은 서인 111명(63.07%), 남인 46명(26.14%), 소북 15명(8.52%), 미상 4명(2.27%)²⁵⁾으로 서인이 남인과 소북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소북 인사들은 인조반정 이후 독자적인 정치 집단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인이나 남인에 흡수되었음을 고려하면, 서인이 남인 일부를 포용하면서 정국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각 왕 즉위초의 비변사당상 이상 역임자의 붕당별 구성을 〈표 1〉로 정리하였다.

〈丑 1〉 こ	왕	슥위조	비변사당상	이상	역임자의	붕당별	구성
---------	---	-----	-------	----	------	-----	----

시기	인조 2년 2~6월	효종 원년(12개월)	현종 원년(12개월)	숙종 원년(13개월)
서인	20명(80%)	20명(83.3%)	17명(80.9%)	12명(46.2%)
남인	2명(8%)	3명(12.5%)	3명(14.3%)	13명(50.0%)
소북	3명(12%)	1명(4.2%)	1명(4.8%)	1명(3.8%)
계	25명(100%)	24명(100.0%)	21명(100.0%)	26명(100.0%)

^{24) 《}孝宗實錄》 권 5, 효종 원년 12월 병인, 領議政李敬輿・右議政李時自啓.

²⁵⁾ 당색의 구분은 편의상《名世譜》,《南譜》,《北譜》를 참조했다.

인조초의 상황은 반정을 주도한 서인이 중심이 되어 일부 남인과 소북계인사들을 포용하여 정국을 주도한 사실을 보여준다. 소북계가 남인에 비해 많은 것은 이들이 광해군 정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관직이 높아졌고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데 비해, 남인은 광해군대의 정국에서 배제되었을뿐 아니라 반정 후에도 아직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현종대까지도 이러한 서인의 비변사 장악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소북계가 거의 없어지고 남인이 약간 증가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숙종 원년 (1675)에는 남인이 부쩍 늘어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종말 남인의 정국주도가 숙종초로 이어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종대까지는 서인이 비변사를 주도하였고, 남인은 소수가 비변사에 참여하다가 숙종 즉위초에 이르러 대거 비변사에 진출하여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북은 인조대를 지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숙종 즉위후 5년까지 비변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총 30명인데, 이 중 7명만이 서인이고 나머지 23명이 남인으로 분류되어 숙종초 남인의 정국 주도를 보여준다.

비변사에서의 논의가 聚意의 수렴을 표방하면서도 도제조인 대신과 유사당상에 의해 주도되었고 다수의 당상들은 거의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비변사 당상 이상 역임자들의 붕당별 구성비는 정국 주도 집단이비변사를 통해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고 상대 세력을 포용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국 주도 집단은 비변사의 운영을 장악하고, 정치적 비중은 높으나 자파세력에 위협이 되지 않을 인물이나 실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비변사로 끌어들여 중의의 수렴을 표방함과 동시에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변사 公事의 처리는 유사당상이 의정에게 품결하여 起草한후 모든 제조에게 通議하여 논의가 일치된 후에 入啓하였다.²⁶⁾ 대신이 유고 중이어서 오랫동안 開座할 수 없으면 비변사당상끼리 개좌하고, 回啓할 일이 있으면 유사당상이 대신의 집에 가서 의논하여 초안을 작성해 왕에게 아뢰

^{26) 《}備邊司謄錄》 2책, 광해군 10년 4월 6일.

었다.27) 만약 星告 중인 당상이 있으면 대신이 낭청을 보내어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하였다.28) 논의 결과는 비변사 전체의 집단적 견해임을 내세워 대신이나 유사당상에 의해 備邊司啓로 왕에게 보고되었고,29) 경연석상이나 인견할때 다시 논의되기도 했다. 비변사에서의 안건 처리 과정은 회의때 비변사당상이 안건을 제기하면 대신이 참작하여 결정하고 왕에게 보고하여 확정짓는 절차를 밟았다.30)

비변사의 주요 관직 議薦權은 붕당정치기 인사 행정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인사 행정의 실무는 주지하듯이 이조와 병조에서 담당하고, 최종 인사권은 왕이 행사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요 관직에 대한의천권을 비변사에서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붕당간의 이해 관계가 조정되고정국 주도 집단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비변사에 의천의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당상들이 3명의 적임자를 추천하고 이것을 대신이 마감하여 3망을 갖추어 의망하였다.31) 숙종 5년까지 《備邊司謄錄》에 실려 있는 의천 기록을 분석하여 대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광해군대에는 의천 대상 관직이나 의천된 사람의 수가 많았고, 비변사에서 薦望할 때에도 3망을 갖추지 않고 7~10명씩 천망하고 있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광해군 9·10년(1617·8)경에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정국을 주도하는 대신도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비변사의 의천에도 왕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비변사에서 3망을 갖추지 않고 여러 명을 올린 것은 대신부재를 이유로 '優數書路'하라는 전교32)에 따라 당상이 추천한 사람 모두를 의망한 것으로, 인사에서 왕의 선택 폭이 넓었음을 보여준다. 복수 붕당의 공존이라는 붕당정치의 원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다음 〈표 2〉는 인조 이후의 의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27) 《}備邊司謄錄》 5책, 인조 16년 2월 28일.

²⁸⁾ 李廷龜,《月沙集》 권31, 兼兵曹判書三度加給由後辭職兼陳時弊箚.

^{29) 《}備邊司謄錄》 5책, 인조 16년 2월 28일.

³⁰⁾ 洪宇遠,《南坡集》 권 8, 辨閔宗道疏斥疏.

^{31) 《}備邊司謄錄》 1책, 광해군 9년 2월 3일.

³²⁾ 위와 같음.

〈표 2〉 인조~숙종 5년간 비변사의 의천 상황

감 사	평안감사(24), 함경감사(22)
유수·부윤	강화유수(18), 광주부윤(26), 의주부윤(15)
부 사	수원부사(23), 동래부사(14)
병・수 사	평안병사(20), 북병사(20), 통제사(20)
군 문 대 장	훈련대장(1), 총융사(13), 어영대장(12), 수어사(9)
- 1 - 1 - 1	함경북방어사(1), 경기우방어사(1), 하삼도관찰사(1),
군지휘관	충청관찰사종사관(1), 경기관찰사종사관(1), 평북조방장(1),
	총독군문(1), 겸삼도통어사(2), 도원수(1)
기 타	留將(1), 將令可合人(1), 不次擢用人(2), 堂下州郡可合人(1),
	御使可合人(1)

^{*()} 안의 숫자는 의천된 횟수.

대체로 인조 이후에는 지방관에 대한 비변사의 의천이 광해군대에 비해 많이 제한되고 있었다. 다만 새로운 군영이 설치되고, 군영대장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비변사에서 의천하고 있었다. 의천 대상 관직은 광해군대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인사 행정에 대한 비변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다. 비변사에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병조판서를 천망하여 이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호조판서³³⁾와 군영대장들을 의천함으로써 권력의 물리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비변사에서는 직접 의천하지는 않더라도 그 후보자를 선정하였고,34) 이조에 적임자를 천거하거나 이조에서 비변사와 상의하여 의망하기도 했다. 이때 이조에서는 비변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고, 만약 적임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비변사에 그 처리를 의뢰하였으며,35) 대간도 비변사의 의천에 대한 비판에 제약을 받았다.36)

인조 이후에는 비변사에서 직접 의천하던 관직은 줄어들었지만 핵심적인 관직의 의천을 장악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고, 비교적 덜 중요한 관직의 인사권은 이조와 병조로 환원하여 인사 행정의 정합성을 높이려 하였음을

^{33) 《}備邊司謄錄》 9책, 인조 23년 10월 15일, 吏曹啓.

^{34) 《}備邊司謄錄》 30책, 현종 12년 10월 7일.

^{35) 《}備邊司謄錄》 14책, 효종 원년 4월 12일, 東曹啓.

^{36) 《}備邊司謄錄》 7책, 인조 20년 6월 4일, 憲府啓.

알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비변사당상 이상의 붕당별 구성과 관련하여 보 면, 의천권의 행사를 통해 서인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의천의 실제를 보면 인조대에는 文武將令可合人·不次擢用人·州郡可合人 등의 일시적인 의천을 제외한 통상적인 의천 기록은 38회가 있었고, 이 중 落點이 표시된 것은 29회이다. 낙점의 내용을 보면 首望 낙점이 22회(75%), 亞望 낙점이 7회(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변사의 천망이 별다른 이의 없이 왕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종 7년(1656)까지는 의망 내용만 기록되고, 8년 이후부터 제당상의 추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효종 7년까지 통상적인 의천 기록은 42회(加望 4회)이며, 이 중 낙점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5회이다. 37회의 낙점 내용을 보면 수망 낙점이 28회(75%), 아망 낙점이 6회(16%), 말망 낙점이 3회(8%)이며, 가망의 경우 수망 낙점이 2회(50%)이고 원망의 수망 낙점이 1회(25%), 원망의 아망 낙점이 1회(25%)이다. 효종 7년까지도 비변사의 의천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효종 8년 이후 숙종 5년(1679)까지에는 152회의 의천 기록이 있다. 이 중제당상의 추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30회인데, 단망이 4회(어영대장 3·훈린대장 1), 2망이 2회, 3망이 24회이며, 낙점자는 2망과 3망 26회 중 수망낙점이 20회(76%)를 차지한다. 이들은 북병사(1), 동래부사(2), 수원부사(1), 의주부윤(1), 광주부윤(2), 훈련대장(1), 어영대장(7), 총융사(10), 수어사(5) 등으로군영대장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은 군영의 정치적 기능이 커진 상황에서 그대장의 인사에 대신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비변사당상의 추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총 132회이며, 의천에 참여한 당상은 총 940명, 추천된 사람은 모두 2,367명이다. 평균 의천 참여 당상은 7.1명 (930/132), 매회 의천된 사람의 평균은 17.9명(2367/132), 당상 1인의 평균 의천 자는 2.5명(2367/940)이다. 이 132회 중 제당상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의망한 것은 29회(5%)를 차지한다. 의망 내용을 보면 수망으로 올린 경우가 12회, 아망에 10회, 말망에 13회를 의망하고 있다. 한번에 2명이 낀 경우는 4회이며, 3망 모두를 대신이 독자적으로 의망한 경우도 1회 있고, 나머지는 1명씩을 의망하고 있다. 이 중 낙점을 받은 사람은 수망으로 올라간 사람 중 8회

(27%)이며, 전체 132회에 대비해 볼 때에는 6%를 차지한다.

대신이 제당상의 추천을 토대로 의망한 것은 113회이다. 이 중에는 제당상의 추천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추천된 숫자의 다과에 따라 몇의 고하를 결정한 경우도 있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망의 순서를 정한 경우도 있으며, 추천된 숫자의 다과를 거의 무시한 경우도 있다. 이 113회의 의천은 망의 고하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대신의 영향력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대신이 제당상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의망한 것으로서 대신의 권한이 비변사에 근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비변사 의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신들이 제당상의 추천을 받아이를 마감하여 의망하는데, 이 때 대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당상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 대신의 국정 주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지만,³⁷⁾ 그 권력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비변사에 두어지고 있었고, 비변사의 집단적인 힘을 통해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명종대 尹元衡에 의한 권력의 전횡과 광해군대 대북 집단의 독점적인 정국 주도를 경험한 17세기 중엽에는 왕을 포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적극 견제하려 하였다. 그 결과 정치 권력은 개인이 아닌집단의 차원에서, 다른 정치 집단과의 일정한 합의를 통해 행사되었다. 고위관료들이 다수 결집하여 합의제를 표방한 비변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붕당정치기의 존재 의미를 갖고 있었다.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붕당정치에서 붕당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는 삼사 언론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삼사는 왕에 대한 간쟁과 고문, 백관의 규찰을 통해 공정한 정치의 실현을 꾀했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붕당간의 세력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의 제기는 일반 관료들에게도 개방된 것이지만, 삼 사 중에서도 특히 대간이 먼저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간 중에서는

³⁷⁾ 鄭弘俊, 《17세기 조선의 정치 권력구조와 대신》(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4).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발론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간 개인의 獨啓 보다는 개별 부서별로, 또는 양사 합계나 삼사 합계의 형태로 入啓되었다. 왕권의 약화를 만회하려는 국왕이나 비변사를 통한 정국 주도를 꾀하던 大臣들의 삼사에 대한 견제 속에서 언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의 표방과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 통일이 필요했고, 여기에서 대간 개인의 독계는 부정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동료들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규례였으며,38) 양사 합계를 약속하고 어느 일방이 먼저 독자적으로 입계하는 것도 부정되고 있었다.39) 다만 대간들이 아직 相會禮를 행하지 않았거나, 동료들이 피혐중일 때에는 독계가 인정되었다.40) 대간이 합계하면 홍문관에서도 '相規之道'에 따라 이에 동조해야 했다.41) 대간의 합계에 대한 停啓 역시 의견의 일치를 필요로 했고,42) 양사 합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에대해 정계할 때에는 양사의 논의를 거쳐야 했다.43)

대간은 논계할 일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簡通하여 논의가 일치된 후에 城上所에서 장관의 집에 가서 초안을 작성하였다.44) 단, 장관 부재시에는 장관의 출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논계할 수 있었다.45) 일단 동료들에게 간통하면 반드시 의견의 일치를 추구했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감히 먼저 아뢸수 없었고, 榻前에서 아뢸 일이나 이미 아뢴 일에 대해서도 물러난 후 다시 동료들에게 간통하는 것이 상례였다.46) 홍문관은 대간과 달리 차자를 올릴때에 다수 의견에 따르고, 이견이 있는 자는 논의에 불참하거나 별도로 차자를 올렸으며,47) 또는 병을 칭하고 나아가지 않았다.48)

^{38) 《}孝宗實錄》권 9, 효종 3년 9월 정해, 諫院啓.

^{39) 《}仁祖實錄》 권 19, 인조 6년 10월 경술, 大司諫鄭百昌等啓.

^{40) 《}孝宗實錄》 권 9, 효종 3년 9월 병술.

^{41) 《}仁祖實錄》 권 31, 인조 13년 정월 임술, 正言宋夢錫引避.

^{42) 《}仁祖實錄》 권 30, 인조 12년 윤 8월 병오.

^{43) 《}仁祖實錄》 권 47, 인조 24년 10월 기축.

^{44)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11월 을유, 大司憲洪茂積引避.

^{45) 《}孝宗實錄》 권 17, 효종 7년 9월 경술.

^{46) 《}孝宗實錄》권 8, 효종 3년 정월 정축, 正言徐必遠引避·獻納丁彦璧引避; 권 21, 효종 10년 4월 기해, 獻納閔維重引避.

^{47) 《}仁祖實錄》 권 34, 인조 15년 5월 임오, 右相崔鳴吉上箚.

^{48) 《}仁祖實錄》 권 26, 인조 10년 2월 무자, 憲府啓.

삼사 논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의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었고 사적인 이해 관계의 개입이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피하려는 避嫌이 관례가 되었다. 피혐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왕에게 出 仕나 遞差를 요청하는 것이 處置이다.

삼사 피혐의 처치는 "是非 好惡에 일체의 사적인 것을 끊고 일시의 공론을 따르기 위해"삼사에 맡기는 것이 관례였다. 49) 따라서 그 처치는 일차적으로 사헌부나 사간원의 같은 동료들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동료들 중에 처치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관서에서 했으며, 대간 내에서 처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홍문관에서 처치하였다. 삼사의 처치 과정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였고, 일치되지 않으면 다시 피혐하였다. 다만 대간이 사적인일로 피혐하면 간통을 기다리지 않고 처치하였다. 50)

삼사의 처치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이 인정되어 서로 따랐으며, 왕이라도이를 번복하기 어려웠다.51) 그 처치 기준은 시비를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52) 예외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53) 왕이처치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54) 대간의 피혐을 삼사의 처치에 맡긴 것은 삼사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公論政治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삼사의 논의구조는 공론을 표방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거나, 이들의 독점적인 정국 주도를 어렵게 하여 붕당간의 공존과 세력 균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다. 구체적으로 붕당정치기 정국의 변동에 따른 삼사의 언론활동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하자.

인조대에는 반정공신의 권력이 커져서 공신이 아니면 대신이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왕권도 많은 제한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국왕 은 척신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사는 붕당적

^{49) 《}仁祖實錄》 권 11, 인조 4년 2월 신사, 政院啓.

^{50) 《}仁祖實錄》 권 40, 인조 18년 4월 병자, 掌令洪茂積引避.

^{51) 《}仁祖實錄》권 12, 인조 4년 2월 신사. 이 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무수히 있다.

^{52) 《}孝宗實錄》 권 10, 효종 4년 3월 갑오; 권 11, 효종 4년 9월 신해.

^{53) 《}孝宗實錄》 권 8, 효종 3년 6월 병인, 大司憲洪茂績引避.

^{54) 《}顯宗實錄》 권 16, 현종 10년 2월 기축.

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왕을 비롯한 대신, 훈·척신의 불법과 비리 등을 비판하고 공론에 따른 유교 정치의 실현을 주장했다.

왕에 대한 삼사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왕의 잘못을 바로 잡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입장에서 행해졌다.55) 인조가 同壻인 鄭百昌을 대사헌으로 임명하려는 데 대한 삼사의 반대 논리는 "인척에게 높은 벼슬을 주는 혐의를 막고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56) 삼사에서 내수사·궁방 등의 비리와 內獄에서의 죄수 처리, 왕자·공주·부마 등의 비리와 탈법 등에 대해 비판한 것이나, 인조의 친부모 추숭전례에 대한 논의에서 왕의 私를 배격하려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에 대한 대간의 논핵은 그 체면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정한 제약이 따랐지만, 개인적인 비리나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반 관료들과 다름이 없었다. "삼공 육경도 대간의 비평을 들으면 감히 변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나,57) "연소배들이 대신이 있는 줄을 모른다"58)는 인조의 말처럼 대간의 대신 논핵이 활발했다. 대간들도 "재상이 옳다 하면 간관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직무일 뿐이므로, 대신들의 의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59)하여 대간의 독자적인 논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훈신들에 대한 삼사의 논의는 당시 정국을 주도하면서 남인이나 일반 사족의 행태에 부정적이었던 李貴에게 거의 집중되고 있다. "이귀가 사직을 보호한 공로는 크지만 공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60)는 입장에서 반정공신으로서의 공로는 인정하되, 그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신이나 重臣들에 대한 논핵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대간 스스로 이귀의 잘못을 논핵하면서 훈신을 논한 데 대해 대죄하기도 했고,61) 호조판서 李溟을 논핵하자는 간통에 대해 "중신이므로 간통으로 처치 곤란하니 장관 출사

^{55)《}仁祖實錄》 권 10, 인조 3년 10월 계사, 檢閱睦性善・副正字柳碩等上疏.

^{56) 《}仁祖實錄》 권 16, 인조 5년 5월 을유.

^{57)《}仁祖實錄》권 5, 인조 2년 3월 계유.

^{58) 《}仁祖實錄》 권 16, 인조 5년 6월 갑인.

^{59) 《}仁祖實錄》 권 26, 인조 10년 2월 경진, 持平趙贇引避.

^{60) 《}仁祖實錄》 권 4, 인조 2년 2월 경자, 玉堂上箚.

^{61) 《}仁祖實錄》 권 4, 인조 2년 2월 경자.

후에 처리하자"⁶²⁾는 입장을 견지하여 훈신이나 중신에 대한 논핵에 일반관 료들과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삼사의 논핵에 대해서 인조는 대간들의 자율적인 논계를 제약하기위해 옛날처럼 대신이나 先生·長者에게 의논하여 논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63) 대신들조차도 "대간이 반드시 대신의 논의를 奉行한다면 뒷날의 폐단이있을 것"⁶⁴⁾이라는 이유로 대간의 언론을 제약하는 데 반대하였다. 이것은 공론정치를 추구하는 대간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반정공신들이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조대 후반에는 일부 대간들이 대신의 私的인 이익을 옹호해주는 역활을 하기도 했다. 인조 18년(1640) 6월 洪瑞鳳은 사헌부의 禁吏가 자신의 婢를 잡아들이자 장령 金坰을 통해 청탁한 것이나,65) 인조 21년 4월 좌상 沈器遠은 자기의 婢夫가 사헌부에 적발되어 형조에 넘겨지자 지평 任翰伯에게 편지를 보내 전말을 파악하려 하고형조에 압력을 넣어 석방시킨66) 사례들은 당시 일부 대간들이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을 옹호해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종대에 이르러서는 반정공신들의 사망과 宋時烈·宋浚吉 등 산림의 정계 진출로 권력 집단의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67) 효종은 왕통의 하자를 극복하기 위해 왕권강화를 꾀하면서 북벌론을 추진하는 한편, 삼사 언론에 대해서도 黨論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삼사의 처치를 부정하여 자신이 黜陟을 결정하고, 이조의 삼사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特除를 자주 고집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간의 반대를 엄하게 처리하고자 했으며, 대간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비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효종초에는 삼사 언론이 왕권에 의해 많이 제약되고 있었다. 대신에 대해서도 "대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양사가 함께

^{62) 《}仁祖實錄》 권 45, 인조 22년 9월 갑진.

^{63) 《}仁祖實錄》권 16, 인조 5년 6월 갑인;권 32, 인조 14년 3월 을축;권 36, 인조 16년 2월 임인.

^{64) 《}仁祖實錄》 권 5, 인조 2년 3월 기미.

^{65) 《}仁祖實錄》 권 40, 인조 18년 6월 신해.

^{66) 《}仁祖實錄》 권 44, 인조 21년 4월 을유, 執義金益熙引避.

⁶⁷⁾ 효종대의 정국에 대해서는 吳恒寧, 앞의 글 참조.

모인 후에 論啓할 수 있다"68)고 하여 대간의 논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효종 말년에 이르러서는 대간들이 초기의 위축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왕실이나 대신들에 대한 논핵이 다시 활발해진다. "헌부의 관원들이應旨에 가탁하여 攻斥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니 묘당이 빈 것처럼 보인다"69)는 효종 6년(1655) 영의정 金堉의 말은 대간들의 대신에 대한 논핵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당시 대신들이 대간의 논핵에 위축되어 뜻을 펴지 못한다는 효종의 비판도 대간의 언론이 다시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70)한편 "근래 대간들의 풍채가 크게 무너져 여러 궁가의 일은 능히 말하면서 사대부들의 일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71)는 효종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효종의 정치적 의도가 좌절된 상태에서 신하들의 왕에 대한 견제를 비판한 것이며, 아울러 대간을 통해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종초에도 아직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다.72) 그러므로 대신에 대한 대간 언론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대신으로부터 대간이 말을 않는다고 비판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73) 또한 대간의 避辭가 대신을 침모했다고 체차되는 일도 많았다.74) 비록 동료들에 의해 부정되기는 했지만 "대신은 감히논할 수 없다"75)는 대간의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고, 대간이 대신을 논핵하면서 이 사실을 대신에게 미리 알리는 일조차 있었다.76)

현종 후반에는 남인들의 중앙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신에 오르는 사람도 나오게 되자, 대간과 대신의 갈등도 커졌다. 남인 許積이 영의정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자 서인 대간들의 허적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77)

^{68) 《}孝宗實錄》 권 6, 효종 2년 5월 무자.

^{69) 《}孝宗實錄》 권 15, 효종 6년 7월 임인.

^{70) 《}孝宗實錄》 권 21, 효종 10년 3월 신미.

^{71) 《}孝宗實錄》권 21, 효종 10년 3월 계축.

⁷²⁾ 현종대의 정국에 대해서는 禹仁秀, 앞의 글 참조.

^{73) 《}顯宗實錄》 권4, 현종 2년 4월 경진.

^{74) 《}顯宗實錄》 권 5, 현종 3년 5월 정축, 掌令李東明引避.

^{75) 《}顯宗實錄》 권 5, 현종 3년 7월 병술, 司諫鄭繼胄引避.

^{76) 《}顯宗實錄》 권 12, 현종 7년 7월 무신, 獻納金徵等啓.

^{77)《}顯宗實錄》권 19, 현종 12년 6월 무술, 正言尹堦上疏; 권 20, 현종 12년 12월 임오, 獻納尹敬敎上疏.

현종은 대간의 허적에 대한 논핵을 막으려 하였으며,78) 아울러 대간들이 오랫동안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던 일도 대신이 요청하면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79) 즉 현종 말년에는 그 동안 서인의 기세에 염증을 느끼던 왕의 지지를 토대로 남인이 서서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서인 대간들이 이에 반발하는 형국이었다.80)

숙종초에는 2차 예송 이후 득세한 남인들이 정국을 장악해가면서 서인들을 밀어내려 했고, 뒤이어 남인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나타났다. 따라서이 시기의 대간들은 붕당적 성격이 더욱 강했으며, 자파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남인 대간들은 숙종 즉위 직후 宋時烈을 비롯한 서인 핵심들을 논핵하는데 힘썼고, 삼사 안에 남아 있던 서인 세력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서인이 밀려난 이후에는 남인 내부의 淸南・濁南의 갈등과 분기가 나타나서 대간은 그 선봉에서 활동하였다. 삼사의 언론이 정국 주도 집단의 교체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후의 잦은 환국에 이용되었다.

17세기에는 붕당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삼사의 언론도 붕당의이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권력 집단은 자기붕당의 이익을 확보하고 상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사 언론을 활용하였다. 반면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집단은 삼사 언론을 통하여 주도 집단의 정책상 잘못이나 개인적 비리를 논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세력 기반을확보하려 하였다. 당시 삼사 언론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효종 9년(1658) 4월헌납 金壽興은 대간의 논핵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천분 관계, 인척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주변의 비방 때문에 대간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없을 정도라고 하였다.81) 이것은 당시 대간의 논핵이 붕당적 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삼사의 언론은 "公議를 가탁하여 異己者를 배척하는"82) 수단으로

^{78) 《}顯宗實錄》 권 20, 현종 13년 6월 무인.

^{79) 《}顯宗實錄》 권 20, 현종 13년 10월 병오, 大司諫李翊相啓.

⁸⁰⁾ 禹仁秀는 앞의 글에서 현종대 후반의 정국을 宋時烈系와 非宋時烈系 사이의 갈 등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81) 《}孝宗實錄》권 20, 효종 9년 4월 갑오, 獻納金壽興上疏.

^{82) 《}仁祖實錄》 권 9, 인조 3년 5월 갑인.

이용되거나, "근래 대각의 신하들이 매번 당론으로 서로 이기려 한다"83)고 하였듯이 붕당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도 서로 색목을 나누려 했고,84) 대간의 임명도 "한갓 색목만을 분별하여 제수한다"85)고 하여 대간들이 전부 붕당에 따라 임명된다고 하였다. 결국 "언로가 붕당의 언로화되었다"86)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삼사 특히 대간의 언론이 붕당의 이익을 반영하였고, 더 나아가 대간의 임명이 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사의 언론은 사족의 공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표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 권력자의 지휘를 받거나,87) 그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해 주기도하였다.88) 대신과 대간의 결탁은 용납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대간이 대신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기의 개인적인이익을 관철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인조 15년(1637) 12월 金弘郁이 정언일 때 대간의 탄핵을 받고 체차되었다가 부수찬이 되자 자신을 탄핵했던 사람을 처치하여 논란이 된 일이나,89) 효종이 "근래 연소한 무리들이 일단 현부에 들어가면 耳目을 맡았음을 잊고 먼저 복수할 것만을 생각한다"90)고 질책한 것 등은 일부 대간들이 공무보다는 사적인 이익의 관철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붕당정치기에 삼사는 공론정치를 표방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집중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삼사 언론은 붕당간의 공존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했고, 자파 세력의 확대와 상대 세력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여 정국 주도 집단의 변동을 가져오기도했다. 그러나 집단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삼사는 그 선봉에 서서 대

^{83) 《}孝宗實錄》권 18. 효종 8년 5월 정미.

^{84) 《}仁祖實錄》 권 37, 인조 16년 7월 계해.

^{85) 《}孝宗實錄》권 19, 효종 8년 8월 계미.

^{86) 《}顯宗實錄》 권 9, 현종 6년 정월 갑인.

⁸⁷⁾ 趙緯韓,《玄谷集》 권 11, 爲仁城君所斥引避啓.

^{88) 《}仁祖實錄》권 33, 인조 14년 10월 병술;권 40, 인조 18년 6월 신해;권 44, 인조 21년 4월 을유, 執義金益熙引避.

^{89) 《}仁祖實錄》 권 35, 인조 15년 12월 갑인.

^{90) 《}孝宗實錄》권 18, 효종 8년 4월 경인.

립을 더욱 조장하기도 했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4) 서워의 정치적 기능

붕당정치기 중앙 정계에서 공론 정치가 이뤄지는 機制가 삼사의 언론 활동이라면, 지방 사림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 정계에 반영하는 각 붕당의 하부구조로서 기능했던 것은 서원이었다. 서원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어 先賢奉祀와 교육을 담당하던 기구였다. 우리 나라의 서원은 주지하듯이 중종대周世鵬이 安珦을 봉사하기 위해 세운 白雲洞書院이 그 효시이다. 초창기의서원은 일차적으로 사림의 講學所라는 기능이 강조되었지만, 선조 8년(1575)이후 붕당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적 의미가 강해졌다.

선조대에 세워진 서원은 52개소이고 당대에 賜額된 것도 21개소이다. 사액 서원에 봉사된 사람은 사화기의 인물들을 비롯해 李滉・李珥・曺植 등이 망라되었다.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을 봉사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서 대개가 유학이나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택해지고 있었다. 특히 사화기의 인물이 다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의 강한 출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91) 이 시기의 서원은 사림계가 획득한 정치적 지위와 집권세력으로서의 명분을 합리화・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오직 사림 전체의 정치명분을 뒷받침해 주는 데 그치고 있었다.92)

광해군대의 서원 건립은 선조대의 형세가 유지되었지만, 정치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집권세력이던 북인은 그 학연상의 취약점을 만회하기 위하여조식의 문묘종사운동을 추진하였는데, 북인계 서원이 그 儒疏 작성의 거점이되었다. 鄭仁弘은「晦・退卞斥」후 진주 德川書院의 유생조직을 활용하여100여 명의 유생으로 하여금 조식의 문묘종사를 요구하는 연소를 올리게 했다. 덕천서원 《院生錄》에 따르면 광해군 원년의 경우 진주・함양・합천 등진주권에 거주하는 조식문도가 주축을 이루며, 특히 정인홍과 사우관계에 있

⁹¹⁾ 이하 서원의 건립 추이에 대해서는 李泰鎭, 〈土林과 書院〉(《한국사》12, 국사 편찬위원회, 1977; 《朝鮮儒教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에 재수록)을 참조.

⁹²⁾ 鄭萬祚,〈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사림 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던 인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93)

또 북인세력 확장의 전초기지로서 조식을 배향하는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적극 추진되었다. 덕천서원과 三嘉의 龍巖書院·김해의 新山書院에 사액을 내리게 하고, 白雲書院과 강진의 南冥書院 건립을 추진하였다.94) 더 나아가 북인정권은 이황 문인의 본거지이며 남인이 압도적 우위를 지키던 경상도의 안동·예안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서원을 활용하기도 했다.95) 서원은 점차 학연상의 정통성 부여와 자파세력의 확장에 이용되는 정치적 역할을 서서히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인조반정 이후 붕당정치의 전개는 서원의 발전에도 반영되었다. 서원의 건립 추이를 보면 인조대에 30개소, 효종대에 27개소가 건립되어 전 시기의 추세를 잇고 있다. 서원의 疊設에 대한 폐단의 지적과 그 금지 대책이 주장 되기 시작하는 것은 인조 말년 경상도 지역에 국한되었으며,96) 서원제도 문 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정치적 대립의식의 발동도 효종 말년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그 뚜렷한 예가 찾아진다. 鄭介淸을 봉사하는 무안의 紫山書院의 훼철과 복설은 서인·남인간의 대립의식이 가장 날카롭게 작용 한 예의 하나였다.97) 이 서원은 광해군 8년(1616)에 설립되었는데, 인조 8년 (1630) 서인의 훼철 주장이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효종 8년(1657)에 처음 훼철되었다. 그 사이에는 인조 8년 이 지역에 서인계인 金權의 松林書院을 신설하여 견제의 입장을 취하는 정도였다.98)

현종대에 서인·남인 사이의 대립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서원의 수적 증가 추세가 뚜렷해진다. 현종대에 신설된 서원은 43개소로서 그 증가율은 이제까지의 배에 이르렀다. 서원의 질적 저하도 뚜렷하였으니 후대에도 끝내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이 21개소로서 전체의 반에 가까워 전대에 비해 현저

⁹³⁾ 李樹煥、〈書院의 政治・社會的 考察〉(《嶠南史學》1, 1985), 26~27쪽.

⁹⁴⁾ 광해군대 북인의 학통 강화 노력은 韓明基, 〈光海君代의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韓國史論》 20, 서울大, 1988) 참조.

⁹⁵⁾ 정만조, 앞의 글(1989), 102쪽.

^{96)《}仁祖實錄》권 45, 인조 22년 8월 기미, 慶尙監使林潭啓.

⁹⁷⁾ 金東洙、〈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특히 鄭介淸의 門人集 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歷史學研究》7, 1977).

⁹⁸⁾ 李泰鎭, 앞의 글(1977), 197쪽.

하게 늘어났다. 또한 현종대에는 봉사 인물의 追配가 훨씬 많아졌고, 봉사 자격에도 의심이 가는 인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징후의 발생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기에 가열되기 시작한 서인·남인간의 세력 경쟁이 주된 원인의 하나였다.99)

현종대 서인·남인세력간 정쟁은 숙종대로 이어져 더욱 심화되었다. 숙종 6년(1680) 이후에는 붕당간의 공존이라는 붕당정치의 기본원리가 부정된 채,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상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換局政治가 나타났다.100) 집권세력은 집권의 명분 합리화와 자파 정론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위하여 일반 사림의 광범한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자파인물을 봉사하는 서원을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기존의 서원을 포섭하기 위한물질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숙종대에 설립된 서원은 140여 개에 달하는데, 그 중 사액을 받은 것은 겨우 40여 개에 불과했다. 봉사 대상 인물도 학문인이라 보기 어려운 인물, 儒化를 남긴 수령, 行誼있는 士子까지 선정되는 실정이었다. 정상적으로 봉사 인물이 모셔진 서원에 문중 인물을 새로 추배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인물들은 대개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곧 서원의 기능을 봉사 일변도로 치우치게 하여 마침내는 서원과 嗣字를 혼동하여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기까지 하였다. 숙종 초반에서 말년까지의 정치변동에 따른 사액의 추이를 보면 남인 집권 시기에는 남인계 인물에, 서인 집권시에는 서인계 인물 제향처의 서원에만 사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 정과가 자과계 서원에만 지원을 보내고 있음을 집작할 수 있다.

환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림의 공론은 사실상 노론·소론·남인 삼당을 지지하는 향촌사림의 당론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후 서원은 겉으로는 사림 공론의 수렴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私黨 정론의 소굴, 곧 당론의 淵藪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동시에 서원은 정쟁의 와중에서 화를 당한 黨人에 대한 신원과 이를 통한 특정 정파의 정치적 도덕성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노·소 분기후 尼山書院의 치폐와 宋時烈

⁹⁹⁾ 위와 같음.

¹⁰⁰⁾ 洪順敏,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韓國史論》15, 서울大, 1986).

의 道峯書院 並享・配享문제는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101)

봉당정치기의 서원은 중앙 정계와 지방 사립간의 연결 통로였다. 특히 조선의 붕당이 학파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었다. 각 붕당은 집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파 정론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사림의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했다. 戚臣의 전권 행사나 대북 일당전제의 폐해를 경험한 인조 이후의 정치세력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의 권력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사족층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言路가 개방되어 있던 상황에서 일반 사림의 지지는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지방 사림의 거점으로서 지방의 여론이 결집되던 서원과의 연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 사림들은 일본·청과의 전쟁 이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향촌질서의 재건을 위해서원에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앙 고위 관료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계와 지방 사림은 서원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효종대 이후 거의 전국적 유림이 동원되다시피 한 서인계의 이이·성혼문묘종사 요구와 그에 대한 남인 사림의 반대 상소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연명 상소였다.102) 이러한 연명 상소의 논의나 작성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서원은 지방 사림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 정계에 반영하는 창구의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현종대 예송 과정에서 나타난 영남 유생 柳世哲 등의 상소는 그 구체적인 예이다. 일차예송시서인의 주장이 관철되자, 안동 중심의 영남 유림세력은 의례에 대한 상세한辨正과 고증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론을 상호 검토한 후 열읍에 통문을 돌려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드디어 현종 7년(1666) 유세철을 疏首로 한 영남유생 천여 명의 聯疏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의견의 발의·수렴과 통문에 의한 도내의 여론의 결집은 서원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103) 이외에도 구체적인 분석은 못했지만 이 시기에 활발했던 지방 사림들의 연명 상소들은 여론의 취합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 조직은 서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붕당정치기의 서워은 지역·당색의 차이와 정국 주도 집단의 변화에 따라

¹⁰¹⁾ 李樹煥, 앞의 글(1985), 33~34쪽.

¹⁰²⁾ 金相五, 〈黨爭史의 立場에서 본 李珥의 文廟從祀問題〉(《全北史學》 4, 1980).

¹⁰³⁾ 정만조, 앞의 글(1989), 111쪽 참조.

성격을 달리 한다. 붕당이 강한 학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좌도와 우도, 기호지방의 서원은 각각 남인·북인·서인의 宗師的 인물을 봉사하는 곳이 많았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의 주도 붕당의 변화에 따라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받고 향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방 사림과 자 파 세력의 확장을 꾀하는 중앙 정치집단의 관계에서 서원의 운영 방식도 다 르게 나타난다.104)

경주의 玉山書院과 안동 陶山書院은 남인의 학문적 연원으로 인식되는 李彦迪과 李滉을 봉사하는 서원으로서 남인세력의 재지적 기반이었다. 옥산서 원《尋院錄》에 따르면 서원 방문 인사의 거주지는 대체로 경주·안동·상주권 전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안동권 인사는 인조반정 이후 약5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진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북인계열 인사의 방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출신 인사의 방문은 인조반정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9.4%) 이들 서원이 영남 남인의 재지적 기반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 이후에도 서울출신 인사의 방문이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 지역 서원이 許穆·蔡濟恭 등 기호남인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105)

영남 남인계 서원의 운영 체제는 院長・有司체제, 또는 上・下有司체제로 정비되었다.106) 상유사는 다른 서원의 원장과 동일한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원장・유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원장은 인맥・학맥관계로 道內 人士가 임명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鄉中 人士였다. 紹修書院의 경우약 180년간(1542~1718)에 181명 중 90명(52%)이 생원・진사・문과합격자・하급관료이고 나머지는 幼學이었다. 玉山・陶山・屛山書院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조반정 이후 영남 남인이 중앙정계에서 점차 배제되면서 재야세력으로 밀리고 있는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경상우도 지역은 북인의 재지적 기반이 강한 곳이었고, 藍溪書院・徳川書

¹⁰⁴⁾ 이하의 서술은 李樹煥, 앞의 글(1985)과 〈朝鮮時代 書院의 內部組織-院任, 院 生을 중심으로-〉(《嶠南史學》2, 1986)를 주로 참조하였다.

¹⁰⁵⁾ 李樹煥, 위의 글(1985), 3~7쪽.

¹⁰⁶⁾ 이하 서원의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李樹煥, 앞의 글(1986)에 의거하여 서술했다.

院 등 이 지역의 서원은 북인 정치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남계서원에의 재정적 지원 내용을 기록한 《哀寶錄》에 따르면 인조반정 이전에는 경상감사와 함안군수가 당색을 불문하고 부임시 서원 소용의 현물을 제공하였고, 진주권·상주권·전라도 지역의 지방관도 보인다. 감사·함양군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관이 경상우도 및 曹植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인물이며 남인계열 인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지방관의 경우함양군수를 제외하면 서원 인근의 몇 지역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반정 이후북인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다.107) 덕천서원도 남계서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다만 인조반정 이후 친남인계의 성향을 띠는 인물들이 서원을주도하여 향촌사회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인계 서원은 원장·유사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중앙의 정치 변동에 따라 원장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인조반정 이전에는 원장이 재지세력을 대표하는 一鄕土夫로 임명되고 현직 관료는 제외되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독립적이 고 독자적인 지역 사람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역할 범위가 축소되어 덕천서원 의 경우 정인홍과 무관하거나 그 이탈세력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숙종·영조 연간에는 노론 전제하에서 관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계서원의 경우 함양군수나 노론의 대표적 인물이 원장을 역임했다. 향촌사회에서의 실 세를 만회하고 지위 향상을 꾀하려 했던 서원 측의 입장과, 남인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영남의 사족을 견제하고 여당세력을 부식하기 위해 북인계열을 포섭하려고 했던 집권 노론의 입장이 결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반면에 덕천서원에는 친남인계열의 중앙관료들이 원장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 는 실세 상태의 북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었다.

서인계 서원은 인조반정 이후 자파세력이 계속 집권세력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중앙 또는 지방 권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모색하면서 향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서원의 운영 체계나 인적구성원에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서원의 운영은 인조반정 이후 院長・掌議・有司체제로 확립되었다. 장의・유사・色掌은 원생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

¹⁰⁷⁾ 李樹煥, 앞의 글(1985), 23~24쪽.

이었으며, 장의가 논의를 주관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유사가 담당했다. 특히 京掌議·京有司 등 京齋任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원장은 石室書院에서 "공경 대부로서 賢德이 있고, 사림의 신망을 얻은 자로 한다"108)고 규정되었듯이 중앙정계의 핵심 관료들이 차지하였다. 임기는 종신이었고, 노론계의 중앙 고위 관료들은 다수의 자파 서원 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다. 당시 집권 노론은 서원을 통하여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했고, 서원은 노론 대신을 원장으로 추대하여 서원의 제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장의는 서원 소재 또는 인근 지역의 지방관이 많았다. 경재임은 자파 현직 관료들로 임명되었고, 중앙 및 지방관과의 긴밀한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것은 전라도 노론계 서원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109)

인조반정 이후 서인은 자기들의 집권적 명분과 도학적 정통론의 확립을 위해 조광조·이이·성혼·김장생 등의 서원을 계속적으로 설립하고 사액을 받았다. 서원 설립에는 서인계 중앙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것은 이황 이후 영남 남인계 서원이 향촌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고, 서원제도 운영방식이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림의 수도 서인계 서원이 밀리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즉 서원을 통해 자파 사림의 기반을 확대하고, 남인계와 대등한 학문적 연원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17세기 붕당정치가 전개되는 시기의 서원은 각 붕당의 재지적 지지 기반이었고,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 정계에 반영하는 창구의 구실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 정계의 주도 집단이 변화함에 따라 향촌사회에서의 서원의 위상도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사람들은 서원의 자치적인운영을 강화하거나 중앙 정계와의 연결을 시도하여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具德會〉

¹⁰⁸⁾ 金元行,《渼湖集》 권 14, 雜著 石室書院學規.

¹⁰⁹⁾ 鄭汝立 사건을 계기로 향촌사회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지 못했던 대부분의 전라도 사림은 중앙권력과의 연결을 모색하였고, 집권 노론세력은 자파세력 확보를 위해 이 지역 서원 원장직에 취임했다.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1) 환국의 개념과 범주 및 연구 시각

(1) 환국의 개념

인조 연간에서 현종 연간까지의 정치사는 붕당정치가 가장 안정된 모습을 갖춘 형세라고 할 수 있다. 붕당정치란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정치집단이 붕당 형태를 띠고, 그러한 붕당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상대방을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상대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여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정치운영 형태를 말한다.1)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붕당이 중앙 정치무대에 공존하면서 대체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남인이 이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하는 형세였다. 서인과 남인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대방을 정국 운영에 함께 참여할 상대로 인정하여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현종 15년(1674) 현종에서 숙종으로 왕위가 승계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현종 연간의 서인과 남인의 대립에서 가장 부각되었던 쟁점은 두 차례에 결쳐 진행된 왕실의 복제논쟁, 이른바 禮訟이었다. 현종 즉위년부터 이듬해까지 진행된 제1차 논쟁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서인이 주도하는 정국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현종 몰년(1674)의 제2차 논쟁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정국은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교체된 것은 인조반정 이래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붕당과 붕당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깨고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換局'이라 한다.2)

李成茂・鄭萬祚 외、《朝鮮後期 黨争의 綜合的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李泰鎮、〈朝鮮中・後期 政治史 理解의 방향〉(《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²⁾ 洪順敏, 〈肅宗初期의 政治構造와 '換局'〉(《韓國史論》15, 서울大, 1986).

(2) 환국의 범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환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명명한 예가 적지 않으며, 또 어떤 사건을 환국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하지 못하였다. 환국의 실상과 정치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범주부터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3)

숙종 연간에 들어서면서 환국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첫번째는 위에서 말한 바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한 숙종 즉위년(1674)에 제2차 복제논쟁을 계기로 서인이 물러나고 남인이 정국을 주도권을 장악한 甲寅換局이다. 두번째는 숙종 6년의 庚申換局이다. 경신환국은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남인이 淸南과 濁南으로 분립하여 대립하는 가운데 탁남이 兵權을 장악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훈척계열의 金錫胄와 국왕 숙종이 합력하여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다시 진출시킨 것이다. 세번째 환국은 숙종 15년의 己巳換局으로서 숙종과 昭儀 張氏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位號를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에반대하던 서인들이 밀려나고 남인이 다시 등용된 것이다. 네번째는 숙종 20년 폐비되었던 仁顯王后 閔氏를 복위케 하고 왕후가 되었던 세자의 생모 장씨를 다시 嬪으로 강등하게 하는 조치와 함께 남인을 물러나게 하고 서인을 등용한 甲戌換局이다.

흔히 위에서 말한 네 번의 환국, 혹은 갑인환국을 제외한 세 번의 환국만을 환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환국이라고 정의하면 이러한 환국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발생하였다. 갑술환국 이후 약 15년간은 소론계열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노론의 일부가 참여하면서 정국은 안정되었다. 그러한 안정은 숙종 36년 3월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소론의

³⁾ 환국에 해당하는 같은 정치적 현상을 놓고서도 시각과 처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甲寅禮訟・庚申大黜陟・丙申處分・辛壬士禍 혹은 辛壬獻事 등이 그것이다. 또 정치적으로 같은 성격의 현상임에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함께 묶어 객관적인 개념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크다.

지도자 최석정이 지은 《禮記類編》을 거두어 들여 불태우게 하는 조치를 계기로 깨어졌다. 이를 계기로 노론이 소론을 공격하면서 점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 때 정국의 전환은 그리 급격하지도 않고 그 규모와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였지만, 이로 인해서 소론이 퇴조하고 노론이 진출하였다는 점에서는 환국의 범주에 넣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庚寅換局이라 할 수 있겠다.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영향력은 숙종 42년에 이르러 다시 크게 변전하였다. 숙종 42년 8월 숙종은 당시 정국을 주도하는 소론의 영수로 인정받던 尹拯의 부친 尹宣擧 문집의 인쇄 원판을 헐어 없애도록 하고, 이어 이듬해에는 윤선거와 윤증 부자의 官爵을 추탈하였다. 이러한 숙종의 조치를 흔히 丙申處分이라 한다. 병신처분은 이를 계기로 소론은 퇴조하고 노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보면 환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丙申換局이라 하는데 무리가 없다.

경종 원년(1721)부터 그 이듬해 경종 2년경에는 경종의 동생인 延礽君(후의 英祖)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소론이 노론을 대거 숙청하고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 역시 노론과 소론 사이에 정국 주도권이 급격히 교체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의 환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辛壬換局이라 할수 있다.

경종 4년 8월 25일 경종이 죽고 왕세제 연잉군(영조)이 즉위하면서 정국은 대단히 불안정해졌다. 소론 가운데 노론을 처벌하는 데 강경파인 峻少계의핵심 인물들은 자연히 중앙 정계에서 도태되고 온건파인 緩少계의 일부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듬해인 영조 원년(1725)에는 완소계도 물러나고노론이 정국의 전면에 진출하였다. 이 때의 정국 주도 집단의 교체와 정국전환도 분명히 환국의 범주에 드는 것이므로 이를 乙巳換局이라고 부를 수있겠다. 을사환국으로 등장한 노론은 신임옥사 당시 처벌된 노론계열의 인물들을 신원하고 소론을 처벌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는 영조 3년 노론 인물들을 핵심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소론을 불러들였다. 이를丁未換局이라 한다.

정미환국 이후 완소계열의 인물들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준소계열 및 남인의 일부 인물들이 영조의 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반란을 일으켰 다. 이를 戊申亂이라 한다. 무신란을 진압한 뒤 영조는 더욱 강력하게 붕당을 부정하며, 노론과 소론 가운데 그 논의가 온건한 자들을 균형있게 등용하여 자신이 정국을 주도하는 탕평책을 추구하였다. 영조 초년 이후 탕평책이 추구되면서 환국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 숙종 즉위년(1674)부터 영조 4년(1728) 사이 50여 년간에 걸쳐 발생한 아홉 차례의 환국은 다른 시기의 정치집단의 교체와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어떠한 경향성을 띠면서 당대 정치사를 대표할 만한 특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고 개념화하여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3) 환국을 보는 기본 시각

환국에 대해서는 붕당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일당 전제화의 추세 속에서 나타난 붕당정치의 변질 또는 말폐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이러한 시각으로는 이 시기 환국이 왜 그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국을 단순히 붕당정치의 말폐로 보는 데서 나아가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유의하여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환국을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분당이 서로 교체됨으로 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이라 할 때, 정치집단의 분포 및 역학관계 그리고 환국에서 교체되는 집단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 정치적 바탕은 복수의 붕당이 대립하며 공존하는 붕당정치적 상황이다. 그러나 붕당정치라고 해서 정치 집단으로 붕당만 존재하는 것은

^{4) 《}국사》 고등학교(하) 1998년 현행.

붕당 정치의 변질: 양반 지배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던 붕당정치는 붕당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면서 변질되어 갔다. …이로부터 붕당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너지고, 상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대 붕당에 대한 보복으로 賜死가 빈번히행해졌고, 외척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져 갔으며, 정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 문제에까지 미치는 등 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아니다. 왕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당시의 정치 지형에서 국왕은 정치 체제의 정점에 있는 주권적 통치자였다. 각 국왕들의 실권에는 강약의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국왕이라는 존재 자체는 무시되거나 부정될 수 없었다. 국왕 이외에 功勳으로 封爵을 받은 신료와 왕실의 외척으로 구성되는 勳戚의 존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훈척은 일반 사류와 동일한 기반 위에서 정치적으로 보조를 맞추기도 하지만, 반면에 일반 사류와는 전혀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이기도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왕권의 직접적인 지지기반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국왕에 대한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돌변하기도한다. 그밖에 일반 관료들 대부분이 특정 黨色을 띠고 있는 붕당정치기의 정치 상황에서도 당색보다는 실무 행정 관료적 성향을 더 강하게 띠는 부류도있다. 이들은 붕당 사이의 대립 구도에서 완전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붕당보다는 국왕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붕당정치적 정치 지형이라 하더라도 중앙 정치무대의 역학관계에 작용하는 변수를 붕당만이 아니라 국왕이나 훈척, 실무 행정관료 등도함께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국으로 인해 교체되는 집단은 일차적으로는 붕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붕당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환국으로 그 전체가 일거에 교체되지도 않는다. 붕당은 각기 생성-分岐-硬化-소멸의 轉移 단계를 갖는 가변적인 존재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붕당의 인물 구성이 변해 가게 마련이다. 그에 따라 하나의 붕당이 둘 혹은 셋으로 분기하기도 하고, 더욱 강고한 붕당으로 세를 불리기도 한다. 같은 당으로서 正體性을 가지면서도 학연이나지연, 혈연의 차이로 그 내부에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는 특히 환국과 같은 정치적 격변의 전후 시기에는 전면에 드러나 하나의 붕당을 복수의 붕당으로 분기하게 하기도 하고, 붕당 자체의 성격을 변하게 하기도 한다. 환국의 핵심은 붕당 전체의 교체라기보다는 붕당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권력집단의 교체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환국을 살필 때 그로 인해 교체되는 집단의 실체와 정치 집단간 역학관계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국의 직접적인 動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집단이 붕당 형

태를 띠고서 대립하고 있을 때, 붕당 사이의 균형을 깨는 힘은 붕당의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왕정체제를 갖추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붕당사이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붕당 외적인 요소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왕권이다. 왕정체제에서 어느 붕당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라도 왕권을 부정하며 절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붕당 사이의 역학관계와 주도와 견제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붕당정치기에는 정국 운영에서 국왕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붕당 사이의 역학 관계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더욱 날카롭게 대립할 때는 국왕의 역할이 붕당사이의 균형을 깨고 주도 붕당과 견제 붕당을 뒤바꾸는 데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국을 살필 때는 붕당 사이의 역학 관계와 국왕의 역할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국이 발생할 때 정치집단 사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흔히 환국을 특정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쟁투로 설명하나, 실제로 갑인환국에서 정미환국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 환국의 쟁점은 복제논쟁과 같은 사상 이념 논쟁, 兵權을 둘러싼 경쟁, 특정인에 대한 평가, 상대 당에 대한 처벌의 강도, 왕위 승계를 둘러싼 힘겨루기 등다양하다. 어떤 문제는 대단히 폭이 넓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특정인을 둘러싼 구체적인 문제여서소수의 인물들만이 관련되는 것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양보가 곧 자파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양보할 수 없는 것도있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대립을 조정하려는 논리가 제기되기도 하였고,반면에 是非・正邪・忠逆을 분명하게 가리자는 논리를 내세워 자파의 주장을 완고하게 고집함으로써 대립을 심화시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므로 환국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쟁점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논리와 행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2) 환국의 실상

(1) 갑인환국

현종 즉위년(1659) 효종이 승하하였을 때 母后인 인조의 繼妃 莊烈王后 趙氏의 상복을 三年服으로 하자는 남인의 주장과 朞年服으로 하자는 서인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許穩으로 대표되는 남인의 주장은 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효종이 인조의 장자는 아니지만 嫡子로서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장렬왕후가 적장자복에 해당하는 무거운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宋時烈을 필두로 하는 서인의 주장은 天下同禮를 내세워, 효종은 인조의 적자이기는 하지만 장자가 아닌 衆庶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벼운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 현종 즉위년의 논쟁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서인이 계속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의 입지를 고수하였다. 하지만 남인도 허목이 현종 8년에 좌의정, 12년에 영의정이 되는 등 현종대중반부터는 중앙 정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현종 15년 2월 23일에 현종비 仁宣王后 張氏가 승하하였다. 예조에서는 장렬왕후가 입을 복제를 처음에는 기년복으로 정했다가 다시 그보다 한 단계낮은 大功服으로 정정하여 올렸다.6) 이 문제는 인선왕후의 장례가 끝난 직후인 7월초 대구에 사는 幼學 都愼徵이 상소하여 그 전거를 따짐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7)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구하여 서인 관료들을 공박한사람은 현종이었다.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서인측 신료들은 인선왕후를 장렬왕후의 衆子의 아내로 보아 대공복을 입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현종은 次子로서 長子의 지위를 계승한 아들의 아내로 보아 기년복

⁵⁾ 鄭玉子,〈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韓國文化》10, 서울大, 1989). 李迎春,《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性論爭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 論文, 1994).

^{6) 《}顯宗實錄》권 22, 현종 15년 2월 임술. 《顯宗改修實錄》권 27, 현종 15년 2월 임술.

^{7) 《}顯宗實錄》권 22, 현종 15년 7월 무진. 《顯宗改修實錄》권 28, 현종 15년 7월 무진.

을 입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종은 일찍이 송시열 등 서인측에서 내세웠던, 효종이 인조를 "繼體는 하였으나 嫡統은 아니다"라는 '體而不正'설을 효종을 貶降한 것으로 비판하며,《儀禮》나《周禮》 등 중국의 古禮보다는 '時王의 制', 곧 國制를 적용할 것을 고집하였다. 현종은 복제문제를 담당하였던 예조판서 趙珩 등을 하옥하고 당시 영의정 金壽興을 춘천에 付處하도록 명한 뒤에》 기년복으로 고쳐 成服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남인 許積을 영의정으로 삼고 서인 金壽恒을 좌의정으로 결정하여 정국의 주도권이 서인으로부터 남인으로 옮겨갈 단초를 열었다. 이러한 조처를 취한 지한 달이 못 된 8월 중순부터 현종은 병세가 위독해져 8월 18일에 승하하였다.

숙종 즉위초에는 송시열에게 현종의 陵誌를 지어 올리게 하기도 하였으나 송시열이 극구 사양하여 김석주가 이를 대신하는 등 서인계의 입지가 위축되었다.10) 숙종은 복제문제에 대한 현종의 처분을 옹호하는 주장을 고수하여서인을 공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제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측면을넘어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비화하여 갔다. 대사헌이 된허목을 비롯하여 남인 언관들은 복제논쟁에서 서인측의 중심 인물인 송시열을 파직하고 귀양보내라는 쪽으로 비판과 공격을 집중하여 마침내 숙종 원년(1675) 정월 송시열을 덕원으로 귀양보냈다.11) 이로부터 현종 말년부터 허적이 영의정을 맡고 김수항이 좌의정을 맡고 있는 체제는 유지되면서도 점차남인들이 관직을 차지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갔다. 특히 허목과 尹 鑴 등 허적과는 성향이 다른 부류들이 진출하여 송시열을 죽이라고까지 공격하여 熊川에 위리안치하게 하였다.12) 서인으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閔鼎重・李端夏 등도 관작이 삭탈되어 문외로 출송당하고, 김수항도 원주에 부처

^{8) 《}顯宗實錄》권 22, 현종 15년 7월 무인.

[《]顯宗改修實錄》권 28, 현종 15년 7월 무인.

^{9) 《}顯宗實錄》권 22, 현종 15년 7월 기묘. 《顯宗改修實錄》권 28, 현종 15년 7월 기묘.

^{10) 《}肅宗實錄》권 1, 숙종 즉위년 9월 계해 및 10월 병신.

^{11) 《}肅宗實錄》 권 2, 숙종 원년 정월 임신.

^{12) 《}肅宗實錄》 권 4, 숙종 원년 윤5월 을미ㆍ기해ㆍ임인ㆍ무신.

되었다가 영암으로 귀양갔다.¹³⁾ 서인이 퇴조함과 함께 숙종 원년 6월에는 남 인 허목이 우의정이 되는 등 남인이 정국의 주도권을 거의 독점하였다.¹⁴⁾

이상 현종 15년(1674) 7월 인선왕후의 장례 직후부터 시작되어 숙종 원년 7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2차 복제논쟁의 결 과 서인이 퇴조하고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된 정국의 전환을 갑인환국이 라 한다. 갑인환국은 인조반정 이후 유지되어 온,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견제하면서 유지되어 오던 붕당정치의 균형을 깬 첫번째 환국이다. 갑인환국 의 주요 쟁점은 복제문제였다. 복제논쟁은 단지 繁文縟禮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기본적인 행동 규범인 예의 구체적인 적용문제였고, 따라서 사회를 이 끄는 지도이념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승패는 사회를 이끌 지도력의 當否,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국 주도권의 장악 여부로 연결되는 문제였다. 복 제논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왕가의 특수성, 다시 말하자면 왕권의 우월성 인 정 여부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남인은 대체로 왕권의 우월성을 인 정하는 쪽이었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열세에 있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 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는 측면도 있다. 왕가의 복제논쟁은 이렇게 왕의 위상과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왕의 위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도 그 렇거니와 더구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왕으로서는 달가울 바가 전혀 없는 일이었다. 이에 숙종은 숙종 5년 3월 국왕으로서 이 문제에 결론 을 내린 다음 "이후 다시 예론을 陳疏하는 자는 역률로 논단하겠다"는 하교 를 내려 논란을 봉쇄하였다.15)

(2) 경신환국

숙종 초년 제2차 복제논쟁에서 승리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된 남인은 그 내부에서 淸南과 濁南으로 분립하였다.16) 탁남은 허적·權大運 등을 영수로 하는 집단으로 현종조부터 고위직에 있었던 자들이 많으며 그 세력이 크고

^{13) 《}肅宗實錄》 권 4, 숙종 원년 윤5월 임인 및 7월 임인·갑진.

^{14) 《}肅宗實錄》 권 4, 숙종 원년 6월 경진.

^{15) 《}肅宗實錄》 권 8, 숙종 5년 3월 병진.

¹⁶⁾ 이하 경신환국과 기사환국에 대한 서술은 洪順敏, 앞의 글을 참조.

당시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비해 청남은 허목·윤휴 등을 중심으로 탁남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청남·탁남과 함께 이 시기 주요한 정치집단의 한 부분을 형성하였던 것이 勳戚이다. 淸風 김씨가와 光山 김씨가 그리고 驪興 민씨가가 이른바 '三戚'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兵權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며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이질감을 갖고 있던 일반 士類들은 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 이들을 공격하는 형국이었다. 특히 현종비 명성왕후의 동생인 金錫胄는 군사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숙종 초년부터 숙종 10년(1684) 그가죽기까지 정국의 변동을 주도하였다.

숙종 초년 청남과 탁남 그리고 훈척 사이의 관심의 초점은 예론보다는 병권에 있었다. 병권은 정치 권력의 물리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며, 구체적인경제적 이해관계가 집결되어 있는 초점이기도 하였다. 당시 병권을 구현하는 부서는 軍門으로 나타났다. 군문은 군역가의 징수, 막대한 屯田의 경영, 화폐의 발행과 통용, 점포의 설치와 경영 같은 적극적 영리행위 등으로 경제 부서보다도 막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정치집단으로서는 군문을 장악하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숙종 초년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창설되었던 訓鍊都監・御營廳・摠戎廳・守禦廳의 네 군문이 있었다. 이러한 군문들은 대체로 김석주를 비롯한 훈척들이 장악하고 있는 형세였다. 이에 남인은 都體察使府를 복설하여 탁남의 허적이 체찰사가 되었다. 특히 탁남은 도체부를 통하여 병권을 좀더 많이 장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병권을 둘러싼 훈척과 특히 탁남의 움직임에 대하여 청남계의 인물들은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렇게 청남과 탁남의 대립이 격화되고 탁남으로 권력이 편중되자 숙종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서인계 인물들을 遠竄에서 해제하도록 명하고, 인사권을 좀더 강력히 행사하려 시도하였으며, 붕당을 없앨 것을 강조하였다. 숙종은 6년 3월에는 훈련대장을 남인 柳赫然에서 '國家之親 位高之人', 곧 훈척인 총융사 金萬基로 교체하고, 서인계 인물들을 진출시키고 남인을 축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체찰사도 허적에서 김석주로 바뀌었다. 숙종은 남인의 독주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국왕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할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¹⁷⁾ 환국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더라도 환국이 발생하는 데 숙종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국의 직접적인 계기는 숙종 6년 4월에 鄭元老와 金萬鐵이 올린 종친 福善君 柟과 허적의 서자 許堅이 역모를 꾸몄다는 내용의 고변이었다. 이 역모의 실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듯하나 김석주가 탁남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고변으로 허견은 陵遲處死, 복선군은 교수형을 당하였으나, 허적은 관작을 삭탈당하고 田里로 放歸되고, 吳挺昌·윤휴·李元禎은 圍籬安置되고, 閔熙는 放送되고, 유혁연은 사형을 면하여 유배되었다. 반면에 이 사건을 계기로 훈척이 두드러지게 진출하여 이후 정국에서 큰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남인이 축출된 자리를 서인이 대거 차지하였다. 이것이 경신환국이다.

(3) 기사환국

경신환국으로 경쟁자인 탁남이 제거된 뒤 김석주를 중심으로 하는 훈척이 병권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 훈척은 서인으로부터도 남인 퇴치의 공을 인정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무렵 정치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있던 숙종으로부터도 신임와 비호를 받고 있었다. 훈척은 정치적으로 그 지위가 크게 부상되어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김석주는 군제 변통을 주관하면서 精抄廳과 訓鍊別隊를 합하여 禁衛營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훈척의 독주에 대해서 三司의 연소한 관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반훈척적 사류 집단의 움직임은 숙종 8년 8월 南九萬이 병조 판서가 되면서활발해졌다.

이러한 시기에 10월에는 전병사 金煥과 出身 金重夏의 고변사건이 일어난다. 김환의 고변 내용은 남인 許璽 등이 군비를 갖추고 역모를 꾀한다는 것으로서, 閔黯・權大運・吳始復・吳挺緯 등 남인 주요 인사 16명이 이에 참가하여 福平君 極을 추대하고 대왕대비로 수렴청정케 한다는 것이었다. 김중하의 고변 내용은 민암이 權爽, 洛西令 秀胤, 尹惟中 등과 '浮雲'이라는 死生契

^{17) 《}肅宗實錄》 권 9, 숙종 6년 3월 무오.

를 맺고, 南斗北·金錫胄·朴斌 등을 제거함으로써 대사를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고변이 있은 지 6일 후에는 어영대장 金益勳이 승정원 兒房에 나아가 密啓를 올린다. 김환이 고변하기 전에 자기에게 와서 허새의 모역 내용을 다 말했고 이에 덧붙여서 哨官 全翊戴와 柳命堅 사이의 수상한 낌새 및 낙서령 수윤이 임금을 원망하는 부도한 말을 전했기에 전익대를 잡아두었으니 조사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허새는 모역을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李德周에게 말했더니 그는 신중을 기하자고 했던 정도에 그쳤을 뿐이라 말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은 전부 부정하였다. 이 사건 처리를 놓고 金壽恒‧閔鼎重‧金壽興‧鄭知和‧김 석주 등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했고, 李尚眞은 적당히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하는 등 대신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다가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쪽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훈척과 '年少輩'의 대립은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정치적으로 그 여파는 매우 크게 되었다. 趙持謙・兪得一・安斌 등 연소배는 삼사의 언관으로서 훈척,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었던 김익훈의 경력, 부정축재, 정탐에 근거를 둔 密啓 등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마침내 숙종 9년(1683) 정월 김익훈을 어영대장직에서 해임시키기에 이른다. 이과정에서 연소배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결집되었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할 때 소론의 핵심이 되었다.

이에 비해 남인들로부터 심하게 박해를 받은 후 이 시기에 재등장한 송시 열은 연소배와 훈척의 대결에서 철저히 김익훈을 비호하고 나섰다. 이에 연 소배들은 김익훈을 추가로 처벌하라고 더욱 공격을 가하였으나 숙종은 도리 어 그들을 좌천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 9년 5월 결국 김익훈이 門外 黜送되기까지, 중앙 정계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관료는 물론 산림들까지 모 두 훈척과 연소배의 대립에서 초연할 수 없을 만큼 이 문제는 큰 정치적 쟁 점이 되었다. 前輩로 불리는 의정부의 대신들은 김익훈을 비롯한 훈척에 타 협적이고 우호적이었던 데 반해 後輩로 불리는 삼사의 연소 관료들은 훈척 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다. 그리하여 전자는 노론으로, 후자는 소론으로 결집하여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분립하였다.

노론과 소론은 각각 송시열과 尹拯을 중심으로 하여 세력이 커져 갔다.

송시열은 윤증의 스승이자 아버지 尹宣擧의 친구였다. 윤선거가 죽자 윤증이 송시열에게 墓碣銘을 부탁하였는데, 송시열은 윤선거가 병자호란 당시 강화 도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한 것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윤증은 스승 송시열에게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송시열과 윤증 사제지간의 알력을 이른바 '懷尼是非'라고 한다. 숙종 10년에 이르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노론과 소론의 반목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각각을 하나의 붕당으로 硬化시키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소론의 공격에 대해 훈착과 노론은 병권을 좀더 강력히 장악함으로써 응전하려 하였다. 그러나 훈척은 그 지주적 존재인 김석주가 숙종 10년 9월에 급작스럽게 죽음으로써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된다. 그 이후에는 노론과 소론이중요 정치집단으로 남게 되어, 정국은 이 두 정치집단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운영되었다. 자연히 이들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활발히 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소론의 대두와 대립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훈척의 퇴조로 인하여불안을 느끼고 있던 숙종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숙종은 붕당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소론을 배척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숙종은 왕권 본연의 속성상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는 정국 운영을 원하였다. 숙종은 측근 세력이던 훈척이 약화되자 훈척을 지원하는 한편 왕실의 종친을 옹호하였다. 이에 대해 서인은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이를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왕권 대 서인의 상호 작용이 정국의 주요 대립축을 형성하였다.

숙종 14년 10월에 후궁 장씨가 왕자를 낳았다. 장씨는 남인과 연결되어 있는 역관집안 출신으로 궁녀로 들어와 이 무렵 위계가 내명부 정3품 昭儀였다. 왕자 출산을 계기로 장씨 주변의 인물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행동하였고이에 비례하여 臺諫의 비판도 거세졌다. 숙종 15년 정월 숙종은 낳은 지 두달 된 왕자의 名號를 '元子'로 정하고자 하였다. 원자는 단지 첫 아들이란 뜻을 넘어 世子가 될 아들이란 뜻으로서 정치적으로 차기 왕위를 승계할 후계자로 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남인과 연계되어 있는 후궁장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서인 신료들은 왕비 인현왕후의 나이가 아직 젊으므로 시기 상조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후계자를 확정해 놓음으로써 왕권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숙종은 이를 고집하여

결국 원자로 정하고, 장씨를 승격하여 禧嬪으로 봉하였다. 이 때 소론의 呂聖齊가 다시 우의정이 되고, 남구만이 판중추부사가 되어 정국이 소론 중심으로 재정비되는 듯하였다. 그러던 중 그 해 2월 노론계의 영수요 산림으로 인정받던 송시열이 원자 정호가 시기 상조라는 상소를 올렸다. 숙종은 이에 대해즉각 그를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하도록 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론・소론을 막론하고 서인은 모두 급속히 파직되고 睦來善이 좌의정, 金德遠이 우의정, 그리고 權大運이 영의정, 閱黯이 좌참찬이 되는등 남인계의 인물들이 대거 관직에 등용되었으니 이것이 기사화국이다.

기사환국은 남인이 실세하고 훈척도 퇴조한 뒤 노론과 소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탕에서 국왕 숙종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역학 구도 아래서 발생하였다. 환국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숙종의 후계 자를 미리 확정짓는 문제에 대해 노론과 소론을 포함하는 서인의 반대를 국왕 숙종이 물리친 것이었다. 붕당 사이의 역학 관계나 이념적인 대결보다는 숙종의 개인적인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등장하였지만,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숙종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기반은 허약하였다. 이러한 허약성으로 남인은 기사환국 뒤 5년만에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4) 갑술환국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서인 전체의 이념적 근원이 되는 栗谷 李珥와 牛溪 成渾을 문묘에서 黜事하였다.18) 양인의 문묘 從享이 경신환국 직후인 숙종 7년에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서인이 현실적으로 패퇴하였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와 함께 원자 정호에 반대하였던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賜死하라는 숙종의 명에 따라 잡혀 오는 길에 정읍에서 죽었다.19) 金壽恒・洪致祥・李師命 등 노론계 인물과 金益勳 등 훈적 그리고 그 관련자 18명이 죽고, 노론・소론을 막론하고 서인계 인물들 다

^{18) 《}肅宗實錄》 권 20, 숙종 15년 3월 을유.

^{19) 《}肅宗實錄》 권 21, 숙종 15년 6월 무진.

수가 유배되거나 파직 등의 처벌을 받았다.20) 이어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투기를 일삼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왕비에서 폐하여 庶人으로 삼아 친정으로 내치고,21) 희빈 장씨를 왕비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였다.22) 그와 함께 숙종 16년(1690) 4월부터 남인 신료들이 세자 책봉을 거론하여 6월에 책봉하였다.23) 그 때 세자의 나이가 3세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성급한 일로서 숙종이 기사환국을 일으킨 근본 저의가 자신의 후계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사환국으로 중앙 정계에 다시 등장한 남인은 權大運・睦來善・金德遠・閔黯 등이 중심이 되어 정국을 이끌어 갔다. 노론과 소론이 함께 중앙 정치무대에서 패퇴하여 견제 집단이 없는 상황에서 남인은 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등 정국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남인과 당시 왕비 장씨의 친정가가 연결되었다. 왕비 장씨의 오빠인 張希載가 환국 직전부터 민암・閔宗道・李義徵 등과 연결되었으며,24) 숙종 18년에 가서는 관례를 뛰어 넘어 총융사로 발탁되었다.25) 역관출신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장씨가의 인물들은 서울 중심부에 거대한 누각을 짓는 등 두드러진행위를 하였다.26) 남인과 장씨가의 이러한 행태는 숙종에게는 달가운 일일수가 없었다. 이러한 터에 숙종 19년 무렵에는 폐위된 인현왕후전 소속 궁인출신의 최씨가 새로 후궁이 되었고,27) 숙종과 최씨 사이에서는 낳은 지 두달만에 죽기는 하였지만 왕자가 생산되기도 하였다.28) 남인과 장씨의 진출이숙종 개인의 의지에 크게 힘입었던 만큼 또 다른 후궁에게로 숙종의 총애가 옮겨간 것은 이들의 지지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²⁰⁾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국학자료원, 1995), 106~111쪽.

^{21) 《}肅宗實錄》 권 21, 숙종 15년 5월 정유ㆍ기해.

^{22) 《}肅宗實錄》권 21, 숙종 15년 5월 신축·무신;권 22, 숙종 16년 10월 기묘. 책 봉례는 장렬왕후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인 숙종 16년 10월에 가서 행했다.

^{23) 《}肅宗實錄》 권 22, 숙종 16년 4월 갑술 및 6월 을해.

^{24) 《}肅宗實錄》 권 20, 숙종 15년 정월 계미.

^{25) 《}肅宗實錄》권 24, 숙종 18년 3월 을묘.

^{26) 《}肅宗實錄》 권 25, 숙종 19년 6월 병술.

^{27) 《}肅宗實錄》 권 25, 숙종 19년 4월 기해.

^{28) 《}肅宗實錄》 권 25, 숙종 19년 10월 병자 및 12월 임오.

남인의 정국 주도는 숙종 20년(1694) 3월 두 차례의 연이은 告變으로 급격히 끝났다. 숙종 20년 3월 왕이 대신과 비변사 신료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우의정 민암이 威以完이란 자의 고변을 아뢰었다.²⁹⁾ 함이완의 고변 내용은 소론계열의 前 承旨 韓構의 아들 韓重爀등이 남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재등 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모아 장희재, 東平君 李杭 등 실권자에게 접근하여 신료들과 궁중의 동정을 영보아 살피려 했으며, 노론계열의 金鎭龜의 아들 金春澤과 愈命一의 아들 愈復基와 愈泰基 등도 무슨 움직임이 있는 듯하나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정도였다. 관련자들을 잡아 일차 문초하였으나 대체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앞으로 국청을 설치하여 더 조사를 할 참이었다.³⁰⁾ 그 직후에 幼學 金寅 등이 또 다른 내용의 고변서를 올렸다. 장희재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숙원 최씨를 독살하려 한다는 것, 또 信川郡守 尹憘와 訓局別將 成虎彬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데 大將이 참여하였으며 閔黯・吳始復・睦昌明 등 남인이 결탁되었다는 내용이었다.³¹⁾ 국청의 조사결과는 그 내용은 김인이 남인 이의징에게 배척을 받자 그를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지어낸 허구라는 것이었으며 숙종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³²⁾

그러나 다음날인 4월 1일에 상황은 급전하였다. 국청의 조사 내용이 폐비인현왕후의 복위와 왕후 장씨의 폐위문제와 고변자 함이완이 남인의 중심인물인 민암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등에 이르자 숙종은 한밤중에 갑자기備忘記를 내렸다. "민암 등이 서둘러 고변을 아뢰고 獄事를 확대하여 공주가에까지 미치려 한다. 임금을 우롱하고 播紳을 함부로 죽이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니, 參鞫한 大臣 이하 모든 관련자들의 官爵을 削奪하여 門外로 黜 送하고, 민암과 금부 당상은 모두 絶島에 安置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비망기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입직한 승지와 홍문관원뿐만 아니라모든 승지와 삼사 관원들도 파직하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숙종의 급박한 조치로 결국 남인계의 영의정 權大運, 좌의정 睦來善, 영중추

^{29)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 3월 신유.

^{30)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 3월 갑자.

^{31) 《}肅宗實錄》권 26, 숙종 20년 3월 정묘.

³²⁾ 위와 같음.

부사 金德遠과 삼사 관원들은 관작이 삭탈되어 문외로 출송당하고, 우의정민암, 판의금부사 柳命賢, 지의금부사 李義徵·鄭維岳, 동지의금부사 睦林一등은 모두 절도에 안치되었다.³³⁾ 이어서 그 날로 바로 남구만을 영의정에 除拜하는 것을 시작으로 5~6일 사이에 왕명으로 서인들을 대거 관직에 기용하였다.

이렇듯 갑술환국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갑술환국은 붕당 사이의 힘의 대결이나 어떤 이념적 쟁점을 둘러싼 대립보다는 전적으로 숙종의 뜻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때의 인사가 대개 숙종의 의지에따라 왕명이나 特旨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숙종은 朴世采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론과 소론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4)

갑술환국으로 그 때까지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남인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 또는 파직당하였다. 그 규모는 기사환국 당시의 서인이 당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남인은 이후 정조 연간 탕평 정국에 가서 일부인사가 정조의 지우를 입어 다시 등장할 때까지는 중앙 정계에서 배제되었고, 서인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4월에는 송시열에 대해서 그가 효종의 특별한 대우에 보답하려는 뜻이 돈독한 것으로 보아 기사환국 당시 원자 정호에 반대한 것은 한때의 망발일 것이니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고제사를 내리도록 명하였고,35) 또 기사환국 직후 문묘에서 출향되었던 이이와 성혼을 다시 문묘에 배향함으로써 서인의 정국 주도 입지가 확인되었다.36)

갑술환국 직후 숙종은 폐위되어 사제에 있던 인현왕후를 별궁으로 옮겨 군사들로 호위케 하고 廩料를 지급하게 하는 조치를 거쳐 복위시켰다.37) 그 에 맞추어 왕비 장씨는 왕비의 璽綏를 거두고 다시 옛 작호 禧嬪을 내려주 었다.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예는 폐하지 않게 하였다.38) 세자의

^{33)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 4월 무진.

³⁴⁾ 朴光用、《朝鮮後期 '蕩平'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35)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 4월 계유.

^{36)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 6월 기미.

^{37)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 4월 무자 · 신묘.

^{38) 《}肅宗實錄》권 26, 숙종 20년 4월 기묘.

생모로서의 지위는 유지시켜 세자의 입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려는 조처였다. 하지만 희빈 장씨는 결국 숙종 27년(1701) 인현왕후가 죽었을 때 그가죽도록 저주를 하였다는 혐의(誣蠱의 獄)로 사사당하였다.

(5) 경인환국

갑술환국으로 진출한 정치집단은 전체적으로 서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에는 소론과 노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소론이 우세한 가운데 노론이 일부 안배되어 있는 형세로 갑술환국 이후 약 15년간은 노·소간의 대립보다는 공존의 분위기가 강해 이후 등장하는 탕평 정국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39)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붕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한 정국운영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정치운영론은 국왕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탕평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탕평론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 붕 당을 골고루 균형있게 등용해야 한다는 박세채의 調劑保合論과, 붕당을 묻지 말고 능력에 따라 등용하고 상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建極論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탕평론과 다른 계열로는 君子黨-小人黨論에 입각하여 자신들 의 黨論을 고집하는 주로 노론계에서 제기한 是非分別論 등이 있었다.40) 이 러한 가운데 당색으로는 소론계열이지만 당색보다는 실무 관료 성향이 강한 南九萬과 崔錫鼎과 같은 인물들이 숙종의 의지에 부응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갔고,41) 노론 가운데 이들과 성향이 유사한 申琓과 李濡 등이 정국 운영에 참여하면서 淸流로 불리는 노론과 소론 일부의 是非分別論者들이 비판적 견 제를 하는 상황이었다. 정치 집단이 노론과 소론 내부에서 각각 더 작은 집 단으로 분기하면서 다시 사상과 이념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정치운영론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렇게 암류하던 정치운영론을 둘러싼 대립이 표출된 것이 숙종 36년의

³⁹⁾ 鄭景姬, 〈肅宗後半期 蕩平政局의 變化〉(《韓國學報》79, 일지사, 1995).

⁴⁰⁾ 朴光用, 앞의 책.

^{41) 《}肅宗實錄補闕正誤》권 26, 숙종 20년 4월 갑신. 《肅宗實錄補闕正誤》권 32 상, 숙종 24년 4월 임술. 차光用, 위의 책.

최석정의《禮記類編》을 불태운 일이다. 당시 정국 운영의 중심에 있던 최석정이 당시로부터 10년 전에《大學》과《中庸》그 밖의《孝經》등 경전들에서 禮에 관계되는 내용을 발췌 재정리하여《예기유편》을 편집하였는데 숙종 35년에 이르러 이것이 경연의 교재로 쓰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노론계열의 관료들과 지방의 유생들까지 광범위하게 들고 일어나《예기유편》이 朱子를 경시하고 주자의 학설에 어긋났다며 그 板刻을 불태워 버리라고 1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였다. 숙종은 초기에는 이러한 노론의 행태를 禮書를 핑계로 黨同伐異하면서 소론의 중심 인물인 최석정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최석정을 두둔하였으나, 결국에는《예기유편》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게 하였다.42) 그 며칠 뒤에는 영의정 최석정을 판중추부사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고, 노론 李畬를 영의정, 金昌集을 우의정으로 앉혔다.43) 이로써 정국의 주도권은 어느 정도 노론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던소론계열을 밀어내고 노론계열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이 역시 하나의 환국으로 보아 경인환국으로 부를 수 있는 사건이다.44)

경인환국은 기본적으로는 《예기유편》이라는 최석정 개인의 편책을 둘러싼다툼이다. 그러나 그 책이 경연에서 교재로 쓰일 예정이었기 때문에 학문·사상적 태도의 면에서 주자를 교조적으로 묵수하는 노론계열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소론계열의 대립이라는 측면이 부가되었고, 국왕 숙종이 개입하여 불태우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국적인 차원의 노론·소론 사이의 이념 대립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석정 개인의 저술에 국한된 문제였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이념적·정치적 대립도 그리 날카롭지 않았다. 경인환국으로 교체된 정치 집단의 규모나 환국 후에 흔히 따르는 상대당에 대한 보복적 처벌의 강도 역시 여타 환국들에 비하면 매우 약한 편이었으며 노론의 정국 장악도 확고하지는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인환국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노출되기 시작

^{42) 《}肅宗實錄》 권 48, 숙종 36년 3월 경진.

^{43) 《}肅宗實錄》 권 48, 숙종 36년 3월 신묘.

⁴⁴⁾ 朴光用, 앞의 책.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 38(속집 권 7).

한 노론과 소론 사이의 이념적·정치적 대립의 요인들은 숙종 말년으로 가면서 점차 전면으로 표출되어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을 야기하였다.

(6) 병신환국

경인환국 뒤 5~6년간은 여전히 관료 성향의 노론과 소론이 함께 정국 운영에 참여하여 균형을 이룬 형세였다. 그러한 균형은 숙종 40년(1714) 정월 尹拯이 죽으면서 최석정이 지은 그의 제문을 둘러싸고 대립이 날카로워지면서 깨어졌다. 윤증은 숙종 초년 노론과 소론의 분립 이후 소론의 영수로 추양받는 山林이었다. 최석정은 제문에서 송시열을 침해하여 배척하였는데 "空言은 몸소 실천하지 못하였고, 高論은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에 대해 노론계의 성균관 유생들이 먼저 나서서 송시열이 내세운 청에 대한 復讎 大義를 공언과 고론으로 비방한 것이요, 효종을 무함한 것이라며 최석정을 극력 공박하였다.45) 이에 대해 숙종은 최석정의 제문은 공적인 문서가 아니므로 조정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노론측에서는 최석정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고, 소론에서도 이에 대해 반박을함으로써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격렬해졌다.

이러한 노소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킨 것이 《家禮源流》의 저작권 시비였다. 병자호란 직후 兪緊가 윤선거와 함께 家禮에 관한《儀禮》및 제가의 禮書를 정리하여 《가례원류》라는 책의 初本을 만들어 이를 제자인 윤증에게 맡겼다. 이를 숙종 39년에 유계의 손자인 愈相基가 당시 우의정이었던 李頤命의 후원을 받아 간행하고자 하여 윤증에게 가지고 있는 中本을 달라고 하였으나, 윤증은 자신의 부친인 윤선거와 함께 만든 것이며 자신도 일부 보완하였는데 갑자기 간행을 이유로 달라고 하는데 의문을 품고 내주지 않았다. 이에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유상기는 다른 데서 초본을 확보하여 책으로 꾸미면서 權尚夏의 서문과 鄭澔의 발문을 실었는데, 이들은 그 글에서 윤증이 스승을 배반하고 책의 저작권을 고집함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유상기가간행 작업을 마치고 숙종 41년 11월에 왕에게 올렸다. 이에 대하여 숙종은 儒賢인 윤증을 비난하였다 하여 정호를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그의 발문

^{45) 《}肅宗實錄》 권 55, 숙종 40년 8월 신사.

을 쓰지 말도록 명하였다.46)

이 문제는 노론과 소론 사이에 광범위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해묵은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懷尼是非 문제로 번져 갈등이 깊어졌다. 숙종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와 스승 가운데 아버지가 重하고 스승이 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증을 옹호하면서 윤증을 비난하는 노론계 인물들을 처벌하고,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는 노론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창집을 좌의정에서 파직시키는 등 소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편이었다.47) 이러한 숙종의 지지에 힘입어 소론은 노론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하면서 정국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론의 행태는 숙종의 불만을 사서 숙종 42년 7월 2일에 숙종은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갈등의 단서가 되었던, 숙종 7년 윤증이 송시열의 무원칙한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보내려 했던 편지〈辛酉擬書〉와 송시열이 윤선거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내용의 묘갈문을 모두 써서 들이라고 하였다. 48) 숙종은 그 글을 검토한 결과 윤증의 말이 너무 송시열을 억누르는 것이 많으니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따지는 것이 괴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49) 숙종의 지지의 방향이 그때까지 기울었던 윤증에서 송시열 쪽으로 바뀌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숙종은 이러한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가례원류》에 권상하의 서문과 정호의 발문을 다시 넣으라는 조치, 송시열의 묘갈명에는 윤선거에게 욕을 끼친 바가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이어서 김창집을 좌의정으로 제배하는 것을 비롯해노론계열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정국을 주도하게 된 김창집은 8월 24일에 이르러 노론과 소론 각 붕당의 朝臣과 鄕儒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선거 문집의 인쇄 원판을 헐어버릴 것을 청하였다. 윤선거가 남인 윤휴와 제휴하여 효종의 처사를 무함하였음에도 이 책이 소론측이 윤선거를 계속 비호하는 근거가

^{46) 《}肅宗實錄》 권 56, 숙종 41년 11월 정유.

^{47) 《}肅宗實錄》 권 57, 숙종 42년 3월 정미 및 윤3월 임신.

^{48) 《}肅宗實錄》 권 58, 숙종 42년 7월 기미.

^{49) 《}肅宗實錄》권 58, 숙종 42년 7월 계해.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숙종은 즉석에서 이를 받아들여 윤선거 문집의 인쇄판을 헐어 없애라고 승정원에 명하였다.50) 더 나아가 노론계 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선거와 윤증을 '先正'이라 부르는 것을 금하였고,51) 윤증의 서원을 새로 세우는 일을 금지하였으며,52)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官爵을 追奪하는 데 이르렀다.53) 이와는 대조적으로 송시열이 엮고 그 제자 권상하가 수정한 《朱子大全箚疑》 17책을 校書館에서 간행하게 하였고,54) 송시열의 서원 華陽書院과 송준길의 與巖書院의 편액을 숙종이 직접 써서 내리기도 하였으며,55) 송시열의 문집을 교서관에서 간행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56)

좁은 의미에서는 숙종 42년(1716) 7월 2일 숙종이 윤증의〈신유의서〉에 허물이 있고, 송시열의 묘갈명에는 윤선거에게 욕을 끼친 바가 없다고 판결하고 《가례원류》에 권상하의 서문과 정호의 발문을 다시 넣으라고 한 조치를 內申處分이라 하지만, 넓게 보면 그 이후 약 1년여 걸친 일련의 숙종의 조처를 아울러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신처분으로 정국 주도 붕당이 소론에서 노론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정국 역시 급변하는 점에서 보면 이는하나의 뚜렷한 환국으로서 이를 병신환국이라고 할 수 있다.

병신환국은 해묵은 회니시비를 둘러싸고 심각해진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과 분쟁에 국왕 숙종이 직접 관여하여 처분을 내림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로써 소론은 그 학문적·정치적 이념과 명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국에서 소외된 반면 노론은 숙종의 인정과 지원을 받아 정국 주도권을 독점하게되었다. 이후 노론과 소론은 상대방을 중앙 정국에 공존할 수 없는 상대로보게 되었다. 병신환국 단계에서는 이미 죽은 윤선거와 윤증 그리고 송시열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숙종이 처분하는 형태였기에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

^{50) 《}肅宗實錄》 권 58. 숙종 42년 8월 신해.

[《]肅宗實錄補闕正誤》권 58, 숙종 42년 8월 신해.

^{51) 《}肅宗實錄》 권 58, 숙종 42년 10월 경자 및 12월 을묘.

^{52) 《}肅宗實錄》 권 59, 숙종 43년 정월 병인.

^{53) 《}肅宗實錄》권 59, 숙종 43년 5월 임오. 《肅宗實錄補闕正誤》권 59, 숙종 43년 5월 임오.

^{54) 《}肅宗實錄》 권 58, 숙종 42년 9월 경진.

^{55) 《}肅宗實錄》 권 58, 숙종 42년 10월 경자.

^{56) 《}肅宗實錄》 권 60, 숙종 43년 7월 병진.

립이 숙청과 죽음 등 극단적인 데로 치닫지는 않았다.

윤증 부자의 관작을 삭탈한 지 두달쯤 지난 7월에 숙종이 관례를 무시하고 승지와 사관들도 배석하지 못하게 한 채 좌의정 이이명만을 불러 단 둘이 密談을 나누었다.57) 이른바 丁酉獨對이다. 이 때의 밀담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독대 직후에 행판중추부사 이유,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이명 등 노론계 신료들만이 참여한 접견 자리에서 한 숙종의 언명에 따라 세자의 대리청정 문제였음이 알려졌다. 숙종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안질이 심해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해야겠는데 무언가 뜻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언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당나라 및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하게 한 조선의 고사를 들어 적극 찬성했고, 숙종은 그 날로 바로 하교를 내려 세자에게 대리정청을 명하였다.58)

독대라는 비상한 절차에서 비롯된 대리청정 조치에 대해서 소론측에서는 노론측에서 세자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였다.59) 갑술환국 이후 줄곧 세자를 보호하는 데 공이 큰 것으로 인정받던 관료적 성향의 소론 영중추부사 尹趾完이 이이명을 私人·私身이라며 독대를 공박하였으나, 숙종은 윤지완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물리쳤다.60) 윤지완과이이명 모두 성밖으로 물러가 대죄하였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독대와 대리청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세자도 여러 차례 대리청정을 극구 사양하였으나 결국 대리청정은 실시되었다. 이후 숙종 46년 6월숙종이 죽을 때까지 약 3년간은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투영하여 환국을 야기하며, 독대를 통해 대리청정을 하게 하면서까지 세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 숙종의 처사는 대단히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각 붕당들은 제각기 是非와 正邪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치운영론을 진전시켰고, 그결과 상대방을 부정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특히 숙종

^{57) 《}肅宗實錄》 권 60, 숙종 43년 7월 신미.

⁵⁸⁾ 위와 같음.

^{59) 《}肅宗實錄補闕正誤》권 60, 숙종 43년 7월 신미. 《俟百錄》권 1, 숙종 43년 秋 7월.

^{60) 《}肅宗實錄補闕正誤》권 60, 숙종 43년 7월 기묘.

사후에는 붕당 사이의 이러한 대립의 쟁점에 숙종의 뒤를 잇는 경종과 영조의 王位 승계문제까지 개입되어 忠逆을 다투는 상황으로 진전됨으로써 붕당 사이의 대립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발전해 갔다.

(7) 신임환국

숙종 말년에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이 세자의 즉위를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사유가 없는 한 세자의 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숙종이 죽고 세자-경종이 즉위하게 되자 소론은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노론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경종은 숙종과는 달리 노론과 소론의 대립 구도에서 소론을 지지하면서도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결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교리 趙文命이 올린 붕당의 폐해를 논하며 임금이 표준을 세워 정국을 주도하라고 한 조언은 경종에게는 별반 실효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61) 이러한 상황에서 정언 李廷熽의 상소를 빌미로 노론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던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판중추부사 조대채 등이 경종 원년(1721) 8월에 儲嗣를 정하기를 청하여,62) 延 郡君 昤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63) 이에 대해 소론측에서는 行司直 柳鳳輝가경종의 나이가 아직 젊으므로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64) 노소간의 쟁론의 대상이 되는 데 그쳤다.

노론측은 세제를 책봉한 데서 그치지 않고 경종 원년 10월에 집의 趙聖復이 나서서 왕세제를 庶政에 참여시킬 것을 상소하였다.65) 경종이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 때 경종의 나이가 34세로서 아직 젊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경종의 왕권을 무시하는 주장으로서 무리가 없지 않았다. 노론의 의도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왕세제의 후계구도를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대리청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경종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대리청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

^{61) 《}景宗實錄》 권 3, 경종 원년 5월 을축.

^{62) 《}景宗實錄》 권 4, 경종 원년 8월 무인.

^{63) 《}景宗實錄》 권 4, 경종 원년 8월 기묘 및 9월 갑인·을묘.

^{64) 《}景宗實錄》 권 4, 경종 원년 8월 신사.

^{65) 《}景宗實錄》권 5, 경종 원년 10월 정묘.

다가 환수하기를 반복함으로써 대립을 심화시켰다. 10월 17일에는 영의정 김 창집, 영중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趙泰采, 좌의정 李健命이 聯名으로 獅子를 올려 숙종 43년(1717) 당시 세자였던 경종의 대리청정 전례에 따라 대리청정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였다. 이날 밤중에 대간의 탄핵을 받아 성밖으로 물러나 있던 소론계 우의정 趙泰耉가 궁궐에 들어와 왕을 만나 뵙기를 청하니경종이 허락하였다. 노론과 소론의 주요 관료들이 함께 인견하는 자리에서 조대구는 대리청정을 극력 반대하여 경종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였다.66) 이날의 결정을 계기로 소론은 노론에 대해서 공격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2월 6일에는 司直 金一鏡・朴弼夢・李明誼・李眞儒・尹聖時・鄭楷・徐宗 廈 등 7인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를 '四凶'으로 지칭하면서 노론 일당을 역적으로 몰아 처벌을 주장하였고 경종은 이를 嘉納하였다.67) 그 날 이조판서 權尙游를 파직하고 남인 沈檀을 이조판서로, 소론 김일경을 참판으로 特除하는 등 주요 관원을 대폭 노론에서 소론으로 교체하였다. 9일에는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을 면직시키고 대리청정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의정 조태구를 영의정에 제배하고 그의 추천을 받아 崔奎瑞를 좌의정, 崔錫恒을 우의정에 제배하였다.68)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노론에 대한 소론의 정치적 숙청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무렵 인사문제를 비롯한 정국 주도 행태와 노론에 대한 처벌의 강온에 따라 소론은 온건한 성향의 緩論一緩少와 강경한 성향의 峻論一峻少로 분기하였다.69) 경종 연간에 정국을 주도하며 노론에 대한 공격을 가한 것은 준소계열이었다.

경종 2년 3월 27일에 睦虎龍이 告變을 하였다. 鄭麟重・金龍澤・李器之・李喜之・沈尚吉・洪義人・金民澤・白望・金省行 등 노론 4대신의 子姪과 추종자들이 숙종 말년에 세자 곧 경종을 칼이나 독약으로 해하고, 또는 축출하

^{66) 《}景宗實錄》권 2, 경종 원년 10월 갑술. 《景宗修正實錄》권 2, 경종 원년 10월 갑술.

^{67) 《}景宗實錄》권 5, 경종 원년 12월 임술. 《景宗修正實錄》권 5, 경종 원년 12월 임술.

^{68) 《}景宗實錄》권 5, 경종 원년 12월 을축.

^{69) 《}景宗實錄》 권 6, 경종 2년 정월 무신.

기를 꾀하니, 이는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적도들을 급히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라는 내용이었다. 또 말하기를 적도 가운데는 동궁을 매수하여 씻기 어려운 욕을 끼치려고 하는 자도 있으니 적도의 정상을 조사하여 누명을 신설하여 국본을 안정시키라고 하였다.70) 이 고변으로 그로부터약 두 달에 걸쳐 준소계열에서는 노론을 집요하게 공격하였고, 결국 고변에거명된 노론계 인물들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이명, 우의정 조태채, 좌의정 이건명 등 노론 4대신이 賜死되는 것을 비롯해사형이 20여명, 杖斃 30여명, 絞殺 13명, 유배 114명, 自盡 9명, 연좌 173명에 이르렀다.71) 이에 반해 윤선거와 윤증 부자가 復官이 되고, 숙종 연간 소론을 이끌었던 南九萬・朴世采・尹趾完・崔錫鼎 등이 숙종 묘정에 배향되는등 병신환국에서 부정되었던 소론의 정치・사상적 이념이 다시 회복되었다. 옥사에 관련된 인물들을 扶社功臣으로 錄勳을 하였다. 고변을 한 목호룡 역시 녹훈되어 東城君이라는 훈작을 수여받았다.

경종 2년(1722)에 발생한 이 대규모 옥사를 壬寅獻事라고 부르는데 경종 원년 12월 김일경 등의 노론 4대신에 대한 공박에서부터 이 임인옥사까지를 辛 壬換局이라 할 수 있겠다. 신임환국은 붕당 사이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나타난 결과이다. 복수의 붕당이 공존의 토대 위에서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며 균형을 유지하던 붕당정치의 정치운영 형태가 환국으로 부정되어 가는 추세에서 붕당 사이의 대립의 쟁점이 점차 是非와 正邪를 다투는 데로 옮겨 가다가 숙종 말년에는 왕에 대한 義理一忠逆을 다투는 데로 나아가 양보할 수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는 염탐과고변, 모함과 숙청, 살륙 등 이전의 유교 윤리와 행위 규범을 넘어서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붕당 사이의 시비를 가리는 처분을 통해 환국을 유도하며 정국을 이끌던 국왕이 이러한 붕당 사이의 싸움을 조정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붕당 사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급격한 정국의전환이 나타났다. 경종 연간의 신임환국은 그 절정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70) 《}景宗實錄》권 6, 경종 2년 3월 임자.

[《]俟百錄》 권 5, 壬子 春.

^{71)《}辛壬紀年提要》彙考.

(8) 을사환국

신임환국을 중심으로 한 경종 연간의 정치상황은 국왕의 지위를 근본부터 위협하는 것이었다. 당시 왕이었던 경종도 그렇지만 특히 노론의 지지를 업 고 왕세제로 책봉되었던 연잉군의 처지는 매우 위태로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종 4년 8월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죽자 왕세제-연잉군이 왕으로 즉위하 였으니 바로 영조다. 영조는 즉위한 직후 이광좌를 불러들여 좌의정으로 제 배하였다.72) 이광좌는 경종 연간 준소계열 주도의 정국 아래에서 물러나 있 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영조는 이어서 준소 가운데서도 강경파의 핵심 인물 인 김일경이 지은 壬寅獄事에 대한 敎文 가운데 魯桓公子 翬가 형을 죽인 것을 가리키는 '鍾巫', 진시황이 맏아들 扶蘇를 죽이고 작은 아들 胡亥를 세 운 것을 뜻하는 '沙丘', 당태종이 형과 아우를 죽인 것을 가리키는 '蹀血' 등 과 같은 표현을 문제 삼았다. 모두 영조가 왕세제 시절의 일들을 빗댄 것으 로 인정하여 김일경의 관작을 추탈하고 문외출송하라고 명하였다.73) 김일경 을 절도에 안치하였다가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면서 신임옥사의 고변자인 목 호룡과 내통한 것으로 몰아 목호룡도 잡아와 함께 국문하였다. 영조 자신이 의금부에 나가 이들을 친국하고는 그 날로 참형에 처하였다.74) 영조는 이어 붕당의 폐단을 누누히 강조. 붕당을 타파할 것을 천명하면서 자신이 직접 정 국을 주도해 나갔다.75) 영조 원년(1725) 정월에 들어서는 노론계열의 척신으 로서 영조의 탕평에 동조하던 閱鎭遠을 이조판서로 삼음으로써 완소계열을 견제하게 하였다.76) 그렇게 완소와 노론을 함께 등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조 성하고 나서 김창집ㆍ이이명ㆍ이건명ㆍ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의 관작을 회복 시켰다.77) 이렇게 상황이 변하자 노론측에서는 당국하고 있는 완소의 중심 인물인 이광좌와 조태억 및 경종 연간 준소의 중심 인물들을 처벌하라는 주

^{72) 《}英祖實錄》 권 1, 영조 즉위년 9월 신유.

^{73) 《}英祖實錄》 권 2, 영조 즉위년 11월 기유.

^{74) 《}英祖實錄》 권 2, 영조 즉위년 12월 정축.

^{75) 《}英祖實錄》 권 3, 영조 원년 정월 임인.

^{76) 《}英祖實錄》 권 3, 영조 원년 정월 신유 및 2월 정유.

^{77) 《}英祖實錄》 권 4, 영조 원년 3월 경자.

장을 제기하면서 소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영조는 4월말에는 당국하고 있던 완소를 대신하여 노론의 정호를 영의정, 민진원을 좌의정, 이관명을 우의정에 제배하였다. 78) 을사환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을사환국의 마무리 작업으로서 5월에는 경종 2년(1722)에 노론을 숙청하면서 책봉된 功臣의 錄券과 會盟錄, 그리고 고변자 목호룡이 받은 교서와 초상화 등을 모두 불태워 버리게 함으로써 임인년의 옥사를 부정하니 이른바 임인옥안의 飜案이었다.79) 이와 함께 소론에 대해서는 조태구의 관작을 추탈하고,80) 유봉휘를 귀양보내고 이광좌와 조태억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할 것을 명하는 반면,81) 노론에 대해서는 金壽恒에게 文忠, 이건명에게 忠愍, 조태채에게 忠翼, 權尙夏에게 文純, 이이명에게 忠文, 李喜朝에게 文簡, 금창집에게 忠獻이라는 諡號를 내리는 한편,82) 노론 4대신의 서원 건립을 허락함으로써 명분을 뒷받침하여 주었다.83)

숙종 말년에서 경종 연간을 거치면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대립이 왕위 승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면서 충역을 다투게 되었다. 노론과 소론은 서로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게 되면서 숙청과 살육이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영조는 소론 가운데 논의가 온건한 완소를 등용하여 정국을 이끌게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준소계열을 용납할 수 없었다. 준소의 중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그 반면에 경종 연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노론 중심 인물들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일시 등용하였던 완소까지도 퇴진시켰으니 이것이 을사환국이다. 을사환국은 붕당 사이의 대립 구도에 끼여 위협을 받고 있던 국왕 영조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첫 단계 조처라고 할 수 있다.

^{78) 《}英祖實錄》 권 5, 영조 원년 4월 경인.

^{79) 《}英祖實錄》권 6, 영조 원년 5월 무신.

[《]俟百錄》 권 7, 영조 원년, 春 翻壬寅獄老 黨遂大進.

^{80) 《}英祖實錄》 권 6, 영조 원년 5월 무신.

^{81) 《}英祖實錄》 권 7, 영조 원년 7월 기해.

^{82) 《}英祖實錄》 권 5, 영조 원년 4월 신미.

^{83) 《}英祖實錄》 권 7, 영조 원년 8월 신사.

(9) 정미환국

을사환국으로 등장한 노론은 임인옥사의 주역인 준소 김일경 일파의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노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정국을 이끌어 나갔다. 노론의 요구를 수용하면 정국 운영의 주도권까지 노론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즈음에 소론 완론계의 趙文命과, 노론계의 외척 閱鎭遠 등이 자주 탕평론을 개진하였다.84) 조문명은 붕당을 군자당과 소인당으로 나누어 보면서 시비를 혼란시켜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당론을 부정하여 '破朋黨(붕당을 타파할 것)'을 으뜸가는 목표로 내세우는 탕평론을 제기하였다. 민진원은 겉으로는시비의 분별을 우선하는 붕당론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였다.85) 영조는 이러한 緩論 蕩平論을 받아들여 여러 차례 붕당을 경계하는 전교를 내렸다.86) 영조 자신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렇게 영조가 정국을 주도한 지 2년 만인 영조 3년(1727) 7월에 영조는 다시 노론을 내치고 소론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단행하였다.87) 영조 자신의 特旨로 준소 유봉휘의 관작을 追復시키고, 노론 정호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하였다. 이어서 준소 5인의 처벌을 요구하던 영부사 민진원, 판부사이관명, 우의정 이의현 등 노론 주요 인사 100여 명을 일거에 파직하고, 유배되어 있던 소론 인물들을 대거 석방하여 등용하였다. 다시 이광좌가 영의정, 조태억이 좌의정이 되어 정국을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정국 주도 붕당의 교체와 함께 노론과 소론 사이의 시비, 충역의 근거를 뒤바꾸는 조치도이루어졌다. 노론 사대신은 다시 罪案에 들게 되었고 임인옥이 逆獄으로 규정되어 김용택・이천기 등 관련자들은 다시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상의조치는 영조의 뜻에 따라 단 4~5일 사이에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흔히 丁未處分이라 하는데, 정국 주도 붕당의 교체와 그에 따른 정국의

^{84) 《}英祖實錄》 권 8, 영조 원년 10월 기묘·갑진.

⁸⁵⁾ 박광용, 앞의 책.

^{86) 《}英祖實錄》 권 10, 영조 2년 12월 을해.

⁸⁷⁾ 정미환국 전후의 정국의 추이에 대해서는 박광용, 앞의 책 및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震檀學報》 56, 1983) 참조.

전환이라는 환국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명히 하나의 환국으로서 정 미환국이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다.

정미환국으로 이광좌를 중심으로 하는 소론계열이 정국을 이끄는 상황에서, 영조 4년(1728) 3월 李麟佐‧鄭希亮 등이 戊申亂을 일으켰다. 무신란은 준소계의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 독살에 영조가 관련되었다 하여 密豊君 坦을 추대하여 일으킨 반란이었다. 영조로서는 왕권의 正當性을 부정당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나, 영조는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소론계를 앞세워 무신란을 진압하고서, 이를 계기로 좀더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대로 정국을 이끌어갔다. 노론측에서는 討逆을 내세우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소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당론을 앞세우기보다는 왕권 앞에서 붕당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완론 탕평론을 더욱 강력하게 제시하며,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함께 등용하는 調劑保습의 인사 정책을 추진하였다.

무신란 이후 영조가 노론을 제어하는 논리는 "소론에 김일경과 같은 역적의 무리가 있다면 노론에도 鄭麟重의 무리처럼 역적의 성품을 가진 자가 있다"는 兩非論이었다. 이에 대해 노론측에서는 신임환국에서 처형된 노론 사대신에 대한 처분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끝에 영조는 영조 5년 8월 13일에 '悖子逆孫'의 논리를 내세워 노론 사대신 가운데 자질들까지 연루되지 않은 趙泰采・李健命은 伸寃하고 김창집과 이이명은 그대로 죄안에 둔 이른바 己酉大處分을 단행하였다. 이는 노론과 소론이 함께 정국 운영에 참여할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현실적 목적에서 나온 절충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노론과 소론 양측에서 불만을 갖기도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영조 연간의 완론 탕평책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 환국의 정치사적 의의

환국은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환국은 현종 몰년에서 영조 초년까지 50여 년간 아홉 차례 발생하였다. 숙종 즉위년(1674)의 갑인환국, 숙

종 6년의 경신환국, 숙종 15년의 기사환국, 숙종 20년의 갑술환국, 숙종 36년 의 경인환국, 숙종 42년의 병신환국, 경종 원년~2년(1721~22)의 신임환국, 영조 원년의 을사환국, 영조 3년의 정미환국 등이 그것이다.

환국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붕당이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붕당정치의 역학구도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숙종 전반기의 갑인환국·경신환국·기사환국·갑술환국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중앙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의 경인환국·병신환국·신임환국·을사환국·정미환국은 서인에서 분립한 노론과 소론 사이에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의 지위가 서로 교체된 것이었다.

어느 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붕당 구성원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다. 다시 말하자면 주요 관직을 상실하고 사형이나 유배 또는 문외출송 등 처벌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박탈당하였다. 그렇게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는 인원의 규모는 환국에 따라 서로 달랐다. 환국의 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붕당 구성원 거의 모두가 관직을 잃고 주요 구성원 다수가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약한 경우에는 핵심 구성원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그치고 다른 사람들은 관직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환국은 붕당정치적 역학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구체적 계기는 붕당과 붕당 사이의 관계에서 제공된 것은 아니다. 붕당정치라 하더라도 왕정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국왕 및 속성상 근본적으로 국왕과 연결되어 있는 종친이나 훈척 등 정치집단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할수는 없는 것이었다. 붕당 사이의 대립이 날카로와져 팽팽한 긴장을 조성하였을 때 그 균형을 깨고 정국의 주도권을 어느 한편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국왕이었다. 붕당정치기에는 국왕은 붕당 사이의 대립에 깊숙히 관여하지 않았으나, 현종 말년이 되면서 국왕이 국가의 공적인 사안은 물론 붕당과 붕당, 때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에도 관여하여 직접 시비를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붕당 사이의 역학 구도는 국왕의 의지와 처분에 따라 급격하게 뒤바뀌었다. 그러나 환국이 반복되는 정황에서 국왕이 크고 작은 정치적 사안에 깊숙히 관여하여 역할이 증대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고 비중이 증대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환국의 쟁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왕의 그러한 역할이 왕위와 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갑인환국의 구체적인 쟁점은 왕실의 복제문제였다. 복제문제는 왕실의 사소한 전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어떤 예를 적용하여 사회 질서를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이념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복제논쟁은 사상적·학술적인 시비라는 측면과 함께 현실 정치에서 국왕의 초월성·절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갑인환국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히 진행되었으며 패퇴하는 서인에 대한 처벌의 규모와 강도도 그리 크지 않았다.

경신환국은 병권까지 독점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남인 가운데 탁남에 대해서 훈척 집단이 반발하여 일어났다. 현실적인이해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병권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구체적인 계기역시 정탐에 의한 고변이었기에 남인 전체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기는 하였지만 처벌을 받은 인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또 서인 내부에서 현실 정치와 훈척에 대한 인식에 따라 노론과 소론이 분립하였다.

기사환국은 후계자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숙종과 남인계열의 후궁 소생을 조기에 후계자로 확정하는 데 반대하는 서인사이의 대립에서 국왕 숙종의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갑술환국역시 기사환국으로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남인이 독단적으로 정국을운영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숙종이 전격적으로 비망기를 내림으로써 발생하였다.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은 자신의 후계자 확정 및 왕실 내부의 문제에 대한 국왕 숙종의 방어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환국이었다.

갑술환국 이후 비교적 장기간은 노론과 소론 가운데 실무 관료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숙종의 의지에 부합하여 정국을 이끌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경인환국의 쟁점은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소론의 중심 인물 최석정의 《예기유편》에 대한 시비였다. 개인의 저작에 대한 학술적이면서 이념적인시비에 국왕이 개입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도는 병신환국에서 재연되었다. 윤증과 유계의 후손 사이에 《가례원류》의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다툼이, 윤증이 죽은 뒤에 소론의 영수로 인정받던 윤증과 노론의 영수로 추앙받던 송

시열의 시비 논쟁으로 비화하였다. 이는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개인적인 시비 차원을 넘어서 노론과 소론의 이념과 명분 싸움으로 번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숙종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노론과 소론의 이념적 시비 다툼은 현실적 正邪를 다투는 것을 지나 숙종 말년에는 왕위 승계를 둘러싸고 양보할 수 없는 忠逆 다툼으로 발전하였다. 신임환국은 그러한 충역 다툼이 극단적으로 비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왕세자 시절 경종을 보호하였음을 내세웠던 소론은 노론이 연잉군 — 영조를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대규모의 숙청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노론과 소론 은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즉위한 영조는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발하는 준소를 제거하고 신임환국에서 피해를 입은 노론 의 정당성을 회복하였으니 이것이 을사환국이다. 그러나 소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노론의 주장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여 정국을 주도하려는 영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노론을 물리치고 소론을 불러 들이니 이것이 정미환국이다. 정미환국 직후 남인과 소론 일부에서 일으킨 무신란을 진압하면서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과를 調劑保습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붕당 사이의 대립과 주도권 교체인 환국을 넘어서 국왕이 정국을 주도하는 탕평정치로 이행한 것이다.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숙종 연간에는 지주전호제를 축으로 하는 농업경제로부터 상품화폐경제로의 획기적인 전환, 良賤制에서 斑常制로 넘어가는 신분제의 변동, 새롭게 대두하는 세력과 기존 세력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鄕戰의 발발을 비롯한 향촌사회의 변동, 추상적인 理氣論에서 사회 관계와 규범에 관한 禮論을 지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관심이 확산되어가는 사상계의 추이 등 전반적인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환국은 단순히 붕당정치의 말폐라기보다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폭넓은 변화가 정치에 반영되어 붕당정치적 안정이 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18세기 탕평정치기에 발현된 여러 변화의 시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洪順敏〉